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기획재정위원회 】

2018.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에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18. 10. 22.)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481.3조원, 총지출 470.5조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개선 등 현안 문제에 대응하고자 전년도 본예산보다 총지출을 41.7조원(9.7%) 확대 편성하였으며, 이러한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면한 사회적·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국가채무·재정수지·의무지출 등을 중심으로 재정총량에 대한 현황과 분석내용을 수록하였고, 혁신성장 및 일자리 대책 등 주요 정책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보조금, 출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안을 각각의 기관별로 살펴보았으며,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국회 심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춘 순

[기획재정부]

I. 예산안 개요 / 1

1. 현 황	1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7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8

II. 주요 현안 분석 / 12

1. 2019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분석	12
1-1. 2019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분석	13
1-2.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종합부동산세 세수효과 고려 필요	17
1-3. 조세지출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20
2. 2019년도 정부출자수입 예산안의 주요특징	23
3. 국고금 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28
3-1. 국고금 운용수익의 세입 이입 원칙 마련 필요	28
3-2.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 예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	31
4. 공공자금관리기금 계획안 편성의 적정성 분석	34
4-1. 지방채 발행 계획을 고려한 지방채 인수 계획액 반영 필요	35
4-2. 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 계획액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38
5. 대외경제협력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 마련 필요	40
6. 한국재정정보원 예산 사업 현황 검토	45
6-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	47
6-2. 한국재정정보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사업(정보화 사업)에 포함된 사무실 임차료의 기관운영비로의 이관 고려 필요	49



III. 개별 사업 분석 / 53

1. 혁신성장활성화 사업을 통한 성과 도출 노력 강화 필요	53
2.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 개최실적 부진 개선 필요	57
3. 재정집행관리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0
4.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63
5. CGIF를 통한 자국기업의 수혜 강화 방안 마련 필요	68
6. 한국장학재단 저소득층 장학사업의 사업 절차 미흡 및 전달 방식 변경 필요 ...	70
7. 복권기금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햇살론) 사업의 저신용자 대출비중 감소 개선 필요	79

[국세청]

I. 예산안 개요 / 87

1. 현 황	87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8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89

II. 주요 현안 분석 / 91

1. 근로·자녀장려세제 관련 예산 통합 편성 및 철저한 사업준비 필요	91
--	----

III. 개별 사업 분석 / 96

1.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 차별화 및 사업계획 마련 필요	96
2. 국세통계센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법적 근거 보완 필요성 및 정보 보안 방안 검토 필요	100



3. 인공지능 빅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의 단계적 추진 필요	103
4.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의 적극적 성과관리 필요	107
5. 비주거용 부동산 기준시가 산정 사업의 국토부 이관 검토	110
6. 국세상담센터 상담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13

[관세청]

I. 예산안 개요 / 117

1. 현 황	117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1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19

II. 개별 사업 분석 / 120

1. 세입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120
2. 핵종분석장비 배치 기준 마련 필요	125
3. 블록체인 전자통관시스템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128
4. WCO 정책위원회 개최 비용 일부 조정 필요	131
5. AEO 공인심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 관리 필요	133

[조달청]

I. 예산안 개요 / 137

1. 현 황	137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40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41



II. 개별 사업 분석 / 142

1. 조달수수료 감면 제도 개선 필요 142
2. 공공혁신조달 사업의 추진 과정의 개선 필요 146
3.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 육성 사업의 차별화 필요 151
4. 나라장터 엑스포 전시회 예산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154

[통계청]

I. 예산안 개요 / 159

1. 현 황 15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60
3.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61

II. 주요 현안 분석 / 163

1. 통계데이터센터 확대 및 구축 관련 개선 필요 163
 - 1-1.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법적제도적 개선 추이를 반영한 데이터센터 운영 필요 164
 - 1-2.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센터별 수요량을 반영한 서비스 운영 필요 .. 169
2. 가계동향조사 개편에 따른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172

III. 개별 사업 분석 / 178

1. 경제구조통계 내의 신규 조사의 효과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178



기획재정부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기획재정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6개 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복권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외국환평형기금)으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총수입은 304조 3,86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0조 1,920억원(11.0%)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94조 6,062억원, 국가균형특별회계 1조 3,741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5,286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9,820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 2,039억원, 복권기금 4조 6,303억원이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은 총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9년도 예산안 기획재정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264,786,284	268,026,861	268,026,861	298,041,535	30,014,674	11.2
- 일반회계	264,751,689	264,532,761	264,532,761	294,606,235	30,073,424	11.4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034,595	1,403,050	1,403,050	1,374,120	△28,930	△2.1
기 금	6,388,419	6,167,460	6,167,460	6,344,750	177,290	2.9
- 공공자금관리기금	862,243	586,516	586,516	528,553	△57,963	△9.9
- 국유재산관리기금	1,160,208	933,325	933,325	981,972	48,647	5.2
- 대외경제협력기금	145,484	167,801	167,801	203,892	36,091	21.5
- 복권기금	4,220,484	4,479,818	4,479,818	4,630,333	150,515	3.4
합 계	271,174,703	274,194,321	274,194,321	304,386,285	30,191,964	11.0

주: 총수입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21조 9,564억원으로 전년도 추경 예산 대비 1조 990억원(5.0%)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3조 4,776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2조 9,434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1조 532억원, 대외경제협력 기금 1조 1,956억원, 복권기금 3조 2,866억원이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외국환 평형기금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9년도 예산안 기획재정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960,255	3,440,148	3,490,148	3,477,585	△12,563	△0.4
- 일반회계	960,255	3,440,148	3,490,148	3,477,585	△12,563	△0.4
기 금	16,077,366	17,361,534	17,366,304	18,478,789	1,112,485	6.4
- 공공자금관리기금	11,434,419	12,122,779	12,122,779	12,943,372	820,593	6.8
- 국유재산관리기금	881,589	947,417	952,187	1,053,183	100,996	10.6
- 대외경제협력기금	774,359	1,089,794	1,089,794	1,195,624	105,830	9.7
- 복권기금	2,987,000	3,201,544	3,201,544	3,286,610	85,066	2.7
합 계	17,037,621	20,802,623	20,857,393	21,956,374	1,098,981	5.3

주: 1. 총지출 기준

2. 2019년도에 환경부로 이관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재정부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334조 8,652억원으로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29조 6,755억원(9.7%)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25조 1,973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조 6,680억원이다.

[2019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84,947,988	293,318,828	295,867,447	325,197,251	29,329,804	9.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632,985	9,242,754	9,322,274	9,667,959	345,685	3.7
합 계	294,580,973	302,561,582	305,189,721	334,865,210	29,675,489	9.7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5조 7,707억원으로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3,526억원(2.3%) 증가하였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온실가스 관련 사업이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2019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다.

[2019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5,644,600	14,702,584	15,418,139	15,770,716	352,577	2.3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재정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복권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외국환평형기금으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81조 2,005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안 대비 24조 7,212억원(9.6%) 증가하였다. 기금별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172조 8,405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1조 5,111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 1조 3,874억원, 복권기금 5조 6,373억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5,814억원, 외국환평형기금기금 99조 2,428억원이다.

[2019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183,224,543	165,726,770	166,101,770	172,840,520	6,738,750	4.1
국유재산관리기금	1,268,886	1,111,812	1,111,812	1,511,083	399,271	35.9
대외경제협력기금	858,358	1,122,931	1,122,931	1,387,383	264,452	23.6
복권기금	5,071,439	5,397,624	5,397,624	5,637,328	239,704	4.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04,835	401,884	401,884	581,369	179,485	44.7
외국환평형기금	97,541,619	82,343,289	82,343,289	99,242,800	16,899,511	20.5
합 계	288,569,680	256,104,310	256,479,310	281,200,483	24,721,173	9.6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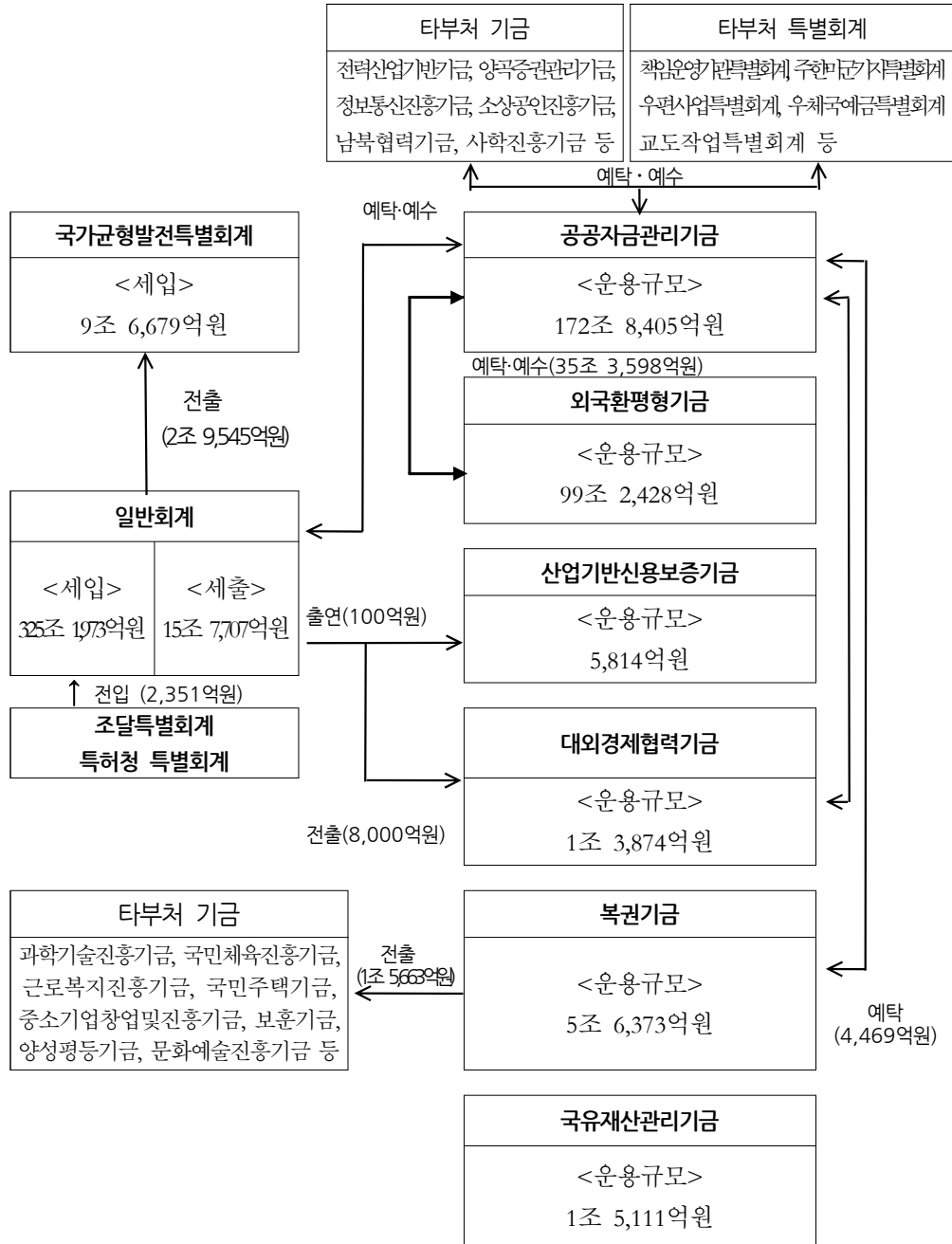
라. 재정구조

2019년도 기획재정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2조 9,545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8,000억원 전출될 계획이다.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다른 기금으로 45조 6,730억원이 예탁되고, 복권기금으로부터 타부처 기금으로 1조 5,663억원이 전출되며, 복권기금으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4,469억원이 예탁될 계획이다.

[2019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회계·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2019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일자리 등 민생 여건 개선을 위해 성장세 유지·확산 및 대내외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 등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 ② 세제선진화 및 글로벌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적극적·선제적 국고관리, 재정제도 개선 및 국제협력 강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 기반 구축,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및 재정투명성 강화예산 편성의 효율성 제고, 재정 성과관리 강화, 재정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재정운용 평가·관리 효율화, 공공 부문 효율성·공공성 조화를 통한 서비스 수준 제고 등 **재정운용 및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③ 국제금융외교 강화 및 국제금융기구 내 위상 제고, 통상협력 강화 및 대개도국 경제협력 활성화 등 **대외협력 강화**를 2019년도 재정운용방향으로 설정하였다.

2019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획재정부는 사회안전망의 지속 확충 및 일자리창출 노력 강화를 위해 EITC를 확대할 계획이나 2019년도 국세 비과세·감면율이 법정한도에 근접한 수준이므로 조세지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국가 정책적인 추진 필요성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비중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ASEAN+3 역내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CGIF를 추가 출자할 계획이나 그동안 우리 기업에게 혜택이 크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추진하는 대개도국 차관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신규사업은 총 18개 사업, 11조 9,534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CGIF 출자지원 사업은 ASEAN+3 역내 채권 발행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0년 설립된 신용보증투자기구인 CGIF의 자본증자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 지분에 대한 추가 납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 사업은 현재의 dBrain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시스템 운영의 안전성 및 확장성의 부족과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사업이다.

복권기금 사업 중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중고생 중 역량 있는 인재를 조기 선발하여 장학금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속 제공함으로써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계층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획재정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3개)	혁신성장활성화사업	1,481
	CGIF 출자 지원	26,18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	23,042
국유재산관리기금 (13개)	대법원 수원법원청사 신축 위탁개발임차료	11,879
	주러시아대사관 관저매입	20,000
	법무부 수원고지검신축 위탁개발임차료	9,713
	행정안전부 국과수 법공학 연구실험동	8,836
	인사혁신처 진전캠퍼스 실내체육관 신축	272
	농림축산식품부 기타청사시설 취득	6,437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동 증축	393
	국세청 중부세무서 청사 신축	2,071
	통계청 관사시설 취득	47
	경찰청 기타시설 취득	620
	산림청 항공본부 격납고 시설 취득	162
	해양경찰청 관사시설 취득	669
	대전통합청사	1,730
대외경제협력기금 (1개)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	1,600
복권기금 (1개)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4,402
합 계		119,534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제금융기구 출연, 아프리카차관,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편성된 공용재산취득 사업 등이 있다.

① 국제금융기구 출연 사업은 WB 빈곤감축사회개발금 출연, ADB 코리아펀드 출연, IDB 지식협력기금, 한·IMF기술협력기금 출연 등의 확대로 예산이 증액된 것이며, ② 아프리카차관 사업과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은 차관사업 확대¹⁾에 따라 계획액이 증액되었다.

[기획재정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8		2019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5개)	경제정책조정활성화사업	771	771	1,015	244	31.6
	국내조세협력	703	703	928	225	32.0
	통일기반조성	669	669	979	310	46.3
	정책홍보사업	1,450	1,450	2,190	740	51.0
	국제금융기구 출연	106,659	106,659	122,650	15,991	15.0
공공자금 관리기금 (1개)	국고채이자상환	17,822,466	17,822,466	19,052,735	1,230,269	6.9
대외경제 협력기금 (4개)	아시아차관	344,022	344,022	370,395	26,373	7.7
	아프리카차관	188,859	188,859	283,382	94,523	50.0
	태평양(대양주포함)차관	90,115	90,115	129,740	39,625	44.0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161,805	161,805	232,528	70,723	43.7
복권기금 (4개)	지방자치단체지원	108,601	108,601	119,148	10,547	9.7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지원	95,447	95,447	105,713	10,266	10.8
	복권사업비	260,0264	260,0264	2,663,592	63,328	2.4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3,081	3,081	4,108	1,027	33.3

1) 아프리카: 12개국 17개 사업 → 15개국 33개 사업, 민간·국제기구협력: 11개국 17개 사업 → 29개 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8		2019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국유재산 관리기금 (59개)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건립	18,117	18,117	24,679	6,562	36.2
	청사시설 취득	10,806	10,806	16,502	5,696	52.7
	춘천지법 속초지원 신축	1,285	1,285	5,138	3,853	299.8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	2,000	2,000	10,000	8,000	4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시설 취득	7,877	7,877	10,321	2,444	31.0
	비축토지매입	45,000	45,000	65,000	20,000	44.4
	주 그리스(대)청사 신축사업	2,000	2,000	8,123	6,123	306.2
	통일부 하나원시설 취득	2,250	2,250	3,838	1,588	70.6
	법무부 전주지검 신축	15,916	15,916	21,513	5,597	35.2
	법무부 춘천지검 속초지청 이전신축	1,274	1,274	3,170	1,896	148.8
	법무부 광주솔로몬파크 신축	738	738	2,246	1,508	204.3
	법무부 기록관 신축	665	665	999	334	50.2
	법무부 속초교도소 신축	16,187	16,187	26,040	9,853	60.9
	법무부 대구교도소 이전신축	30,000	30,000	50,000	20,000	66.7
	법무부 전주교도소 이전신축	1,316	1,316	6,362	5,046	383.4
	법무부 원주교도소 이전신축	300	300	2,142	1,842	614.0
	법무부 창원교도소 신축	1,987	1,987	8,558	6,571	330.7
	행정안전부 경북지방 합 동청사 신축	1,835	1,835	8,834	6,999	381.4
	행정안전부 충남지방 합동청사 신축	1,378	1,378	6,876	5,498	399.0
	행정안전부 정부전산백업센터 신축	4,480	4,480	32,505	28,025	625.6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 정보원청사 신축	1,236	1,236	2,000	964	78.0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청사시설 신축	301	301	2,200	1,699	564.5
	국세청 청사시설 취득	21,577	21,577	34,144	12,567	58.2
	대전국세청 청사신축	6,000	6,000	16,710	10,710	178.5
	강동세무서 청사신축	1,333	1,333	5,486	4,153	311.6
	관세청 청사시설 취득	3,792	3,792	6,209	2,417	63.7
	관세청 기타시설 취득	6,240	6,240	10,994	4,754	76.2
	통계청 청사시설 취득	2,154	2,154	5,543	3,389	157.3
	병무청 인천지방병무청 모병센터 신축	1,000	1,000	4,834	3,834	383.4
	인천남동경찰서 신축	200	200	993	793	396.5
	경찰서 청사시설 신축	30,428	30,679	50,664	19,985	65.1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8		2019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전의경 숙영시설 취득	6,598	6,598	19,573	12,975	196.7
	남양주북부서 신축	4,038	1,863	5,552	3,689	198.0
	방배경찰서 신축	7,000	799	1,278	479	59.9
	부산중부경찰서 신축	4,400	4,400	6,653	2,253	51.2
	부산해운대 경찰서 신축	390	390	1,143	753	193.1
	구미경찰서 신축	5,048	5,048	16,996	11,948	236.7
	대구서부경찰서 신축	7,000	7,000	9,170	2,170	31.0
	인천검단경찰서 신축	3,678	3,678	8,288	4,610	125.3
	서울강서경찰서 신축	4,457	4,457	11,624	7,167	160.8
	서울서부경찰서 신축	10,000	10,000	13,234	3,234	32.3
	안동경찰서 신축	590	590	1,602	1,012	171.5
	여주경찰서 신축	743	743	2,000	1,257	169.2
	김천경찰서 청사시설 신축	2,072	2,072	7,260	5,188	250.4
	서울청 광역수사대 신축	7,000	7,000	15,749	8,749	125.0
	남양주서 신축	6,000	6,000	10,000	4,000	66.7
	제주지방경찰청 신축	0	954	10,253	9,299	974.7
	기상청 청사시설 취득	2,532	2,532	7,466	4,934	194.9
	해양경찰청 경찰서 청사 취득	6,817	6,638	12,232	5,594	84.3
	해양경찰청 파출장소 청사 취득	1,025	1,025	2,341	1,316	128.4
	해양경찰청 훈련시설 취득	4,231	4,231	8,374	4,143	97.9
	부산통합청사 신축	22,000	22,000	37,125	15,125	68.8
	광주 통합청사 신축	10,800	10,800	18,909	8,109	75.1
	수원 통합청사 신축	1,168	1,168	5,000	3,832	328.1
	대구 통합청사 신축	1,350	1,350	5,500	4,150	307.4
	경찰청 순천경찰서 신축	0	0	628	628	순증
	경찰청 혜화경찰서 신축	0	0	469	469	순증
	경찰청 경주경찰서 신축	0	0	473	473	순증
	무안공무원 통합관사 개발	0	0	4,584	4,584	순증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8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II

주요 현안 분석

1

2019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분석

2019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은 299.3조원으로 전년 대비 31.2조원(11.6%) 증액 편성되었다.¹⁾ 2019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은 최근 4년(2015~2018년) 국세수입 예산(본예산 기준) 연평균 증가율(5.6%)의 2배 이상이다. 정부는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와 소득세 최고세율의 인상 등으로 소득세가 7.6조원 증가(+10.4%)하고, 법인 실적 개선 및 2017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율 인상 등으로 법인세가 16.2조원 증가(+25.7%)하며, 민간소비 증가 및 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4.9조원 증가(+7.3%)하게 됨에 따라 국세수입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입장이다.

[2019년도 국세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17 실적	'18 예산 (A)	'19 예산안 (B)	'18년 예산 대비	
				증감액(B-A)	증감율(B-A)/A
총 국 세	2,653,849	2,681,290	2,993,235	311,945	11.6
[일반회계]	2,585,115	2,608,161	2,917,588	309,427	11.9
◇ 내 국 세	2,277,690	2,279,802	2,593,166	313,364	13.7
○ 소 득 세	750,657	728,956	804,780	75,824	10.4
○ 법 인 세	591,766	630,461	792,664	162,203	25.7
○ 상 속 증 여 세	67,852	61,519	72,281	10,762	17.5
○ 부 가 가 치 세	670,870	673,314	722,452	49,138	7.3
○ 개 별 소 비 세	98,608	101,738	103,602	1,864	1.8
○ 증 권 거 래 세	45,083	39,985	45,339	5,354	13.4
○ 인 지 세	8,958	9,361	9,494	133	1.4
○ 과 년 도 수 입	43,896	34,468	42,554	8,086	23.5
◇ 교통·에너지·환경세	155,526	163,902	157,860	△6,042	△3.7
◇ 관 세	85,292	94,178	90,537	△3,641	△3.9
◇ 교 육 세	50,084	52,478	50,255	△2,223	△4.2
◇ 종합부동산세	16,520	17,801	25,770	7,969	44.8
[특별회계]	68,734	73,129	75,647	2,518	3.4
◇ 주 세	30,346	34,941	34,353	△588	△1.7
◇ 농어촌특별세	38,388	38,188	41,294	3,106	8.1

자료: 기획재정부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25)

1) 농어촌특별세는 농림축산식품수산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이다.

1-1. 2019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분석

가. 현 황

최근 국세수입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3~2014년에는 추경예산 대비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반면, 2015~2017년에는 3년 연속 초과세수가 발생하였다.¹⁾ 2015년 이후의 초과세수 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에 2.2조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한 이후 2016~2017년에 각각 9.8조원과 14.3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여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013~2017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국세수입 예산		실적(B)	추경예산 대비	
	본예산	추경예산(A)		증감액(C=B-A)	증감률(C/A)
2013	216.4	210.4	201.9	△8.5	△4.0
2014	216.5	216.5	205.5	△10.9	△5.1
2015	221.1	215.7	217.9	2.2	1.0
2016	222.9	232.7	242.6	9.8	4.2
2017	242.3	251.1	265.4	14.3	5.7

자료: 대한민국 정부 「국가결산보고서」(각 연도)

이에 국회도 정부로 하여금 연례적인 대규모 초과세수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경제지표 전망의 현실성을 제고하고, 세수추계 관련 기관들과의 의견교류를 보다 실질화하며, 현행 세수추계방식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초과세수 발생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세수오차를 축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²⁾

1) 2015년의 경우에는 본예산 대비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으나, 세입예산을 감액경정하여 결과적으로 추경예산 대비 초과세수가 발생하였다.

2) 기획재정부위원회,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부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18. 8.

나. 분석의견

첫째,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국세수입을 예산액 268.1조원 대비 21.8조원 초과하는 289.9조원 수납될 것으로 전망하여 4년 연속 초과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그 규모 역시 4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국세수입은 예산액 268.1조원 대비 21.8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여 289.9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에서 초과세수(8.9조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초과세수 역시 6.6조원과 2.7조원 발생하는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국세수입이 예산액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17 실적(A)	2018				
		예산 (B)	NABO 전망(C)	전년대비 (C-A)		예산대비 (C-B) 차이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265.4	268.1	289.9	24.5	9.2	21.8
일반회계	258.5	260.8	281.7	23.2	9.0	20.9
내국세	227.8	228.0	250.6	22.8	10.0	22.6
1. 소득세	75.1	72.9	81.8	6.7	8.9	8.9
2. 법인세	59.2	63.0	69.6	10.4	17.6	6.6
3. 상속증여세	6.8	6.2	7.2	0.4	5.9	1
4. 부가가치세	67.1	67.3	70.0	2.9	4.3	2.7
5. 개별소비세	9.9	10.2	10.1	0.2	2.0	△0.1
6. 증권거래세	4.5	4.0	6.4	1.9	42.2	2.4
7. 인 지 세	0.9	0.9	0.9	0	0.0	0
8. 과년도수입	4.4	3.4	4.5	0.1	2.3	1.1
교통·에너지·환경세	15.6	16.4	15.3	-0.3	△1.9	△1.1
관 세	8.5	9.4	8.9	0.4	4.7	△0.5
교 육 세	5.0	5.2	5.1	0.1	2.0	△0.1
종합부동산세	1.7	1.8	1.8	0.1	5.9	0
특별회계	6.9	7.3	8.2	1.3	18.8	0.9
주 세	3.0	3.5	3.4	0.4	13.3	△0.1
농 특 세	3.8	3.8	4.8	1	26.3	1

주: 2018년 NABO전망은 2018. 10. 기준 전망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둘째,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도 국세수입을 정부가 전망한 국세수입 299.3조 원보다 3.3조원 초과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NABO 전망에 따르면, 2019년도 국세수입은 정부가 제출한 국세수입 예산안 299.3조원 대비 3.3조원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8년 국세수입에 대한 NABO 전망과 정부 전망 간의 차이, 세목별 전망의 근거가 되는 거시경제 전망 차이 등에 기인한다.

주요 세목을 살펴보면, 2019년도 소득세는 83.1조원으로, EITC 확대 지급에 따른 근로·종합소득세의 증가율 둔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소세 전환 등으로 2018년 전망(81.8조원) 대비 1.3조원(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소득세 예산안(80.5조원)을 2.6조원 상회하는 수준으로, 2019년 소득세 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2018년 소득세를 NABO가 정부보다 8.9조원 높게 전망한 것 등에 기인한다.

2019년도 법인세는 77.9조원으로, 2019년 법인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2018년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2018년 전망(69.6조원) 대비 8.3조원(1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법인세 예산안(79.3조원)을 1.3조원 하회하는 수준으로, 법인세 전망에 이용되는 2018년 경상 GDP 성장률을 NABO가 정부보다 0.3%p 낮게 전망³⁾한 것 등에 기인한다.

2019년도 부가가치세는 72.9조원으로, 경상 민간소비 증가와 통관수입액 증가에 따라 2018년 전망(70.0조원) 대비 2.8조원(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부가가치세 예산안(72.2조원)을 0.6조원 상회하는 수준으로, 2019년 부가가치세 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2018년 부가가치세를 NABO가 정부보다 2.7조원 높게 전망한 것에 기인한다.

기타 세목 중에는 종합부동산세가 2.8조원으로, 최근 부동산의 공시가격의 인상 및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강화에 따라 2018년 전망(1.8조원) 대비 1.0조원(5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예산안(2.6조원)을 0.2조원 상회하는 수준으로, 2018년 세법개정안의 세수 효과 전망 차이 등에 기인한다.

3)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및 중기경제전망」, 2018. p.28

[2019년도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2018		2019				
	추경	NABO 전망(A)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대비(C-A)		예산안 대비 차이 (C-B)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268.1	289.9	299.3	302.6	12.7	4.4	3.3
일반회계	260.8	281.7	291.8	294.6	12.9	4.6	2.8
내국세	228.0	250.6	59.3	261.9	11.2	4.5	2.5
1. 소득세	72.9	81.8	80.5	83.1	1.3	1.6	2.6
2. 법인세	63.0	69.6	79.3	77.9	8.3	11.9	△1.3
3. 상속증여세	6.2	7.2	7.2	7.3	0.1	0.8	0.1
4. 부가가치세	67.3	70.0	72.2	72.9	2.8	4.0	0.6
5. 개별소비세	10.2	10.1	10.4	10.1	0.0	0.2	△0.2
6. 증권거래세	4.0	6.4	4.5	5.0	△1.5	△22.6	0.4
7. 인 지 세	0.9	0.9	0.9	1.0	0.0	4.4	0.0
8. 과년도수입	3.4	4.5	4.3	4.6	0.1	2.7	0.4
교통·에너지·환경세	16.4	15.3	15.8	15.7	0.4	2.5	△0.1
관 세	9.4	8.9	9.1	9.0	0.1	1.6	△0.0
교 육 세	5.2	5.1	5.0	5.2	0.2	3.5	0.2
종합부동산세	1.8	1.8	2.6	2.8	1.0	52.4	0.2
특별회계	7.3	8.2	7.6	8.0	△0.2	△2.6	0.4
주 세	3.5	3.4	3.4	3.5	0.2	4.5	0.1
농 특 세	3.8	4.8	4.1	4.5	△0.4	△7.4	0.4

주: 1. 2018년 국세수입 본예산과 추경예산은 동일함

2. NABO전망은 2018. 10. 기준 전망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1-2.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종합부동산세 세수효과 고려 필요

가. 현 황

종합부동산세¹⁾는 「종합부동산세법」²⁾에 따라 일정액을 초과하는 주택·토지에 대해 부과하는 보유세이다. 종합부동산세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960억원이 증액된 2조 5,77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종합부동산세	1,651,974	1,780,100	1,780,100	2,557,000	796,000	44.8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종합부동산세 예산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2018.8.31.)에 근거하여 편성되었으나, 최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9.13.)을 발표하였으므로, 향후 관련 법률안의 국회 심사 경과를 고려하여 예산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8년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주택시장이 가열되는 모습³⁾을 보이고, 매물 부족 상황에서 투기수요 등의 가세로 시장불안이 가중되어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1) 코드: 일반회계 39-391

2)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전국 주택가격상승률(%) : (18.5)△0.03 (6)△0.02 (7)△0.02 (8) 0.02

서울 주택가격상승률(%) : (18.5) 0.21 (6) 0.23 (7) 0.32 (8) 0.63

지방 주택가격상승률(%) : (18.5)△0.13 (6)△0.12 (7)△0.13 (8)△0.17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된 종합부동산세 인상 외에 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인상⁴⁾, ② 조정대상지역 외의 2주택 및 고가의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⁵⁾, ③ 세 부담 상한의 상향조정⁶⁾ 등의 추가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정부 세법개정안 대비 9.13 대책안 비교]

1주택자 시가 다주택자 시가 (과세표준)	현행	세법개정안		9.13.대책안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일반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약 18억원 이하 약 14억원 이하 (3억원 이하)	0.5%	현행유지	현행유지	현행유지	0.6% (+0.1%p)
약 18~23억원 약 14~19억원 (3~6억원)				0.7% (+0.2%p)	0.9% (+0.4%p)
약 23~34억원 약 19~30억원 (6~12억원)	0.75%	0.85% (+0.1%p)	1.15% (+0.4%p)	1.0% (+0.25%p)	1.3% (+0.55%p)
약 34~102억원 약 30~98억원 (12~50억원)	1.0%	1.2% (+0.2%p)	1.5% (+0.5%p)	1.4% (+0.4%p)	1.8% (+0.8%p)
약 102~181억원 약 98~176억원 (50~94억원)	1.5%	1.8% (+0.3%p)	2.1% (+0.6%p)	2.0% (+0.5%p)	2.5% (+1.0%p)
약 181억원 초과 약 176억원 초과 (94억원 초과)	2.0%	2.5% (+0.5%p)	2.8% (+0.8%p)	2.7% (+0.7%p)	3.2% (+1.2%p)
세부담상한	150%	현행유지		150%	300%

주: 1. 1주택자 시가 약 13억원(공시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시가 약 9억원(공시가격 6억원)은 과세 제외

2. ()는 현행대비 증가 세율

자료: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대책」, 2018. 9. 13.

- 4) (정부 세법개정안) 3주택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 → (9.13. 대책안)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0.1~1.2%p 세율 인상
- 5) (정부 세법개정안) 시가 약 23억원(과표 6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 시가 약 23억원 초과구간 +0.1~0.5%p 인상 → (9.13. 대책안) 시가 약 18~23억원(과표 3~6억원) 구간 신설, 시가 약 18억원 (과표 3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 시가 약 18억원 초과구간 세율 +0.2~0.7%p 인상
- 6) (정부 세법개정안) 현행 유지(전년도 재산세+증부세의 150%) → (9.13. 대책안)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150%) 유지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 및 “종합부동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므로, 종합부동산세 세입예산안에는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만이 반영되어 있다. 정부는 수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로 당초 정부안에 비해 2,700억원의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대책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⁷⁾에 따른 2019년도 세수효과를 6,603억원으로 추계하였다.

따라서,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세입예산액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한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고려하여 세입예산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정부 세법개정안 대비 9.13. 대책안 비교]

(단위: 만명, 억원)

구 분	인원 ¹⁾ (2016년 기준)	세수효과	
		당초 정부안	수정안 ²⁾
주 택	27.4 ³⁾	+1,500	+4,200 (+2,700)
종합합산토지	6.7	+5,500	좌 동
별도합산토지	0.8	+450	좌 동
합 계	34.9	+7,450	+10,150 (+2,700)

주: 1) 국세통계연보

2) ()는 당초 정부안 대비 증가

3) 세율인상 대상인원(16년 결정기준) : (당초 정부안) 2.6만명 (수정안) 21.8만명

자료: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대책」, 2018. 9. 13.

7) 김정우의원 대표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8. 10. 08. 발의, 의안번호 2015906), 시행령 개정사항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내용은 미반영

1-3. 조세지출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조세지출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한다.¹⁾ 조세지출은 영구적으로 세부담을 경감하는 직접감면과 일정기간 과세를 연기하는 간접감면으로 구분이 되는데, 직접감면은 비과세, 소득공제, 저율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기타감면 등으로 구성되며, 간접감면은 준비금, 과세이연, 이월과세 등으로 구분된다.

[조세지출의 유형]

구 분		내 용
직접감면	비과세	특정 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
	소득공제	과세소득에서 일정금액을 차감
	저율과세	일반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세액감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
	세액공제	투자금액 등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기타감면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등 다른 감면 유형에 속하지 않는 직접감면
간접감면	준비금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준비금을 사내적립하는 경우 그 사내적립금을 일정기한 손비로 인정하여 과세를 연기
	과세이연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과세를 연기
	이월과세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그 출자 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연기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1)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한편, 정부는 「국가재정법」²⁾에 따라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세감면 실적·전망 금액을 집계·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국세감면액은 2015년 35.9조원에서 2019년 47.4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2015~2019년)]

(단위: 조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조특법상 조세지출	19.4	54.0	19.5	52.2	20.2	50.9	21.1	50.4	26.3	55.4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16.0	44.6	17.5	46.7	18.4	46.4	19.6	46.9	20.8	43.9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0.5	1.4	0.4	1.1	1.1	2.7	1.2	2.9	0.3	0.7
국세감면액	35.9	1000	37.4	1000	39.7	1000	41.9	1000	47.4	1000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2019년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에 근접한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획재정부는 향후 국세감면율이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의 국세감면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에 14.1% 수준이었던 국세감면율이 2017년 13.0%까지 하락한 후, 2018년에는 13.5%로 다시 상승할 전망이며, 2019년에는 13.7% 수준까지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세감면율의 상승은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3조 5,544억원), 자녀장려금 지급(+3,729억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1,978억원)에 따른 조세지출 증가에 기인한다.

2)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연도별 국세감면율 및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추이(2015~2019년)]

(단위: 조원, %)

구 분	2015 실적	2016 실적	2017 실적	2018 전망	2019 전망
국세감면액(A)	359,017	374,436	396,769	418,598	474,125
국세수입총액(B)	2,178,851	2,425,617	2,653,849	2,681,290	2,993,235
국세감면율[A/(A+B)]	14.1	13.4	13.0	13.5	13.7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7	14.7	14.4	14.0	13.8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조세지출의 확대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조세지출의 급격한 확대는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국가재정법」³⁾에서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세감면율이 일정한 비율(이하 “법정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 13.8%에 0.1%p 미치지 못하는 13.7%로, 이는 2015~2018년 국세감면율과 법정한도의 차이(0.5~1.4%)를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⁴⁾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향후 국세감면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국가재정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이라 함은 법 제61조에 따라 정부가 작성한 결산 중 국세수납액을 말한다. 이 경우 결산을 작성하기 이전 회계연도의 국세 수입총액은 법 제33조의 예산안 중 국세 세입예산액을 말한다.

② 법 제88조제1항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의 국세감면액을 말한다.

③ 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2018.9.)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R&D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서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되, 고용 등 경제활동 유도 효과에 맞추어 비과세·감면 정비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가. 현 황

정부출자수입¹⁾은 36개 출자기관 중 일반회계 기관(28개)에 대한 배당금 수입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관리하는 기업지분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통한 배당금 수입이다. 정부출자수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68억 5,500원이 감액된 6,972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²⁾

[2019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정부출자수입	795,030	904,149	904,149	697,294	△206,855	△22.9
정부배당대상기업	790,790	901,349	901,349	694,549	△206,800	△22.9
국세물납지분기업	4,240	2,800	2,800	2,745	△55	△2.0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전체 정부출자수입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과 각 부처 소관 특별회계·기금 정부출자수입(36개 정부 출자기관 전체에 대한 배당수입)으로 구성된다. 2019년 예산안에 따른 배당수입 계획에 따르면,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 6,946억원과 특별회계·기금 정부출자수입 7,416억원 등 총 1조 4,362억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분석의견

2019년도 정부출자수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25)

1) 코드명: 일반회계 52-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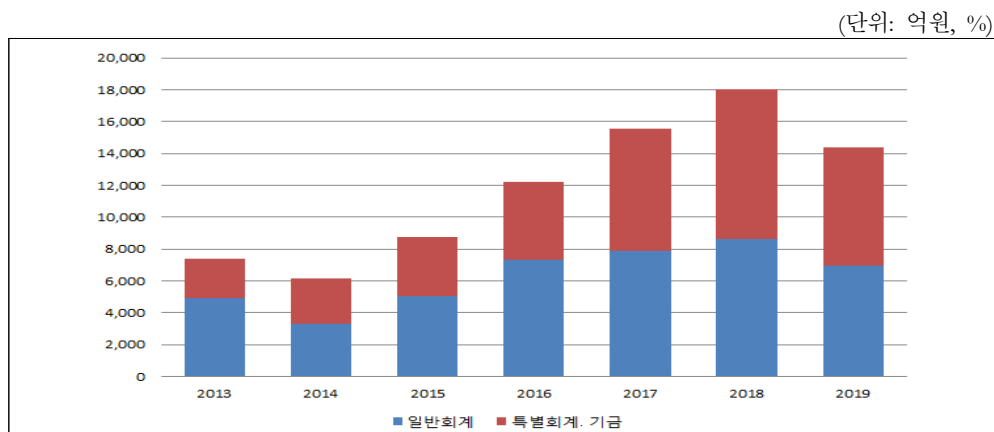
2)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세입예산안은 6,945억 4,900만원이며, 국세물납증권에 대한 배당금은 27억 4,500만원이다.

첫째, 2019년도 정부출자수입은 정부출자기관의 경영실적 악화로 인하여 2014년 정부배당 확대정책 이후 최초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4년에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해외 주요국 공기업의 배당수준을 고려하여 배당성향³⁾을 2015년 25%에서 매년 3%p씩 조정하여 2020년 40%까지 상향하겠다는 내용의 중기목표를 제시하는 등 배당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⁴⁾ 이에 따라 정부출자수입은 2014년 6,179억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8년 1조 8,060억원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출자기관의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당기순이익 감소로 인하여 2019년 정부출자수입은 2014년 이후 최초로 감소할 전망이다.

[2013~2019년도 정부출자수입 현황]



주: 1. 2013~2018년은 실적 기준, 2019년은 예산안 기준으로 작성
 2. 특별회계·기금의 출자수입은 기획재정부 전망에 따른 것으로, 소관 부처가 편성한 예산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대표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018년 923억원의 배당금이 수납되었으나, 2019년에는 배당이 실시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 단가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한국전력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4.3조원에서 2017년 1.5조원으로 감소함에 이어, 2018년에는 0.2조원 손실(전년 대비 △1조 7,059억원, △113.2%)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 정부가 수령한 배당금을 정부 지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

4) 기획재정부,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방향」, 2014.12.19.

[2015~2018년 정부 출자기관 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

연번	기관명	2015	2016	2017	2018(전망)
1	한국토지주택공사	9,625	22,390	27,607	22,129
2	중소기업은행	10,239	10,267	13,141	13,550
3	한국수출입은행	220	△9,901	1,728	2,800
4	한국주택금융공사	1,039	2,794	2,742	2,863
5	한국공항공사	1,874	1,902	1,898	1,439
6	한국산업은행	△18,951	△32,359	4,348	1,160
7	부산항만공사	1,298	1,068	685	1,054
8	한국도로공사	1,318	1,347	1,355	1,199
9	한국가스공사	557	△8,539	△7,677	1,854
10	울산항만공사	302	272	303	278
11	한국자산관리공사	829	1,095	426	435
12	인천항만공사	159	115	175	140
13	한국조폐공사	52	62	91	52
14	한국방송공사	75	248	564	21
1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6	29	△186	26
16	한국농어촌공사	643	1,700	277	51
17	한국감정원	124	140	87	24
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1	42	61	4
19	한국전력공사	101,657	42,620	15,069	△1,990
20	한국관광공사	△265	△196	94	△102
21	한국교육방송공사	46	8	170	△185
2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42	△77	△114	△73
23	한국수자원공사	△58,044	△1,456	1,616	1,035
24	한국석유공사	△49,544	△6,808	△9,713	△5,243
25	한국광물자원공사	△16,979	△5,300	△161	△700
26	한국철도공사	5,776	△2,044	△8,623	△6,272
27	서울신문사	8	10	13	9
28	여수광양항만공사	193	22	97	△28
29	인천국제공항공사	7,716	9,650	11,164	8,340
30	주택도시보증공사	3,523	4,736	5,655	4,115
31	한국투자공사	193	220	333	245
32	한국지역난방공사	1,158	1,267	699	732
33	대한송유관공사	287	411	354	360
34	88관광개발주식회사	2	0.4	0.2	0.2
35	공항철도주식회사	△385	919	813	825
36	대한석탄공사	△611	△853	△764	△1,379

주: 1. 음영은 특별회계·기금 소관 정부 출자기관

2. 2018년은 전망치(7월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2019년도 정부출자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2019년도 산술평균 기준의 배당성향은 2019년에도 목표를 상회할 전망이다, 배당성향 중기목표 수립 당시의 기준인 가중평균으로 재산출할 경우 배당성향 달성률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는 배당성향을 2015년 25%에서 매년 3%p씩 조정하여 2020년 40% 수준까지 상향하겠다는 중기목표를 제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에도 배당성향을 38.44%까지 상향하여 배당 확대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연도별 배당성향 목표 및 실적]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배당성향 목표(A)		21.50	25.00	28.00	31.00	34.00	37.00	40.00
배당성향 실적(B)	가중평균	21.54	26.13	21.72	28.77	29.48	30.93	-
	산술평균	24.41	28.48	30.25	31.89	34.98	38.44	-
달성률(B/A)	가중평균	113.5	113.9	108.0	102.9	102.9	103.9	-
	산술평균	100.2	104.5	77.6	92.8	86.7	83.6	-

주: 1. 2019년 배당성향 실적은 예산안 기준으로 작성

2. 특별회계·기금의 출자수입은 기획재정부 전망에 따른 것이므로, 소관 부처가 편성한 예산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38.44%의 배당성향은 배당을 실시할 예정인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산술평균⁵⁾하여 산출한 것이다. 다만, 배당성향 중기목표 수립 시 산출 방식⁶⁾과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 정부배당 확대정책의 추진배경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출자기관의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기관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가중평균 기준 배당성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⁷⁾

5) 출자기관별 배당성향의 단순평균

6) 배당총액/출자기관 당기순이익 총액

7) 기획재정부는 2015년까지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출자기관 배당성향을 산출한 반면, 2016년부터는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출자기관 배당성향을 산출하도록 산출기준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가중평균으로 배당성향을 산정할 경우 전체 평균 배당성향이 당기순이익이 큰 기관의 배당성향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일부 기관의 특이요인을 제외한 합리적인 배당성향을 산출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하였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수입의 확대 및 민간 배당인상 견인이라는 정부배당 확대 정책의 추진배경 등을 고려할 때, 산술평균만을 기준으로 배당성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른 배당성향을 가중평균으로 산출하면 30.93% 수준이다. 이는 전년도 가중평균 배당성향 29.48%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준이나, 중기목표인 37.00%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또한, 가중평균 기준 배당성향 목표 대비 실적은 83.6% 수준으로 2017년 92.8% 수준에서 매년 하락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이번 배당계획은 다소 소극적으로 수립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8. pp.15.~20.)

3-1. 국고금 운용수익의 세입 이입 원칙 마련 필요

가. 현 황

기타재산수입¹⁾은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기획재정부의 일반회계 기타재산수입은 물납주식매각 이자수입, 국고금 관리 이자수입, 한국은행 잉여금, 국고금 운용수익으로 구성된다. 이 중 국고금 운용수익은 국고금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의 적립금을 세입으로 이입하는 것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2,0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19년도 기타재산수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기타재산수입	2,323,621	2,177,875	2,734,242	2,113,350	△620,892	△22.7
국고금 운용수익	0	0	0	200,000	200,000	순증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18년말 국고금 운용수익 예상 적립금 4,070억원에서 2019년도 예상 일시차입 이자비용 2,070억원을 차감한 세입이입 가용잔액 2,000억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이입할 계획이다.

[2019년도 국고금 운용수익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① 2019년 중 가용 운용수익금(A) = 약 4,070억원*

* '18년말 운용수익금 예상 누적액(약 3,259억원) + '19년 운용수익금 예상액(약 811억원)

② 2019년 운용수익금 사용 최대규모(B) = 약 2,070억원*

* 이자비용 최소소요 예상액(2,176억원) - 일반회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편성액(100억원)

③ 세입이입 가용잔액(C) = 2,000억원 (C=A-B)

⇒ 세입이입 예산안 = 2,000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54-545

나. 분석의견

국고금 운용수익 적립금의 세입 이입 여부, 이입 규모 등에 대한 원칙을 수립함으로써 국고금 관리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금의 출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계정의 여유자금을 운용하여 재정수입을 창출하고 있으며, 국고금 운용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²⁾

최근 국고금 운용수익 적립금 규모는 세수여건 개선에 따른 국고금 운용 규모 증가, 자금조달 규모 감소 및 저금리 기조에 따른 외부 차입조달비용 감소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8월 기준 2,765억원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 국고금 운용수익 사용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전년도 이월액(A)	1,128	-	26	82	786	2,059
국고금 운용수익(B)	333	483	545	1,259	1,433	721
수익금 사용액(C)	1,461	457	489	555	160	15
운용수익 적립금(A+B-C)	-	26	82	786	2,059	2,765

주: 1. 수익금 사용액은 차입이자 지급, 재정증권 발행이자 등

2. 2018년 12월 말 예상 운용수익 적립금은 3,259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2) 「국고금 관리법」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단기 대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의 지급
2.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기획재정부는 2018년 말 기준 세입이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용잔액 2,000억원을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이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① 「국고금 관리법」에 국고금 운용수익 적립금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사용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총계주의 원칙³⁾의 예외라는 점에서 가급적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② 국고금 운용수익 적립금은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의 지급 등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규모가 과다할 경우 해당 재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9년도 세입예산안에 국고금 운용수익 적립금의 세입이입분을 편성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고금 운용수익의 세입이입 여부, 세입이입 규모 등의 기준이 미비하여 세입 이입이 정부의 재량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12월 말 기준 2,825억원의 국고금 운용수익 적립금 중 1,000억원을 2012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이입 처리한 바 있으나, 2016~18년 국고금 운용수익 적립금이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원이 2019년도 세입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자금부족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취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고금 적립금의 세입이입 처리기준⁴⁾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4) 예를 들면, 국고금 운용수익 적립금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세입이입 처리하되, 국고금 운용수익이 수익금 사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2.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 예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¹⁾은 국고금 출납 시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 충당을 위해 조달한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및 재정증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170억원이 감액된 1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2019년도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시차입금이자상환	0	27,000	27,000	10,000	△17,000	△63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제4항²⁾ 및 제34조제2항³⁾에서는 국고금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의 경우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국고금 운용수익 적립금만으로는 부담할 수 없는 일시차입금 및 재정증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1) 코드: 일반회계 2272-561

2)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자금의 조달) ④ 제1항에 따른 자금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조달한다. 다만,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3) 「국고금 관리법」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의 지급
2.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나. 분석의견

이 사업은 2016~2018년 3년 연속으로 예산 과다계상에 따라 전액 불용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6~2017회계연도의 경우 세수여건 개선에 따른 초과세입의 발생으로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고금 운용수익 적립금 만으로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모두 충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사업 예산은 2년 연속 전액 불용되었다. 또한, 2018년 8월말 기준 2,765억원 규모의 국고금 운용수익 적립금이 남아 있어 올해 역시 이 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5	60,000	60,000	22,000	82,000	81,954	136.6	99.9	46
2016	54,000	54,000	0	54,000	0	0.0	0.0	54,000
2017	27,000	27,000	0	27,000	0	0.0	0.0	27,000
2018	27,000	27,000	0	27,000	0	0.0	0.0	-
2019	10,000	-	-	-	-	-	-	-

주: 2018년 8월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이자상환 소요 예상액 약 2,170억원에서 국고금 운용수익금 예상액 2,070억원을 제외한 100억원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이자상환에 소요되는 약 2,170억원은 최근 5년(2013~2017년) 동안의 이자상환액을 근거로 산출하여 세수 여건 개선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의 경향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다계상의 가능성이 있다.

[최근 5년간 이자상환액]

(단위: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전망
이자상환액	2,644	1,850	1,308	555	160	100

자료: 기획재정부

따라서, 일시적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이 사업의 예비적 성격을 감안하되, 이 사업의 최근 집행실적, 국고금 운용수익 적립금과 같은 가용재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및 국고금 운용수익 세입이입 예산안 산출근거]

구분	산출근거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① 2019년 이자비용 최대 소요 예상액(A) : 약 2,176억원* * 95% 신뢰구간 상한 추정치(최근 5개년) [최근 5년간 이자상환액 및 운용수익 규모] (단위 : 억원)																					
	<table border="1"> <tr> <th>구 분</th> <th>'13</th> <th>'14</th> <th>'15</th> <th>'16</th> <th>'17</th> <th>평균</th> </tr> <tr> <td>이자상환액</td> <td>2,644</td> <td>1,850</td> <td>1,308</td> <td>555</td> <td>160</td> <td>1303.4</td> </tr> <tr> <td>운용수익</td> <td>333</td> <td>483</td> <td>545</td> <td>1,259</td> <td>1,433</td> <td>810.6</td> </tr> </table>	구 분	'13	'14	'15	'16	'17	평균	이자상환액	2,644	1,850	1,308	555	160	1303.4	운용수익	333	483	545	1,259	1,433	810.6
	구 분	'13	'14	'15	'16	'17	평균															
	이자상환액	2,644	1,850	1,308	555	160	1303.4															
	운용수익	333	483	545	1,259	1,433	810.6															
② 2019년 가용 운용수익금 예상액(B) : 약 2,070억원 (B=C+G-H) ○ '18년말 운용수익금 예상 누적액(C) : 약 3,259억원 (C=D+E-F) - '17년말 운용수익금 누적액(D) : 2,059억원 - '18년 운용수익금 추정(E) : 약 1,300억원 - '18년 이자상환액 소요 추정(F) : 약 100억원 ○ '19년 운용수익금 예상액(G) : 약 811억원* * 최근 5년 연평균 운영수익 ○ '19년 세입조치 예정(H) : 2,000억원																						
③ 2019년 일반회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 : 2,176(A) - 2,070(B) = 100억원(억단위 절사)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이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

공자기금은 총괄계정¹⁾, 융자계정²⁾, 차관계정³⁾ 등으로 구분된다.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액 규모는 전년 대비 6.7조원 증액된 172.8조원으로 편성되었다.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계획안 총괄표]

(단위: 조원)

계정	조달계획				운용계획			
	주요항목	18	19	증감	주요항목	18	19	증감
총괄	국고채발행	106.4	97.8	△8.6	예탁금	59.5	75.7	16.2
	예수금	25.3	25.2	△0.1	국공채인수	0.1	0.1	0.0
	예탁원리금회수 등	33.6	49.3	15.7	국고채원리금 상환 등	105.7	96.4	△9.3
	계	165.3	172.3	7.0	계	165.3	172.3	7.0
융자	융자원리금회수	0.24	0.17	△0.1	융자지출	0.01	0.01	-
	예수금	-	-	-	예수원리금상환 등	0.6	0.5	△0.1
	예탁원리금회수 등	0.36	0.35	△0.01				
	계	0.6	0.5	△0.1	계	0.6	0.5	△0.1
차관	예탁원리금회수 등	0.2	0.1	△0.1	일반회계 전출 등	0.2	0.1	△0.1
	계	0.2	0.1	△0.1	계	0.2	0.1	△0.1
합 계		166.1	172.8	6.7	합 계	166.1	172.8	6.7

자료: 기획재정부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25)

- 1) 총괄계정은 국고채권의 발행 및 상환 등의 관리, 타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의 통합 관리를 통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기능을 수행하는 계정이다.
- 2) 융자계정은 국민복지 향상과 주요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회수 등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이다.
- 3) 차관계정은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도입하는 차관자금의 회수 및 상환 등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이다.

4-1. 지방채 발행 계획을 고려한 지방채 인수 계획액 반영 필요

가. 현 황

지방채 인수¹⁾는 다른 회계 및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 공공목적의 재정융자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19년도 계획액은 전년과 동일한 1,0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2019년도 지방채 인수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지방채 인수	1,440	100,000	100,000	100,000	0	0.0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지방채 인수 수요가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2019년도 지방채 인수 계획액의 적정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의 최근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15회계연도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14.2%를 나타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회계연도에는 1.2%에 그쳤다. 2018년에도 1,000억원의 계획액이 편성되었으나 아직까지 집행실적이 없다.

[최근 4년간 지방채 인수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2015	1,488,090	210,700	14.2
2016	1,440,559	70,825	4.9
2017	120,000	1,440	1.2
2018	100,000	0	0.0
2019	100,000	-	-

주: 2018년 7월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25)

1) 코드: 공공자금관리기금 1031-100

이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지방채 발행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하여 계획액을 편성하고 있으나,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제출 시점(9월 초)과 다음연도 지방채 발행계획 확정 시점(10월 말)²⁾ 간의 불일치로 적정 수준의 계획액을 편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업의 2019년 계획안 규모를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지방채 인수 규모가 감소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감축 기조, 지방재정 여건의 개선, 저금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은행 등을 통한 재원 조달 선호 현상 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이후 공공 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지방채 인수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부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로는 2019년도 계획액인 1,000억원에 미치지 않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살펴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인수 수요는 2015년 965억원에서 2016년 575억원, 2017년 247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18년에는 수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지방채 인수 계획액 및 실적]

(단위: 억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계획	965	575	247	0
실적	2,107	708	14	0

주: 2018년 7월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조(지방채발행의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2항 단서·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관계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회계연도 중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이 사업의 최근 집행실적과 10월 말 확정 예정인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업의 계획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2. 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 계획액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¹⁾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19년도 계획액은 전년과 동일한 2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2019년도 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기타민간차입이자상환	1,175	20,000	20,000	20,000	0	0.0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의 계획액을 한국은행일시차입의 최대 일평균 1조원에 기준 이자율 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2019년도 기타민간차입이자상환 계획액 산출근거]

한국은행일시차입 최대 일평균(1조원) × 기준 이자율(2%)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 계획액은 과거 실제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함에 따라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며, 2019년도 계획액 역시 유사사업과 비교하여 높은 기준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므로, 국회의 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계획액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의 최근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2015년에 19.2%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에는 6.1%, 2017년에는 5.9% 수준에 그쳤다. 2018년 9월 말 기준 200억원의 계획액 중 집행된 금액은 없다.

1) 코드: 공공자금관리기금 1071-760

[최근 4년간 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2015	40,000	7,698	19.2
2016	30,000	1,837	6.1
2017	20,000	1,175	5.9
2018	20,000	0	0.0
2019	20,000	-	-

주: 2018년 7월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이와 같은 집행실적 부진은 기준이자율을 높게 책정하여 계획액을 과다계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²⁾ 기획재정부는 2015~2017년 2.3~4.5%의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계획액을 산정하였으나, 실제 이자율은 1.52~2.18%에 불과하였다.

[최근 3년간 계획액 편성 시 기준이자율 및 실제 적용 이자율 비교]

(단위: %, %p)

연도	계획액 편성시 기준이자율	실제 이자율
2015	4.50	2.18
2016	3.00	1.66
2017	2.30	1.52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계획안에는 2%의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이 사업과 유사사업인 일반회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의 기준이자율 1.5%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연례적인 계획액 과다계상에 따라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계획 수립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 심사과정에서 2019년 세수 전망³⁾, 유사사업인 일반회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의 기준이자율(1.5%)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액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그 밖에 우호적인 세수여건에 따른 자금수요 감소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3)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총수입 전망보다 2.3조원 높은 수준으로 총수입을 전망하였다.

가. 현 황

대개도국차관 사업¹⁾은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 제공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기업의 신시장 진출 및 고부가 사업 수주를 지원하여 개발도상국과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19년도 계획액은 전년대비 1,031억 3,000만원 증액된 1조 1,612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19년도 대개도국차관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대개도국차관	748,673	1,058,101	1,058,101	1,161,231	103,130	9.7
아시아차관	231,610	344,022	344,022	370,395	26,373	7.7
아프리카차관	169,223	188,859	188,859	283,382	94,523	50.0
중동-CIS차관	74,129	213,648	213,648	80,613	△133,035	△62.3
중남미차관	71,190	59,652	59,652	64,573	4,921	8.2
태평양(대양주포함)차관	64,302	90,115	90,115	129,740	39,625	44.0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138,218	161,805	161,805	232,528	70,723	43.7

자료: 기획재정부

대개도국차관 사업은 아시아차관, 아프리카차관, 중동 - CIS차관, 중남미차관, 태평양(대양주포함)차관,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등 6개의 세부사업과 159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시아차관 사업은 9개국 71개 내역사업, 아프리카차관 사업은 15개국 33개 내역사업, 중동 - CIS차관 사업은 3개국 7개 내역사업, 중남미차관사업은 3개국 8개 내역사업, 태평양차관 사업은 2개국 11개 내역사업,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은 15개국 29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25)

1) 코드: 대외경제협력기금 3331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집행절차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²⁾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며, 한국수출입은행장에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한국수출입은행장은 현지심사를 통하여 심사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다. 외교부장관은 개도국 정부와 정부 간 협정을 체결하며, 한국수출입은행장은 협정에 따라 해당 개도국의 차주와 차관 공여계약을 체결한다. 수원국은 차관공여계약에 따라 입찰 및 구매를 실시하며, 그

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1조(기금의 지원절차) ① 개도국 정부로부터의 요청에 의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1. 외교부장관, 그 밖에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는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요청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주무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2.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4.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3호에 따라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 사업의 실시가능성, 타당성,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5.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사업의 주무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방침을 결정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의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호에 따라 결정된 지원방침을 외교부장관, 사업의 주무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알린다.
7. 외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지원방침을 해당 개도국 정부에 알리며, 이를 해당 개도국 정부가 수락할 때에는 정부 간에 협정을 체결한다.
8.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7호에 따라 체결된 협정에 따라 해당 개도국의 차주(차주) 등과 차관공여계약 등을 체결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주무장관과 협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개발조사사업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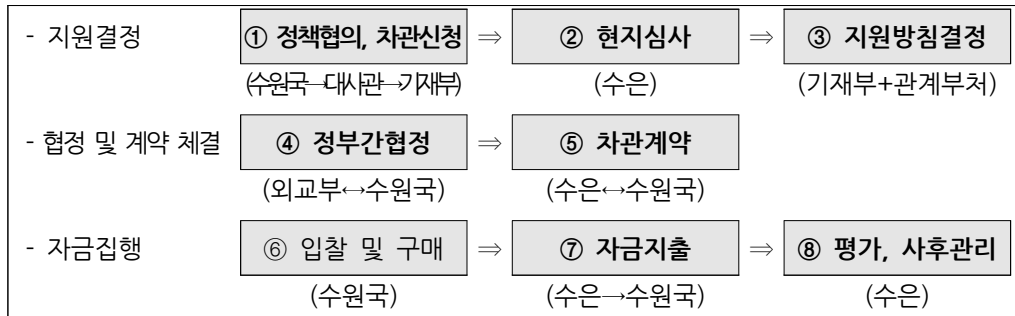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정부 간 협정과 제1항제8호에 따른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차관공여계약이 발효된 때부터 1년 6개월의 기간 내에 차주 등이 구매계약 또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결정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④ 국제개발금융기구, 외국의 개발원조기관 또는 국내외 금융회사 등과 협조하여 융자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규정된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결과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원국에 자금을 지출한다. 이후 한국수출입은행은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대개도국사업의 추진체계]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대개도국차관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집행실적이 부진한 내역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획안의 국회 제출 이후 집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은 국회의 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2019년도 대개도국차관 사업 가운데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과거 집행실적이 부진(2017년 계획액 대비 집행을 70% 미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몽골 시외버스 교체사업 2차 사업, 미얀마 뚝땔 운하 개선 사업·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 사업, 방글라데시 광대역 무선통신망 구축 사업·디지털 토지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베트남 하노이 약학대학 건립 사업·편반~년짜도로 건설 사업·벤째성 종합병원 건립 사업, 온두라스의 출루데카 병원 건립 사업, 잠비아 공공안전정보화 시스템 구축 사업, 파키스탄 말라칸트 터널 건설 사업 등의 경우에는 2018년 9월 현재까지도 집행부진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계획액 대비 집행률 70% 미만 내역사업 중 집행부진 사유 미해소 사업 예시]

(단위: 백만원)

국가	사업명	2019 계획액	지연사유
몽골	몽골 시외버스 교체사업 2차	2,690	사업실시기간의 수용불가능한 사업변경요청으로 L/A 종료
미얀마	뚝뚝 운하 개선사업	859	수원국의 입찰서류 작성 지연 중
미얀마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	18,931	수원국의 일방적인 사업내용 변경요청
방글라데시	광대역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13,173	수원국의 입찰 진행절차 이의제기 등으로 사업 취소완료
방글라데시	디지털 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3,879	수원국 담당인력 장기부재 및 행정지연
베트남	하노이 약학대학 건립사업	8,637	본구매 입찰 지연
베트남	편반~년짜도로 건설사업	1,002	L/A 체결 지연
베트남	벤췌성 종합병원 건립사업	13,674	본구매 입찰지연
온두라스	출루테카 병원 건립사업	1,223	사업실시기간의 사업내용 변경 요청으로 추가 상세설계 중
잠비아	공공안전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	7,244	수원국의 일방적인 사업내용 변경요청
파키스탄	말라칸트 터널 건설사업	1,614	차관한도 초과비용 부담 관련 수원국 정부 협의 중

자료: 기획재정부

특히, 방글라데시의 광대역 무선통신망 구축 사업과 몽골의 시외버스 교체사업 2차의 경우에는 각각 계획안 국회 제출 이후 정부지원방침이 취소되었거나 차관공여계약이 종결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2019년도 계획액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국회 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가능성이 없는 이들 사업의 계획안 반영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개도국 차관 사업은 수원국의 사정 등으로 집행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나,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신흥공여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신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해서는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개도국 차관 사업 중 집행이 부진한 내역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는 지연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하여 집행실적을 제고할 것을 주문한 바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에서도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의 경우 타 과제와 비교할 때 예산집행률의 부진을 타개할 근본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대개도국 차관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므로 원인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집행부진 사유가 수원국 사정에 따른 것인지 또는 우리나라의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것인지, 수원국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행정절차 지연에 의한 것인지 또는 차관공여계약조건과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함에 따른 것인지 등의 원인을 분석한 후, 집행부진 원인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수원국의 요청에 따라 당초 정부지원방침에 부합하지 않은 중대한 사업 내용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행하고 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구매계약 체결 기업의 피해가능성 전가 방지를 위해 정부가 보다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수원국의 사정에 따른 사업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재정정보원법」에 의해 2016년 7월 설립되었으며, 2017년부터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최초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2018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변경되었다.

한국재정정보원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한국재정정보원 운영¹⁾,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운영²⁾,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 구축운영³⁾,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⁴⁾, 재정정보 분석⁵⁾ 사업을 위하여 출연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2019년 예산안에는 2018년 대비 61억 5,200만원(14.6%) 증가한 482억 9,800만원의 출연금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한국재정정보원 관련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 결산	2018		2019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15,770	21,963	21,963	24,219	2,256	10.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정보화)	7,705	6,419	6,419	5,606	△813	△12.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운영(정보화)	1,117	10,926	10,926	15,774	4,848	44.4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정보화)	2,154	2,133	2,133	2,029	△104	△4.9
재정정보 분석	-	705	705	670	△35	△5.0
합계	26,746	42,146	42,146	48,298	6,152	14.6

주: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출연금이 포함된 세부사업 중 일반출연금(350목) 만을 추출하여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안옥진 예산분석관(ojahn@assembly.go.kr, 788-3731)

1) 코드: 일반회계 2713-504

2) 코드: 일반회계 2713-500

3) 코드: 일반회계 2713-501

4) 코드: 일반회계 7134-501

5) 코드: 일반회계 2713-506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사업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운영 사업은 국가 재정업무 전 과정의 통합적 수행을 지원하는 dBrain시스템의 운영 및 기능의 지속적 개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e나라도움) 구축운영 사업은 국고보조금의 전 처리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유지·개선 등 운영을 위한 사업이다.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사업은 기획재정부 및 소속 산하기관 등 10개 기관의 홈페이지와 정보시스템 등에 대하여 한국재정정보원이 사이버안전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사이버 관제를 총괄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재정정보 분석 사업은 dBrain, e나라도움 등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시스템에서 생성된 재정정보의 정책적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6-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

가. 현 황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사업¹⁾은 국고보조금 전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e나라도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3억 4,500만원이 증액된 168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19년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	23,224	14,494	14,494	16,839	2,345	16.2
한국재정정보원 출연금	5,970	10,926	10,926	15,774	4,848	44.4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기획재정부는 업무의 효율성 증진, 보조금 부정수급 감축,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의 궁극적 효과가 성과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의 모든 처리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보조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며,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6년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 1월 시스템 1차 개통에 이어 7월에는 시스템을 완전히 개통하였다.

시스템 BPR·ISP가 수행되었던 2015년의 경우 “시스템구축 관련 분석·설계 진척도”가, 시스템이 구축되었던 2016~2017년의 경우 “시스템구축 진척도”가 각각 성과지표로 설정되었으며, 처음으로 연간 시스템이 가동된 2018년의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가동률”이 성과지표로 설정되었다.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25)

1) 코드명: 일반회계 2713-50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사업의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

(단위: %)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시스템구축 관련 분석·설계 진척도	-	목표	100	-	-	-	-
		실적	100	-	-	-	-
		달성률	100.0	-	-	-	-
시스템구축 진척도	PMS 상에서의 시스템 구축 누적 진척률	목표	신규	78	100	-	-
		실적	신규	67.2	100	-	-
		달성률	신규	86.2	100.0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가동률	연간 전산장비 운영시간 대비 연간 총 가동시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98	99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률	신규	신규	신규	-	-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이와 같은 시스템 가동률은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만 기능할 뿐, 업무의 효율성, 보조금 부정수급 감축 효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의 결과를 나타낼 수 없는 한계가 있어, 가급적 프로그램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시스템 운영 초기 이용자의 여러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유인 제공을 위해서도 성과지표에 시스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통합관리망 시스템 개통에 따른 궁극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2. 한국재정정보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사업(정보화 사업)에 포함된 사무실 임차료의 기관운영비로의 이관 고려 필요

가. 현 황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사업¹⁾은 국고보조금의 전 처리과정을 통합관리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관련 정보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은 이를 위해 출연금을 수령 받고 있다.

본 사업은 정보화사업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7²⁾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 받아 해당 시스템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에 해당 사업과 관련한 한국재정정보원의 출연금으로 전년 대비 48억 4,800만원(44.4%) 증가한 157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9년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	23,224	14,494	14,494	16,839	2,345	16.2
한국재정정보원 출연금	5,970	10,926	10,926	15,774	4,848	44.4

자료: 기획재정부

상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사업 중 한국재정정보원 출연금의 2019년 예산안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e나라도움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예산안이 61억 4,2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사용자 지원실(콜센터 운

안옥진 예산분석관(ojahn@assembly.go.kr, 788-3731)

1) 코드: 일반회계 2713-501

2)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④ 기획재정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개선 등 운영에 관한 업무
2. 보조금관리정보 및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신청, 접수, 결정, 교부 및 사후관리의 전자적 지원에 관한 업무
4.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관리에 관한 업무

영) 사업 예산안이 31억 900만원 편성되어 있다. 또한, 해당 예산안에는 운영사업 사무공간 임차료 7억 9,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사업 한국재정정보원 출연금 예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2018(a)	2019(b)	증감(b-a)
재정정보원 출연금	10,926	15,774	4,848
e나라도움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5,502	6,142	640
사용자 지원실(콜센터 운영)	3,109	3,109	0
e나라도움 기능개선	0	1,677	1,677
예탁금관리방식 개선	0	1,267	1,267
사용자 교육 운영	946	1,122	176
모바일시스템 개발	0	658	658
서비스관리시스템 도입 및 구축	0	71	71
부정징후 모니터링 패턴 개선	0	224	224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추진	0	200	200
국제품질표준 인증 취득	0	150	150
공공요금 및 제세	0	125	125
개인정보 관리체계(PIMS) 및 정보관리체계 사후 심사	0	94	94
기업신용정보 제공서비스 수수료	89	89	0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운영	125	0	△125
ISTM 도입 및 구축	71	0	△71
정보보안 컨설팅 및 정보 관리체계 인증	262	0	△262
운영사업 사무공간 임차료	772	796	24
기타 운영지원	50	50	0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나. 분석의견

한국재정정보원은 정보화사업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한 운영사업 사무공간 임차료를 기관 경상 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9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사업의 한국재정정보원 출연금 예산에는 운영사업 사무공간 임차료가 2018년 대비 2,400만원(3.1%) 증가한 7억 9,600만원 편성되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사업의 한국재정정보원 출연금 예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2018 (a)	2019 (b)	증감 (b-a)	증감율 (b-a)/a
재정정보원 출연금	10,926	15,774	4,848	44.4
운영사업 사무공간 임차료	772	796	24	3.1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상기 임차료는 한국재정정보원이 위치하고 있는 중구 퇴계로 메트로타워 빌딩의 17층 전체(1,234.14㎡) 임차료로, 해당 층은 e나라도움 운영단이 자체 사무실, 개인정보 TF, 사용자지원센터, 운영 위탁사업단, 전산 교육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운영사업 사무공간 임차료 실 사용 현황]

	사용 부서	
	e나라도움 운영단	e나라도움 운영단
17층 면적 (1,234.14㎡ - 373평)	사업자	e나라도움 개인정보 TF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
	사용자 교육장	e나라도움 운영 위탁사업단
		e나라도움 전산 교육장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사업은 정보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정보화 사업 중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 보수하기 위한 사업에는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구입비 및 임차료, 정보시스템 개발비 및 컨설팅 비용,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경비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임차료는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 임차료를 말하며, 전산장비 수용을 위한 공간이 아닌 상기와 같은 일반 사무실 임차료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기획재정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상 정보화 사업 중 임차료 예산편성 관련 내용]

7. 정보화 사업
<항목별 지침>
(1) 장비구입비 및 임차료
○ HW 및 SW 임차료
- 기존 임차분은 기존 계약을 근거로 임차료 편성
- 신규 임차는 임차기간에 따라 평균 임차료율을 적용하여 산정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8.4.

기획재정부는 한국재정정보원 운영³⁾ 사업을 위한 출연금 예산으로 2019년에 24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당 사업에는 2018년 대비 9,400만원(3.0%) 증액한 건물임차료 32억 1,8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사업의 경상운영비 중 건물임차료]

(단위: 백만원, %)

	2018 (a)	2019 (b)	증감 (b-a)	증감율 (b-a)/a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21,963	24,219	2,256	10.3
경상운영비	6,548	6,214	△334	△5.1
• 건물임차료	3,124	3,218	94	3.0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재정정보원이 출연금을 받아 수행하는 또 다른 정보화 사업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사업 및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 사업과 관련한 사무공간 임차료는 해당 정보화 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액 상기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사업의 경상운영비 내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정보화 사업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한 운영사업 사무공간 임차료를 기관 경상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⁴⁾

3) 코드: 일반회계 2713-504

4) 기획재정부는 상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사업의 운영사업 사무공간 임차료는 예산의 성격이 한국재정정보원의 기관 운영비라기보다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사업을 위한 예산이라는 입장이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혁신성장활성화 사업을 통한 성과 도출 노력 강화 필요

가. 현 황

혁신성장활성화 사업¹⁾은 혁신성장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조정하여 혁신성장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8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예비비 45억 4,6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2019년도 예산안에는 14억 8,1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2019년도 혁신성장활성화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혁신성장활성화	0	0	0	1,481	1,481	순증

주: 2018년도의 경우 예비비의 배정으로 예산현액은 45억 4,600만원임

자료: 기획재정부

이 사업은 혁신성장 홍보,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방문, 혁신성장 정책과제 발굴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혁신성장지원 사업(9억 3,900만원), 혁신성장 옴브즈만 지원단 운영 등을 위한 혁신성장민간지원활성화 사업(5,500만원), 회의수당, 사무실 임차료 등을 위한 혁신성장사업지원 사업(4억 8,700만원)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1331-303

[2019년도 혁신성장활성화 사업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산출내역		예산안
혁신성장 지원	일반 수용비	○ 혁신성장 홍보비용 (200백만원) ○ 인쇄비용 및 소모품 (95백만원)	295
	관리 용역비	○ 핵심규제 혁신 프로세스 플랫폼 운영(18백만원)	18
	국내 여비	○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방문(184백만원) ○ 혁신성장 선도사업 우수사례 간담회 및 현장방문(55백만원) ○ 창업·벤처기업 정책수요 조사 간담회(7백만원) ○ 유망 스타트업 정책 발굴 간담회(48백만원) ○ 대기업, 중견기업 투자유치 간담회(20백만원) ○ 중소기업 현장방문(18백만원) ○ 핵심규제개선 실무지원협의 출장(62백만원) ○ 혁신성장 정책홍보 현장 간담회(11백만원) ○ 국회, 언론 등 유관기관 업무협의 출장(4백만원)	409
	사업 추진비	○ 투자유치 카라반 기업 애로사항 간담회(17백만원) ○ 대기업, 중견기업 투자상담을 위한 실무협의(3백만원) ○ 혁신성장 선도사업 현장점검(9백만원) ○ 창업·벤처기업 투자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9백만원) ○ 국회, 언론 등 유관기관 업무협의(6백만원) ○ 규제혁신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6백만원) ○ 핵심규제개선 실무협의 지원(11백만원) ○ 규제협상지원회의 실무지원(6백만원)	67
	일반 연구비	○ 혁신성장 정책과제 발굴 연구용역(150백만원)	150
혁신성장 민간지원 활성화	일반 수용비	○ 혁신성장 옴부즈만 지원단 인쇄비 및 사무실 운영경비	55
	국내 여비	○ 혁신성장 옴부즈만 기업간담회(11백만원)	11
	사업 추진비	○ 혁신성장 옴부즈만 기업 간담회(5백만원)	5
혁신성장 사업지원	일반 수용비	○ 각종 회의 인쇄비용 및 소모품 ○ 회의참석 민간전문가 수당지급	188
	공공요금 및 제세	○ 국가정보통신망 통신요금(18백만원) ○ 통신사 서비스 이용료(1백만원) ○ 우편요금(600천원) ○ 유선방송수신료(180천원)	20
	임차료	○ 사무실 임차료(144백만원=24,000,000원*6월) ○ 사무실 관리비(78백만원=13,000,000원*6월) ○ 공용차량 임차료(6백만원) ○ 사무기기 임차료(18백만원) ○ 회의장 임차료(12백만원) ○ 현장방문 버스 임차료(14백만원) ○ 방화벽 임차료(7백만원)	279
합 계			1,481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혁신성장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예비비 배정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혁신성장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상호 협력 및 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2018년 6월 혁신성장본부를 출범하였으며, 이후 7월에는 혁신성장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비 45억 4,600만원을 배정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8년도 혁신성장활성화 예비비 비목별 편성내역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비목	2018년도			2019 예산안
	예비비(A)	집행액(B)	집행률(B/A)	
일반수용비(210-01)	625	25	4.0	522
공공요금및제세(210-02)	23	3	13.0	20
특근매식비(210-05)	13	2	15.4	0
임차료(210-07)	87	11	12.6	279
일반용역비(210-14)	3,358	0	0.0	0
관리용역비(210-15)	10	0	0.0	18
국내여비(220-01)	168	36	21.4	420
사업추진비(240-01)	71	14	19.7	72
일반연구비(260-01)	50	0	0.0	150
공사비(420-03)	50	46	92.0	0
자산취득비(430-01)	90	84	93.3	87
합 계	4,546	221	4.9	1,568

주: 집행기간은 2018. 7. 13. ~ 2018. 8. 31.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2018년도 혁신성장활성화 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규제혁신 공론화 추진, 규제개선·혁신성장 토론회, 혁신성장 자문단 운영 등 혁신성장 정책 발굴을 위한 초기비용으로 일반용역비 33억 5,800만원을 예비비로 배정 받았으나, 8월 말 기준 집행실적이 없으며, 10월에 3억 6,500만원에 대해서만 일부 용역에 대한 일반 공개 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실정이라는 점에서 이 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예비비를 통한 2018년도 이 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방문의 경우 2019년도 예산액의 규모를 고려할 때, 면밀한 사업 추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방문을 위한 1박 2일의 국내출장 100회를 추진하겠다는 전제 하에 1.8억원의 국내여비를 편성하였다.

[2019년도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방문 국내여비 산출근거]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방문
= (40,000원 × 2일 + 70,000원 × 1박 + 40,000원 × 왕복운임2회) × 8명 × 100회

자료: 기획재정부

그런데, 혁신성장본부 전체 근무인원²⁾, 현장방문 대상 기관의 선정 및 수립된 의견에 대한 정책환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추가 소요기간 등을 고려할 때, 8명의 인원이 1박 2일의 현장방문을 연 100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방문의 사전계획을 면밀히 수립함으로써 현장방문을 통한 혁신성장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혁신성장본부 구성

1. 본부장: 공공본부장(기획재정부 제1차관), 민간 본부장 각 1인이 공동본부장 체제
2. 혁신성장본부 전임 지원근무 10명(부이사관 1, 서기관 6, 사무관 3), 원소속 실국 겸임인 지원근무 19명(고위공무원 3, 서기관 1, 사무관 12, 주무관 2, 사무직원 1)

가. 현 황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사업¹⁾은 「대한민국헌법」²⁾에 근거하여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 운영 경비이다. 이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5,400만원이 감액된 27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19년도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1,546	3,047	3,047	2,793	△254	△8.0

자료: 기획재정부

이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소폭 감액되었으나, 2018년도 예산 규모가 2017년 대비 대폭 증액(+11억원, +56.8%)³⁾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의 예산 규모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대 반영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⁴⁾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25)

1) 코드명: 일반회계 1431-301

2) 「대한민국헌법」

제93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 2018년도 이 사업의 증액은 ① 해외 정책연구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신설(5억 9,500만원), ② 국민소통 프로젝트 신설(1억 7,400만원), ③ 정책연구용역비 증액(1억 2,000만원) 등에 기인한다.

4) 최근 5년 동안의 예산액: (15) 21억 9,100만원, (16) 20억 5,900만원, (17) 19억 4,300만원, (18) 30억 4,700만원, (19) 27억 9,3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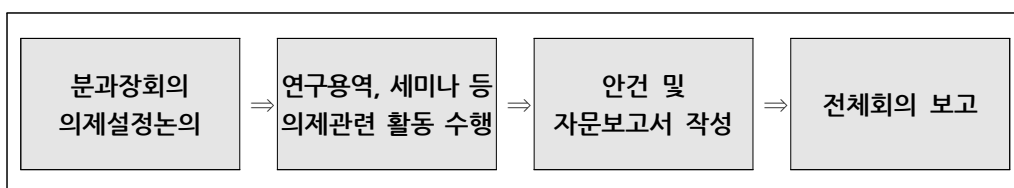
나. 분석의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민소통 프로젝트 등을 위한 이 사업 예산 규모의 확대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하여 전체회의의 주기적 개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018년도에 증액 반영된 예산으로 경제자문기구 간 국제 컨퍼런스(6월)를 개최하였으며, 연내에 글로벌 경제전문가 협의회(11월)와 국민소통 프로젝트(12월)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은 이와 같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운영 방향에 대하여 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른 나라의 경제자문 노하우(know-how)를 습득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을 공유하며 국가 간 경제 분야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② 국민소통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자문의 전문성과 민주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재정투입의 확대가 정책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위 활동이 자문회의의 의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녀야 하며, 그 결과물들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안전이나 자문보고서 등으로 작성되어 전체회의 보고까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관련 의제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세칙」에서도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의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⁵⁾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사업 추진체계]



자료: 기획재정부

5)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세칙」

제2조(전체회의의 운영) ①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전체회의의 의제는 자문회의의 의장이 정한다.

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위원(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전체회의 개최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12월 새정부 출범 이후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신규 구성하면서 향후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운영방향과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이후 2018년 9월말까지 전체회의 개최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5년(2014~2018년) 국민경제자문회의 개최실적]

연도	전체회의 개최실적
2014	○ 전체회의 3회 개최(2.25, 8.26, 12.22)
2015	○ 전체회의 1회 개최(10.7)
2016	○ 전체회의 2회 개최(2.24, 6.28)
2017	○ 전체회의 1회 개최(12.27)
2018. 9.	○ 전체회의 미실시

자료: 기획재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018년 분야별 분과회의 및 정책간담회 개최 확대⁶⁾ 등 기타 자문회의 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조언·자문과 국민에게 정책메시지를 충실히 전달하기 위한 자문회의 본연의 기능과 취지가 보다 충실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에 상응하여 전체회의 개최실적 개선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민소통 프로젝트 등을 위한 재원투입의 확대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궁극적인 설치 목적에 부합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기회의의 정례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분과회의 2017년 10회→2018년 9월 39회, 정책간담회 2017년 34회→2018년 9월 57회

가. 현 황

재정집행관리 사업¹⁾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재정집행 효율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재정집행 현장을 점검하며, 예산성과금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2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19년도 재정집행관리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재정집행관리	174	278	278	278	0	0.0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첫째, 기획재정부는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집행관리 사업을 통한 재정집행 효율화 체계 구축·운영 및 재정집행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그런데 2014~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 결과,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²⁾ 수는 2014년 111개에서 2017년 147개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들 사업의 집행률은 2014년 42.5%에서 33.5%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³⁾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2643-300

2) 최근 4년간 예산액 또는 예산현액 대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이면서 마지막 연도의 예산액 또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

3)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 기준을 “사업비가 100억원(SOC) 또는 50억원(SOC가 아닌 사업) 이상 세부사업 중 3년(2015~2017년) 연속 실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수가 2017년 45개에서 2018년 55개로 증가하였으나 대상사업의 집행률은 대부분 개선되는 추세라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집행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 현황: 2014~2017년]

(단위: 개, 억원, %)

2014 결산 기준 (2011~2014)			2015 결산 기준 (2012~2015)			2016 결산 기준 (2013~2016)			2017 결산 기준 (2014~2017)		
사업수	예산액	결산액 (집행률)	사업수	예산액	결산액 (집행률)	사업수	예산액	결산액 (집행률)	사업수	예산액	결산액 (집행률)
111	39,865	16,955 (42.5)	113	35,509	16,866 (47.5)	132	102,828	38,300 (37.2)	147	30,076	9,190 (33.5)

주: 집행률은 결산액/예산액×1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둘째, 최근 집행관리대상 사업 가운데 실집행을 전제로 하는 간접사업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지방재정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는 중앙-지방의 재정집행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집행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집행액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집행관리 대상에서 간접사업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부는 현재 중앙부처의 집행액을 기준으로 재정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실집행의 수반을 전제로 되어야 경기 활성화 효과가 달성될 수 있는 간접사업 비중이 2015년 69.6%에서 2018년 78.6%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4) 중앙부처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등을 교부함으로써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민간이전(320목), 자치단체이전(330목), 해외이전(340목), 일반출연금(350목), 연구개발출연금(360목), 출자금(460목) 등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 중앙정부의 집행액과 보조사업자 실집행액이 상이한 지출목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2015년~2018년 집행관리대상 사업의 상반기 집행계획액 중 간접사업 비중]

(단위: 조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직접 사업	간접 사업	합계	직접 사업	간접 사업	합계	직접 사업	간접 사업	합계	직접 사업	간접 사업	합계
금액	46.3	106.2	152.4	41.3	95.8	137.0	34.3	101.4	135.7	30.1	110.5	140.6
비중	30.4	69.6	100.0	30.1	69.9	100.0	25.3	74.7	100.0	21.4	78.6	100.0

주: 집행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중앙부처의 집행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합재정사용액 기준으로 중앙재정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13년 53.2%→'18년 50.3%), 지방재정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13년 46.8%→'18년 49.7%)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집행액이 경기 활성화 효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대리변수(proxy)로서의 한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이 기획재정부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간의 내부거래적 성격을 띠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까지 집행실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 집행액 기준의 재정집행 관리체계를 중앙정부-지방정부 집행액 기준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사업¹⁾은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타당성조사 및 제도운영을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300만원이 감액된 68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19년도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6,756	6,994	6,994	6,891	△103	△1.5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 제38조²⁾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³⁾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의²⁴⁾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으로 하여금 예비타당성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25)

1) 코드명: 일반회계 2646-301

2)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3) 사회복지 분야 등의 사업의 경우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 500억원 이상

4) 「국가재정법」

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①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원 4,000만원, ②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연구용역비 3억 2,000만원, ③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수행을 위한 KDI 출연금 65억 3,1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9년도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예산액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구분	내 용	예산액
예타조사 제도 운영지원	○(운영비) 예타조사 지침 및 안전 인쇄비, 민간위원회 참석수당 및 안전검토 등 자문료: 19백만원 ○(여비) 예타조사 대상사업 현장조사, 관련 회의·세미나 참석: 8백만원 ○(업추비) 예타조사 관련 전문가 간담회 등: 13백만원	40
예타제도 등 연구용역	○예타 제도 및 수행방법 등 관련 연구용역: 320백만원	320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KDI 출연금: 6,531백만원	6,531
합 계		6,891

자료: 기획재정부

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제6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2.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3.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4.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운영
5.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운영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평가단의 운영
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구성하는 복권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단의 운영

나. 분석의견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정책적인 추진 필요성에 따라 이를 면제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⁵⁾에서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⁶⁾에서는 예산안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3건(총사업비 1.4조원)에서 2018년 26건(총사업비 11.9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 실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국가 정책적 사업

5)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율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6)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2015년 1,508억원에서 2018년 11.0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총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0.8%에서 2018년 92.0%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5~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총사업비(중기 재정지출) 추이]
(단위: 건, 억원, %)

연도	사업 수 기준			총사업비 기준		
	전체 면제 (A)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에 따른 면제 (B)	비중 (B/A)	전체 면제 (C)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에 따른 면제 (D)	비중 (D/C)
2015	13	1	7.7	14,003	1,508	10.8
2016	17	0	0.0	28,060	0	0.0
2017	12	2	16.7	176,421	163,318	92.6
2018	26	16	61.5	119,161	109,638	92.0

자료: 기획재정부

이와 같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확대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중 공공청사, 국방 등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크지 않은 사업의 면제는 불가피성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가정책적인 추진 필요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가 불가피하더라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예산액과 총사업비 등의 규모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34조⁷⁾에서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의 예산액과 총사업비의 규모를 별도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이에 근거하여 예산안 첨부서류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명과 예비타당성 면제 근거조항만을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세부사업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내역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⁸⁾, 세부사업 하위의 내역사업의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안 및 첨부서류에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면제 사업의 예산액,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 사업규모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정보 제출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8)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9조(대상사업의 단위)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한다.

②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의 경우에는 기관운영비, 특수사업비, 주요사업비 등의 항목에 포함된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대상으로 한다.

③지역개발, 관광지 개발 등 여러 개의 개별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집단사업(Package Project)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세부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목적, 추진 방식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묶어서 단일사업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세부사업들의 총사업비 합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단일사업으로 묶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가. 현 황

CGIF 출자지원 사업¹⁾은 ASEAN+3 역내 채권 발행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0년 설립된 신용보증투자기구인 CGIF의 자본증자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 지분에 대한 추가 납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이 사업의 예산안은 261억 8,000만원이다.

[2019년도 CGIF 출자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CGIF 출자지원	0	0	0	26,180	26,180	순증

자료: 기획재정부

CGIF는 ASEAN+3 역내 발행채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하여 역내통화 채권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 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출범을 선언한 후, 초기 출자액 7억 달러로 2011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후, 2017년 기준 기보증액 17억 달러로 보증한도가 소진²⁾되어, 추가 출자를 통한 보증여력 보장을 위한 5억 달러 증자가 2017년 12월 출자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출자국은 향후 2018년 말까지 납입계획서를 제출하고 2023년까지 납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기획재정부는 증자액 5억 달러 중 우리나라 지분을 14.3%에 해당하는 0.71억 달러(781억원)를 납입하겠다는 입장이다.

[2019년도 CGIF 출자지원 사업 산출내역]

CGIF 증자(\$5억) × 우리나라 지분율(14.3%) × 기준환율(1,100원/\$) × 분할납입(1년/3년)

자료: 기획재정부

윤동한 예산분석관(yoon@assembly.go.kr, 788-4625)

1) 코드명: 일반회계 3131-302

2) 보증한도(17.5억불) = 초기 자본금(7억불) × 보증배수(2.5배)

나. 분석의견

그동안 CGIF 보증을 통한 우리나라 기업의 보증수혜 실적이 미흡하였으므로, 향후 CGIF를 통한 우리나라 기업의 보증수혜 강화를 위해 수출입은행과 CGIF 간의 협업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CGIF 추가 출자 필요성과 관련하여, ① 우리나라 기업의 보증수혜 강화를 통해 기업 자금조달 수단을 보다 다양화하고, 현지 통화 수요가 높은 기업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 ② ASEAN+3 금융협력은 한·중·일 3국이 모든 이니셔티브에서 선도국가로서의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ASEAN지역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추가출자에 불참하는 경우 역내 금융협력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소외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보증수혜 실적이 부진하다. 2014년 라오스 내 한국계 기업인 Kolao Holdings에 대하여 4,800만달러의 보증을 공급한 것이 유일하며, 2018년 9월 말 현재 CJ 대한통운(싱가포르 법인)이 연내 CGIF 보증을 통한 채권 발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연도별·발생기업 소재국별 보증공급 실적 추이(2013~2018.9.)]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홍콩	98	-	-	-	-	-	98
인도네시아	26	224	-	23	-	-	273
라오스	-	48 ¹⁾	-	-	-	-	48
베트남	-	98	-	134	50	150	432
태국	-	-	137	-	-	54	191
필리핀	-	-	-	100	23	7	130
싱가포르	-	-	-	74	-	-	74
말레이시아	-	-	-	78	-	-	78
합계	124	370	137	409	73	211	1,324

주: 1) 한국계 기업인 Kolao Holdings 보증(라오스 내에서 현대·기아차의 독점 판매권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승용차 부문에서 60~70%의 시장점유율(수입차 기준)을 기록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므로, 기획재정부는 CGIF 추가 출자에 따라 CGIF의 보증여력이 강화된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보증수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CGIF 간의 협업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2019년도 신규 사업인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사업(이하 “저소득층 장학사업”이라 한다)¹⁾은 저소득층 중고생 중 역량 있는 인재를 조기 선발, 장학금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속 제공함으로써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계층 이동을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²⁾에 출연금(350-01)을 지급하여 추진하는 방식이며,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44억 20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

[2019년도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0	0	0	4,402	4,402	순증

자료: 기획재정부

구체적으로 재단은 기초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중 · 고등학생을 학교장 추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 매월 30~40만원의 장학금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며, 장학생 선발과 함께 후견인을 매칭하여 1:1 멘토링 제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코드명: 복권기금 6372-352

2) 한국장학재단은 교육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국가 지원 장학사업, 학자금대출 장학사업,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장학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9년도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사업 세부내역]

□ (지원대상) 저소득층* 중·고·대학생 중 잠재력 있는 인재 선발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 등) ○ (선발방식)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에 대해 선정위원회에서 소질·인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발인원) 2019년(시범사업) 1,500명 선발 - 중2부터 고3까지 각 300명씩 □ (지원내용) 장학금, 멘토링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 (장학금) 학교급별 차등 지원 (중학생 월 30만원, 고등학생 월 40만원) * 장학금은 지출내역 파악 및 학생 이용편의 등을 위해 바우처 카드로 지급 - '19년은 장학생 선발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부터 장학금 지원 ○ (멘토링) 장학생 선발 시 후견인 등 매칭, 자립할 때까지 1:1 전담 멘토링 진행 추진 ※ 기타 : 교육캠프, 진로컨설팅 등 학생 수요에 맞게 맞춤형 제공 □ (예산) 44억 200만원 ○ 사업비 41억 1,600만원 - 장학금 : 32억 4,000만원(중학생 30만원×600명×6개월, 고등학생 40만원×900명×6개월) - 멘토링 등 : 7억 5,000만원 - 진로컨설팅 : 1억 2,600만원(고2 대상, 진로 결정 맞춤 컨설팅) ○ 운영비 2억 8,600만원 - 심사위원회 운영비 7,9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9,200만원, 기타운영비(수수료 등) 1,500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이 생계 지원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학생 수혜자 가구의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바우처의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 계획 보완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장학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있는 우수 인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장학금의 용도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이다.

그런데, 이 사업의 주요 수혜대상으로 설정한 교육급여 수급자가 장학금 약 30만원 또는 40만원을 수령하여 “생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사업지침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받는 생계지원형 금품은 실제소득 중 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은 생계지원형 금품이 아닌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과 수급자를 거치지 않고 보육·교육기관 등에 직접 납입하거나 수급자가 자신의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금품(교재비, 학원비, 학습 보조비 등) 등에 한정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 기준에 따른 실제소득의 범위(일부)]

1)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1)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2)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3)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4)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u>공적이전소득</u>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나)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u>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u>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u>이와 유사한 금품</u> (3) <u>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생계지원형 금품 제외)</u> (5)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u>공사기관(국가·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수급(권)자에게 일시적·정기적으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금품으로서</u>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월 30만원 이내의 교육 부대비용 - 단, 교육 부대비용으로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소득으로 산정 (예를 들어, 교육 부대비용으로 매월 35만원 지급 시 5만원은 소득으로 산정) ※ <u>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육료·학자금은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수급(권)자를 거치지 않고 보육·교육기관 등에 직접 납입하거나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납입확인을 거친 후에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금품에 한정됨</u> - 부양의무자가 학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아니며 동 금액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함

자료: 「201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 123, 124.

저소득층 장학금이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소득으로 산정될 경우 수급자 선정 기준³⁾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 생계급여(현금)가 차감되거나 수급 자격을 상실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는 생계급여 약 136만원에 의료·주거·교육급여 혜택을 받는데, 장학금 40만원이 소득으로 환산될 경우 수급비에서 차감되어 생계급여가 96만원으로 감소하여 실제 수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4인 가구 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수혜 효과는 현금 4만원에 그치며, 소득이 150만원인 경우 현금 수급 40만원이 추가되지만 의료급여 자격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다.

4인 가구 소득이 190만원인 경우 장학금 40만원을 수령받으면 소득이 230만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26만원)를 초과하게 되어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기준에서 벗어나 당초 수급자를 대상으로 설정한 장학사업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3) [2018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주: 1.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2.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359,024원 = 2,108,208원(7인가구 기준)+250,816원(7인가구 기준-6인가구 기준)
 자료: 「201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장학금 수령에 따른 수급자 자격 변동 내용]

장학금 수령 이전		장학금 수령 이후		효과
가구소득	수급내용	소득변화	수급내용	
0원	현금 136만원 의료, 주거, 교육급여	40만원	현금 96만원 의료, 주거, 교육급여	없음
50만원	현금 86만원 의료, 주거, 교육급여	90만원	46만원 의료, 주거, 교육급여	없음
100만원	현금 36만원 의료, 주거, 교육급여	140만원	(생계급여 탈락) 의료, 주거, 교육급여	현금 +4만원
150만원	의료, 주거, 교육급여	190만원	(의료급여 탈락) 주거, 교육급여	현금 +40만원, 의료급여 탈락
170만원	의료, 주거, 교육급여	210만원	(의료, 주거급여 탈락) 교육급여	현금 +40만원, 의료, 주거급여 탈락
190만원	주거, 교육급여	230만원	(모든 급여 탈락)	현금 +40만원 수급자격 상실
200만원	교육급여	240만원	(모든 급여 탈락)	현금 +40만원 수급자격 상실

주: 1. 4인 가구 기준

2. 장학금 수령액은 40만원으로 전액 실제소득(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됨을 가정

3. 천원 이하는 반올림

자료: 「201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사업 추진주체인 복권기금과 교육부 및 재단은 저소득층 장학사업이 우수 학생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가능하고 교육목적에 맞게 장학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선행하여 교육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와와의 조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달체계 방안을 개편하여야 한다.

둘째, 저소득층 장학사업이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사업 절차 및 준비가 미흡하다.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와 재단이 시범사업으로서 추진(신설)하려는 저소득층 장학사업은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

회서비스로서 사회보장사업이며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장학금 관련 사업을 사회보장사업의 예시로 들고 있다. 사회보장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⁴⁾과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예산편성 세부지침 주요 내용(일부)]

24. 신설·변경 사회보장 사업			
1. 적용대상			
☐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제3조제1호)’ 및 ‘평생사회안전망(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제도(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 신설·변경의 의미			
○ (신설) 해당 <u>중앙행정기관</u>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기획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기획 또는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u>시범사업도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해당</u>			
<2018년 사회보장사업 목록(2018.3월 기준)(일부)>			
연번	부처	소관부서	사업명
46	교육부	대학장학과	국가장학금(I, II 유형)
47	교육부	대학장학과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
48	교육부	대학장학과	인문100년 장학금

자료: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를 바탕으로 재작성

협의 절차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사업)의 목적, 법적근거, 대상, 전달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로 협의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4월말 이후에도 긴급한 사유에 의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확정된 즉시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⁵⁾ 다만, 긴급한 사유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정

4)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부예산안의 국회 제출시한(2018년 9월 2일)의 60일 전까지는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⁶⁾

[예산편성 세부지침 주요 내용(일부)]

24. 신설·변경 사회보장 사업 2. 세부지침 □ 사회보장제도(사업)을 신설·변경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예산을 요구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사업)의 목적, 법적근거, 대상, 전달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로 협의 요청 <별첨 1>의 협의요청서 참조 - 4월말 이후에도 긴급한 사유에 의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확정된 즉시 협의요청서 제출 * 협의요청서는 매년 4월 30일까지 복지부 제출이 원칙이나, <u>긴급한 사유 등으로 제출기한 이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시한(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9.2) 60일 전까지는 협의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u>

자료: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단 설명에 따르면 교육격차 심화에 따른 장학사업 추진 필요성이 7월 중순 이후부터 긴급하게 논의되었기에 4월 30일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사정은 있으나, 정부예산안이 확정되어 국회로 이송한 9월 3일 이후에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사회보장제도 협의제도는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간 연계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려는 것으로 사회보장 급여나 서비스의 중복, 편중, 누락 등을 방지하여 사회보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부정적인 영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이후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된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해당 문구는 2018년 예산편성지침까지는 없었는데, 2019년 예산편성지침에 추가되었다.

향을 주는 제도의 신설·확대를 억제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위한 제도이다.⁷⁾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단순 자문이 아닌 사업 내용 변경 등 구속력이 발생하며, 협의를 성립되지 않아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⁹⁾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변경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와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¹⁰⁾ 또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 배제¹¹⁾ 가능하도록 이행조치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7) 사회보장위원회, 「2018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p. 1.

8)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제도 변경 필요성, 지역 특수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대상자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에 대한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다.

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10)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11) 사회보장위원회, 「2018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p. 23.

[사회보장제도 협의 검토 결과 유형 및 절차]

유형	내용 및 절차
협의완료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검토 결과에서 <u>수정권고 내용이 없거나</u> , 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u>수정권고 내용을 동의하는</u> 경우에 협이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재협의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와의 정합성,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u>협의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u> , 협의기준에 따른 사업 내용의 일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u>수정 또는 보완하는 등 추가협의 진행(결과 통보 시 고지된 기한 내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에 대하여 협의요청기관의 의견회신요청)</u> - 재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기관 간 이견이 없을 경우 협이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 <u>재협의를 통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기관 간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 진행</u>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2018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p. 16.

결국, 사업추진주체인 복권기금과 교육부 및 재단이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은 장학사업의 타당성, 유사·중복 검토 등 충분한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복권기금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햇살론) 사업의 저신용자 대출비중 감소 개선 필요

가. 현 황

기획재정부 소관의 복권기금은 금융위원회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서민 금융 활성화 지원 사업¹⁾(이하 ‘햇살론’ 사업)²⁾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제도권 금융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대부업체 등 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 및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기존에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2016년 9월, 서민금융 업무의 통합 운영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서 해당 업무가 이관되었다. 2019년도에는 복권기금에 이와 관련하여 전년대와 동일한 1,750억원의 계획안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175,000	175,000	175,000	175,000	0	0.0

자료: 기획재정부

안옥진 예산분석관(ojahn@assembly.go.kr, 788-3731)

1) 코드: 복권기금 6346-328

2) 정부는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등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해 햇살론, 미소금융, 바퀴드림론, 새희망홀씨 4대 정책서민금융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햇살론	미소금융	바퀴드림론	새희망홀씨
출시	2010년 7월	2008년 7월	2008년 12월	2010년 11월
재원	복권기금(기획재정부), 서민금융 출연금 지자체 출연금(사업자)	휴면예금, 은행·기업·기타 기부금	국민행복기금	은행 자체재원
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 6~10등급(4,500만원 이하)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6~10등급(4,500만원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6~10등급(4,500만원 이하)
용도	생계, 대환 등(근로자) 운영, 창업(사업자)	창업 운영 시설 건립생계 등	저금리 전환자금	용도 무관 자금대출
주무부처 (시행기관)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근로자: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취급기관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보 보증)	미소금융재단	은행 (국민행복기금 보증)	은행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 2017. 10. 422쪽

복권기금은 햇살론 사업 수행을 위해 2016~2020년까지 매년 1,750억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상기 햇살론³⁾ 사업은 농·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대출·보증 심사를 직접 수행하고, 심사 결과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위탁보증계약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이 해당 대출자에게 보증을 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사업의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 중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로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비율은 90%이다.

[햇살론 지원 대상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소득자 중 연소득이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또는 진흥원 CSS등급(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소득이 4천5백만원 이하인 자 • (대출한도) 동일인 1인당 최대 1천5백만원 이내 • (대출금리) 매월 금융감독원 고시 상한금리 이내 • (보증조건) 보증비율(대출금액의 90%), 보증기간(3년, 5년 중 택일), 보증료(연 1%) |
|---|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3)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시행하는 근로자 햇살론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시행하는 사업자 햇살론으로 구분된다. 복권기금은 근로자 햇살론의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이하에서는 근로자 햇살론에 한하여 분석한다.

나. 분석의견

복권기금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햇살론) 사업은 고·중신용자 대출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보증은 해당 대출 심사를 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이 수행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이에 보증을 제공함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의 특성 상 우량 신용등급 위주로 자금을 지원하게 될 유인이 있다.

아래 표 [햇살론 신용등급별 대출 실적 (2015~2018.7)]을 살펴보면, 햇살론은 2017년 기준으로 2조 9,799억원이 공급되었다. 그런데 햇살론의 지원 대상이 신용등급과 무관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와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중에서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임을 감안할 때, 2017년 기준으로 고신용자인 신용등급 3등급 이상(1~3등급)은 7.5%, 신용등급 4~6등급인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은 70.7%, 저신용자인 7등급 이하(7~10등급) 신용자에 대한 대출비중은 21.8%로, 신용등급 6등급 이상(1~6등급)에 대한 대출 비중이 78.2%로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우량한 대출자에 대한 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이후 2018년 7월까지의 신용등급별 대출 추이를 살펴보면, 신용등급 3등급 이상인 고신용자와 4~6등급인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은 동 기간 동안 각각 2.0%p와 1.9%p 증가한 반면,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은 4.0%p 감소하였다. 즉,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비중은 감소한 반면,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우량한 고·중신용자로의 대출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햇살론 신용등급별 대출 실적 (2015~2018.7)]

(단위: 억원, %, %p)

	금액				비중				
	2015	2016	2017	2018.7	2015 (a)	2016	2017	2018.7 (b)	차이 (b-a)
1등급	176	192	295	176	0.9	1.0	1.0	1.2	0.3
2등급	448	447	749	454	2.4	2.4	2.5	3.2	0.7
3등급	714	696	1,189	695	3.8	3.8	4.0	4.8	1.0
4등급	1,081	1,059	1,882	960	5.8	5.8	6.3	6.7	0.9
5등급	3,324	3,231	5,855	2,870	17.9	17.7	19.6	20.0	2.1

(단위: 억원, %, %p)

	금액				비중				
	2015	2016	2017	2018.7	2015 (a)	2016	2017	2018.7 (b)	차이 (b-a)
6등급	8,258	8,094	13,332	6,233	44.4	44.3	44.7	43.3	△1.0
7등급	4,264	4,225	6,055	2,776	22.9	23.1	20.3	19.3	△3.6
8등급	342	331	421	209	1.8	1.8	1.4	1.5	△0.4
9등급	9	10	17	9	0.0	0.1	0.1	0.1	0.0
10등급	1	1	1	1	0.0	0.0	0.0	0.0	0.0
무등급	0	0	2	1	0.0	0.0	0.0	0.0	0.0
합계	18,616	18,286	29,799	14,383	100.0	100.0	100.0	100.0	-
1~3등급	1,338	1,335	2,233	1,325	7.2	7.3	7.5	9.2	2.0
4~6등급	12,663	12,384	21,069	10,063	68.0	67.7	70.7	70.0	1.9
7등급 이하	4,616	4,567	6,496	2,996	24.8	25.0	21.8	20.8	△4.0

주: 1.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우량한 신용등급임

2. 상기 '무등급'은 기존에 금융회사 등에 신용거래가 없어 등급 산정이 불가능한 대출자임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또한, 햇살론의 소득구분별 대출 실적 비중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대출자에 대한 대출 비중은 감소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자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즉, 소득 1,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대출비중은 2015년 2.7%에서 2.0%로 0.7%p 감소한 반면, 연소득 3,0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한 대출비중은 동 기간 동안 13.4%p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⁴⁾

[햇살론 소득구분별 대출 실적 (2015~2018.7)]

(단위: 억원, %, %p)

	금액				비중				
	2015	2016	2017	2018.7	2015 (a)	2016	2017	2018.7 (b)	차이 (b-a)
1,000만원 이하	503	567	935	288	2.7	3.1	3.1	2.0	△0.7
1,000~2,000만원	7,562	7,125	11,260	4,400	40.6	39.0	37.8	30.6	△10.0
2,000~3,000만원	8,165	8,273	12,071	5,923	43.9	45.2	40.5	41.2	△2.7
3,000~4,000만원	2,386	2,322	4,785	3,198	12.8	12.7	16.1	22.2	9.4
4,000~4,500만원	0	0	749	574	0.0	0.0	2.5	4.0	4.0
합계	18,616	18,286	29,799	14,383	100.0	100.0	100.0	100.0	-
1,000만원 이하	503	567	935	288	2.7	3.1	3.1	2.0	△0.7
1,000~3,000만원	15,727	15,398	23,331	10,323	84.5	84.2	78.3	71.8	△12.7
3,000만원 이상	2,386	2,322	5,534	3,772	12.8	12.7	18.6	26.2	13.4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4) 이는 2017년 3월, 정부가 햇살론 지원 요건을 연소득 3,000만원이하 → 3,500만원 이하, 신용등급 6 등급 이하의 경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로 완화한 것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의 목적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등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대출 및 보증 심사를 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사업은 민간 금융기관의 특성 상 우량 신용등급 위주로 자금을 지원할 유인이 있으며, 따라서 저신용자로의 대출 비중이 낮고, 또한 해당 비중 또한 기간별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래의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⁵⁾

5)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저신용자에게 상대적으로 공급이 미흡했던 원인으로 소득요건 등 이용 요건의 완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저축은행 중금리 상품: 17% 내외, 햇살론 금리: 10.5% 이하), 금융기관의 리스크 회피적 영업형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세청

1

현황

국세청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1개 특별회계(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 구성된다.

국세청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9,778억 4,3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789억 1,100만원(22.2%)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249억 3,600만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529억 700만원이다.

[2019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991,012	1,197,769	1,197,769	924,936	△272,833	△22.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0	58,985	58,985	52,907	△6,078	△10.3
합 계	991,012	1,256,754	1,256,754	977,843	△278,911	△22.2

주: 총계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1조 7,451억 5,8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671억 1,200만원(4.0%) 증가하였다.

[2019년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592,674	1,678,045	1,678,045	1,745,158	67,112	4.0

주: 총계 기준

자료: 국세청

한편, 국세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19년도 국세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운영을 위해 신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82억원), ② 납세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영세납세자, 중소기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법상담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50억원). 또한, ③ 2019년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을 위해 신규 사업이 편성되었고(41억원), ④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비용이 편성되어 관련 사업 예산이 확대되었다(2018년 922억원 → 2019년 996억원).

2019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근로·자녀장려세제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 횟수 증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예산이 4개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하여 집행 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납세 안내 및 교육 관련 기존 사업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세무서별 업무량 및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력 고용 등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 마련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터는 연말에 완료되는 중장기정보화전략계획을 토대로 추진 과제 및 소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 확정 이후의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신설 조직의 규모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2019년도 신규사업은 총 4개 사업, 177억 7,800만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사업은 2019년 1월부터 신용 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정보 및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은 영세납세자·중소법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법상담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또한,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사업은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을 위한 사업이며, 국세통계센터 설립 및 운영(정보화) 사업은 국세통계자료를 대외에 개방 및 공유하기 위해 국세통계센터를 새롭게 설립·운영하는 사업이다.

[국세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4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4,082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5,000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8,236
	국세통계센터 설립 및 운영(정보화)	460
합 계		17,778

자료: 국세청

2019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행정지원인력 운영 사업 등이 있다.

①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사업은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사업에서 제도 홍보예산이 이관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고, ②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업은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직장어린이집을 신규 개원하는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③ 행정지원인력 운영 사업은 환경관리, 시설관리 등 6개 직종의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다.

[국세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8		2019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일반회계 (4개)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	169	169	234	65	38.5
	운영지원					
	인건비	1,177,478	1,177,478	1,206,288	28,810	2.4
	직장어린이집 운영	1,741	1,741	2,302	561	32.2
	행정지원인력 운영	1,994	1,994	31,658	29,664	1,487.7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8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국세청

II

주요 현안 분석

1

근로·자녀장려세제 관련 예산 통합 편성 및 철저한 사업준비 필요

가. 현 황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사업¹⁾은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신청안내·결정통지 등을 통해 장려세제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안은 8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9년도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0	0	0	8,236	8,236	순증

자료: 국세청

근로장려세제(ETC)란 차상위 계층의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며, 자녀장려세제(CTC)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8월 31일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²⁾에 ① 근로장려세제 신청자격 요건 완화, ② 근로장려세제 산정액 상향 조정, ③ 근로·자녀장려세제 지급 방식 전환, ④ 근로·자녀장려세제 양도·압류 금지, ⑤ 자녀장려세제와 생계급여 지급의 중복 허용 및 지급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며,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은 운영을 위한 신규 세부사업을 편성하였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3135-300

2) 정부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8.31., 의안번호 제2015205호

[2019년도 근로장려금 개편안]

		현 행	개 편 안
연령요건		30세미만 단독 가구 배제	30세미만 단독 가구도 포함
재산요건		가구당 1.4억원 미만 * 재산 1억원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가구당 2억원 미만 * 재산 1.4억원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소득 요건	단독	1,300만원 미만 (1인 중위 65%)	2,000만원 미만 (중위 100%)
	홀벌이	2,100만원 미만 (3인 중위 48%)	3,000만원 미만 (중위 65%)
	맞벌이	2,500만원 미만 (4인 중위 46%)	3,600만원 미만 (중위 65%)
최대 지급액	단독	85만원	150만원
	홀벌이	200만원	260만원
	맞벌이	250만원	300만원
최대 지급액 구간	단독	600~900만원	400~900만원
	홀벌이	900~1,200만원	700~1,400만원
	맞벌이	1,000~1,300만원	800~1,700만원
지급방식		다음연도 연 1회 지급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근로소득자)
지급규모		166만 가구, 1.2조원	334만 가구, 3.8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 개편방안」, 2018.7.18.

나. 분석의견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사업 편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근로·자녀장려세제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 횟수 증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19년도 근로장려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지급대상 수가 대폭 증가하고, 지급 횟수도 반기별 지급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기존의 근로·자녀장려세제는 이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였으나, 반기별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 명세서 수집 등을 통해 반기별 소득에 따라 지급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세제는 2009년 도입 이후, 2012년 이후 매년 대상자가 추가되거나 지급요건이 완화되어 왔다.

[근로·자녀장려금 세법 개정 주요 내용]

시행연도	주요 내용
2009	(1) 대상: 근로소득자 (2) 총소득: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3) 부양자녀: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4) 주택: 무주택 또는 5천만원 이하의 1주택 (5) 재산: 세대원 전원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직전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주거·생계·교육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 제외
2012	(대상자 추가) 무자녀 가구 추가,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대상에 추가 (주택요건 완화) 주택가격 5천만원→6천만원 이하 (지급기준 변경) 부양자녀수(0~3인)에 따른 소득요건·지급수준 차등화 소득요건: 1,300~2,500만원, 지급액: 70~200만원
2013	(대상자 추가) 60세이상 단독가구
2014	(지급기준 변경) 소득 및 급여 기준 변경: 자녀수→가구유형(단독/홀벌이/맞벌이) 단위 소득요건: 1,300/2,100/2,500만원 미만, 지급액: 70/170/210만원
2015	(대상자 추가): 자영업자 (전문직 사업자 제외), 근로장려금의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규정 삭제 (주택요건 완화): 주택가격기준 삭제 (재산요건 완화): 1억원 미만→1.4억원 미만
2016	(대상자 추가) 단독가구 연령기준 완화(50세 이상)
2017	(대상자 추가) 단독가구 연령기준 완화(40세 이상) (지급액 인상) 70/170/210만원→77/185/230만원
2018	(대상자 추가)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연령(30세 이상)기준 폐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외국인 포함) 적용 (지급기준 완화) 70세 이상 부 또는 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의 홀벌이 가구 인정 (지급액 인상) 77/185/230만원→85/200/250만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2018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및 심사쟁점」

그럼에도 대상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여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017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만족도 조사 결과, 수급대상 확대를 “몰랐다”는 답변이 91.9%로,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연령요건, 재산요건, 소득요건이 동시에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 지급 방식 등이 개편되는 등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대상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연도별 근로·자녀장려금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

조사 항목	조 사 결 과	2015	2016	2017
수급대상 확대 인지도	▶ 잘 알고 있었다	8.0	2.2	2.3
	▶ 어느정도 알고 있었다	-	3.3	2.6
	▶ 들어본 적이 있었다	7.3	4.0	3.2
	▶ 몰랐다	84.7	90.5	91.9

자료: 국세청

둘째,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4개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하여 집행 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기존에는 근로·자녀장려세제 신청업무 관련 일용인력 인건비 및 홍보비를 ① 납세 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사업³⁾과 ② 소득지원국 기본경비 사업⁴⁾, ③ 소득지원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사업⁵⁾에 편성하였으며, 2018년에는 각 세부사업 내에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6억 1,300만원, 4,700만원, 7억 3,600만원이 편성되어있다.

2019년에는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 82억 3,6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편성하던 3개의 세부사업에 여전히 5억 9,800만원, 4,700만원, 3억 6,800만원의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다.

해당 예산의 편성 목적은 각각 ① 대중매체 홍보비, ② 안내인력의 인건비, ③ 홍보 리플릿 제작 비용 등으로,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사업에도 동일한 목적의 예산이 각각 11억 6,100만원, 15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3) 코드: 일반회계 3132-300

4) 코드: 일반회계 7111-259

5) 코드: 일반회계 7111-209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관련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증감	
	2018(A)	2019(안)(B)	B-A	(B-A)/A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3,267	3,031	△236	△7.2
근로·자녀장려세제 홍보	613	598	△15	△2.4
소득지원국 기본경비	742	699	△43	△5.8
홍보 리플릿 등	47	47	0	0.0
소득지원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810	434	△376	△46.4
안내인력 인건비	736	368	△368	△50.0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	8,236	8,236	순증
대중매체 홍보비	-	1,161	1,161	순증
안내인력 인건비	-	1,570	1,570	순증
안내물 제작 및 발송비	-	5,290	5,290	순증
그 외 간담회 등 기타 비용	-	215	215	순증
합 계	1,396	9,249	7,853	562.5

주: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사업과 소득지원국 기본경비 사업 내에서 근로·자녀장려세제와 관련 있는 예산액만 분리한 금액임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비용을 신규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2020년부터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목적의 예산이 4개 세부사업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경우 집행 상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관련 예산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 차별화 및 사업계획 마련 필요

가. 현 황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¹⁾은 납세 인원이 증가하여 납세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영세납세자·중소법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법상담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안은 50억원을 편성하였다.

[2019년도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0	0	0	5,000	5,000	순증

자료: 국세청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 개요]

- ① 전자신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교육
 - 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방법을 교육
 - 전자(세금)계산서를 쉽고 정확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 운영하여 상담교육
- ② 납세자 세법교실
 - 영세납세자의 다양한 세법교육 요구를 해소하고 올바른 납세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세법교실’ 운영
- ③ 청소년 세금교육
 - 미래납세자로 성장할 청소년이 올바른 납세의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방문 세금교실” 운영(세금에 대해 현장 강의 및 체험형 교육을 실시)

자료: 국세청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3134-300

나. 분석의견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의 예산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납세 안내 및 교육 서비스는 기존 사업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에 따라 ①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담 및 안내와 ② 청소년 대상 세금교육으로 구분된다.

① 국세청에서 수행 중인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담 및 안내 서비스 관련 기존 사업은 영세납세자지원단과 마을세무사 제도가 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영세납세자에게 무료세무자문,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9년 5월부터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예산안 3억 6,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별 마을세무사들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행정안전부 소관 마을세무사 제도²⁾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의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은 세금에 대한 교육 및 안내를 수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의 영세납세자지원단, 행정안전부의 마을세무사 제도와 지원 대상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³⁾

② 청소년 대상 세금교실은 국세청의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사업 내의 청소년 세금교육 교재 제작 내역사업과 지원 대상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사업은 국세청에서 수행하는 홍보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교과서를 개정 및 발간하고, 세금문예작품 공모전을 운영하고 있다.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지원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2)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추진 사업(일반회계, 1338-300) 내의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내역사업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7,700만원이다. 동 제도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지역별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관련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3)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동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동일한 국민제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는 ‘마을세무사 제도’와 중복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부적격 검토를 한 바 있다.

[기존의 취약계층 납세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	사업명	지원 대상	2019 예산안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영세납세자	361
국세청	청소년 세금교육 교재 제작	청소년	354
행정안전부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지방세 관련 지방주민	77

주: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내역사업의 경우, 마을세무사 제도 외의 다양한 제도 수행 예산이 포함된 금액으로, 마을세무사는 재능기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자료: 국세청,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국세청은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취약계층 지원 목적의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무서별 업무량 및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력 고용 등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 마련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250명의 인력을 고용하여 전국 125개 세무서별 2명씩 배치하여 안내 및 교육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된 인원은 세금신고기간인 1월, 5월, 7월⁴⁾에는 세무서 방문신고자 신고안내 및 신고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그 외 기간에는 찾아가는 전자신고, 세법 교육, 상담업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연간 세법상담·교육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전자신고	신고 지원	○	○	○	신고	○	신고	○	○	○	○	○
② 세금안내		○	○	○	지원	○	지원	○	○	○	○	○
③ 세금교실		×	○	○	○	○	×	×	○	○	○	○

주: 청소년 대상 세금교실은 방학 기간인 1~2월, 7~8월은 제외함

자료: 국세청

각 세무서마다 업무량이 상이하고, 영세납세자의 이용 빈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국세청은 수요조사 등을 선행하여 세무서별 필요인력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1월, 7월은 부가세 신고 기간, 5월은 소득세 신고 기간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신청 기간이다.

또한, 고용 인력의 업무가 단순 세금신고지원 외의 전자신고, 세법 교육 및 청소년 세금교육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 전반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할 때, 세무학과, 회계학과 등 관련 학과의 학위 소지 등 고용인력에 대한 구체적 조건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사업 수행 이전에 세무서별 업무량 및 세무상담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력 고용 등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 마련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세통계센터 설립 및 운영(정보화) 사업¹⁾은 국세정보 공개를 위해 통계자료이용센터인 국세통계센터의 설립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안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비용인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9년도 국세통계센터 설립 및 운영(정보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세통계센터 설립 및 운영	0	0	0	460	460	순증

자료: 국세청

나. 분석의견

국세통계센터 설립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과정에서 통계 이용대상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고, 미시정보(micro data)의 비식별화, 반출 제한 등 정보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세통계센터는 사전 승인을 받고 방문한 통계수요자가 국세 데이터를 이용하여 필요한 통계를 직접 분석·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국가, 지자체, 출연연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²⁾, 2019년 ISP 수립 이후 서버 시스템 및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여 이용대상자 및 제공자료 범위 등을 점차 확대하여 향후 온라인서비스 및 권역별 통계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진행할 ISP 내용에는 ① 시스템 구축, 표본추출 및 비식별화 기법 개발, ② 통계DB 모델 설계, ③ 조직 및 인력 설계, ④ 총사업계획 수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7139-300

2) 2018년 6월 본청에 8석 좌석으로 국세통계센터를 개소하여 시범운영 중이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에서는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국회에서 요구하는 경우 통계자료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출연연구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로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³⁾

국세통계센터는 이용자에게 비식별화된 미시정보를 공개하여 통계자료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향후 민간연구기관, 대학 등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국세통계센터는 학문적 연구 및 납세자의 알 권리를 확대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① 현행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에서는 국회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계자료 제공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 ② 동법 제85조의6제6항의 개정 과정에서 통계자료의 제공 대상기관 확대에 의해 과세정보의 외부누출 가능성이 높아져 「국세기본법」 상 비밀유지 규정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⁴⁾이 제기되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① 국세청장은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목적의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한 통계자료의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 세입예산안의 심사 및 국정감사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 또는 세입예산안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⑤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과세정보를 납세자 개인 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장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범위, 제공 절차, 비밀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기획재정부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7.12.

따라서 국세통계센터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과정에서 통계이용대상 확대를 위해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과세정보의 외부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미시정보의 비식별화, 외부 반출 제한 등의 기술적·제도적 방안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세행정전산화(정보화) 사업¹⁾은 국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996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4억 1,900만원(8.0%) 증액 편성하였다.

2019년도 증액 사유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인공지능 빅데이터센터 구축 내역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안은 101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억 5,400만원(857.4%) 증액되었다. 이 사업은 기존 내부자료 이외의 다양한 외부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기 위해 빅데이터 및 AI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19년도 인공지능 빅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세행정전산화(정보화)	86,654	92,218	92,218	99,637	7,419	8.0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터 구축	0	1,056	1,056	10,110	9,054	857.4

자료: 국세청

인공지능 빅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활용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외부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빅데이터센터에서는 8개 신용카드사의 대용량 정보를 통합분석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를 적출하거나, 법인세신고서, 표준대차대조표 등 기존 신고자료를 AI 알고리즘으로 학습하여 탈세혐의자를 선정하여 검증하는 방안 등을 개발 및 수행하여 빅데이터·AI 기술을 국세행정에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2018년 10억원의 예산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추진 중이며, 사전준비를 위해 빅데이터추진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2019년에는 본격적으로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7133-500

센터를 구축하고 과제 수행을 위한 분석시스템 개발을 진행할 예정으로, 관련 분석 시스템 장비비 27억원, 분석과제 개발비용 73억원, 조달수수료 1억원이 편성되었다.

[빅데이터·AI 기술 적용 활용과제 사례]

과 제 명	주요 분석자료	수집 근거	활용 방안
신용카드 매입자료 성실신고 분석모형	납세자 기본사항	「소득세법」 제166조	- 신용카드 매입자료 부당·착오공제 방지 - 개별분석 업무를 일괄분석 전환하여 직원업무량을 축소
	부가세 신고자료	「부가가치세법」 제49조 등	
	신용카드 결제내역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납세자 거주지역 분석모형	납세자 기본사항	「소득세법」 제166조	- 양도세 신고안내 - 명위위장 사업자등록관리
	신용카드 결제내역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현금영수증 지출내역	「소득세법」 제162조의3	
민원처리방법 분석을 통한 방문민원축소	납세자 기본사항	「소득세법」 제166조	방문 수요예측을 통해 방문축소 방안 마련
	민원신청 내역	민원사무처리규정	
	관공서와 거리	지자체좌표정보(오픈 API)	

자료: 국세청

나. 분석의견

인공지능 빅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연말에 완료되는 중장기정보화전략계획을 토대로 추진 과제 및 소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당초 72개 과제 개발을 목표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27개 우선과제를 선정하여 개발하고, 향후 연차별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2018년도에는 사업 준비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비용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2018년 2월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빅데이터센터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진행 중인 상황으로 2018년 12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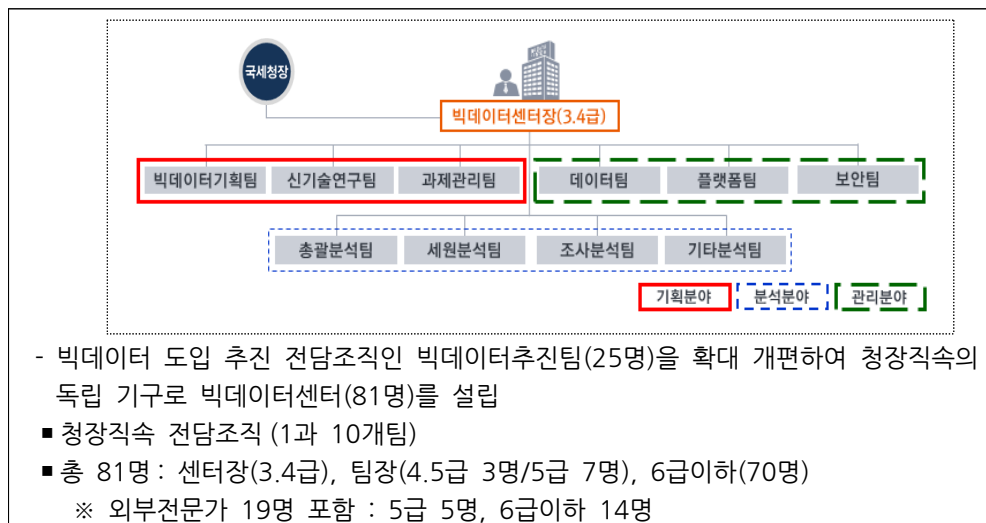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을 통해 분석과제의 빅데이터 적합성, 기술 구현가능성, 난이도, 소요비용,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여 향후 추진과제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12월에 완료되는 ISP 결과를 토대로 2019년도 추진 과제 및 소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예산 확정 이후의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신설 조직의 규모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사업 수행을 위해 1과 10팀 81명 규모의 국세청장 직속 전담조직을 별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과제 수행을 위해 민간경력채용을 통한 외부전문가를 고용하고 세무직, 전산직이 융합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빅데이터센터 인력 확보 계획(안)]



자료: 국세청

그러나 조직 신설과 관련하여 10월 초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상황으로, 향후 확보가능 인력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조직 신설 시 2019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면밀한 직무분석 등을 수행하여 이를 토대로 필요인원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사업이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인력

역시 단계적으로 충원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세청은 2019년도 예산안 의결 시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위해 관련 부처와의 직제 개정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으며, 협의 과정에서 예산 확정 이후의 사업 규모를 반영하여 신설 조직의 규모도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사업¹⁾은 2019년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을 위하여 대리납부자인 신용카드사에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안은 40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9년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운영	0	0	0	4,082	4,082	순증

자료: 국세청

나. 분석의견

국세청은 적정 성과지표를 통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관리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에 따라 부가가치세 채납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등을 통한 거래 발생 시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사업자 대신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하는 제도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부가가치세 탈루가 많은 유흥주점업을 대상사업으로 지정하였으며, 향후 대상사업자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 국세청은 자체 가맹점망을 보유한 8개 신용카드사를 대리납부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제6항²⁾에 따라 이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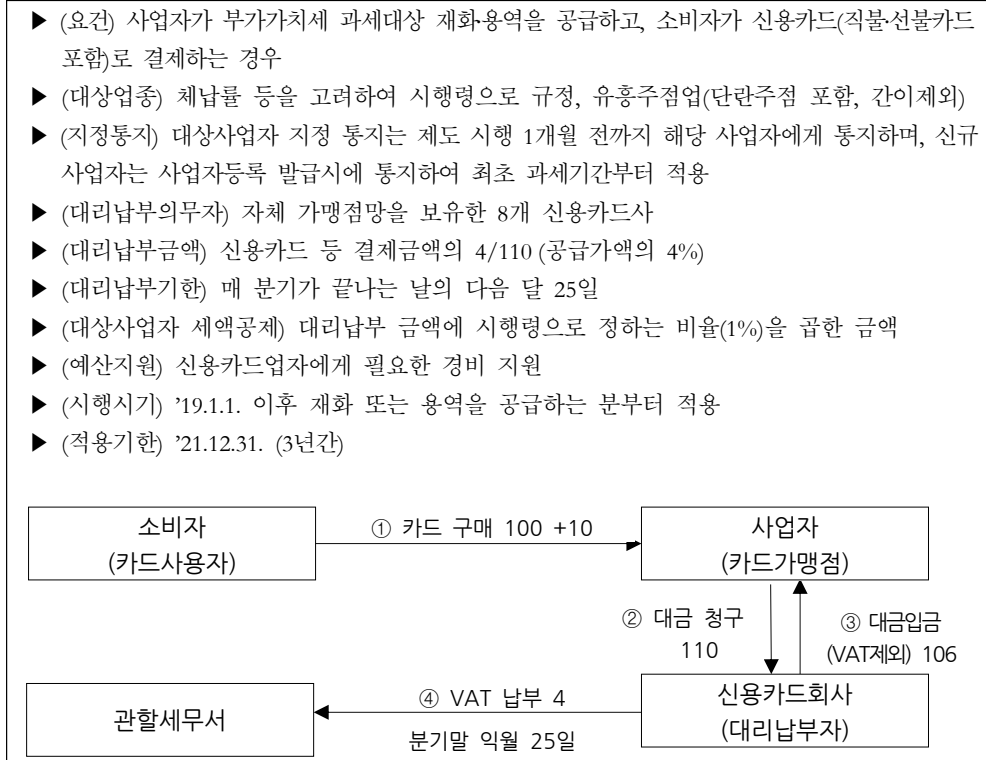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1134-300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⑥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에 게 제1항에 따른 납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본조신설 2017. 12. 19.], [시행일 : 2019. 1. 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주요 내용]



자료: 국세청

이에 따라 동 사업에는 신용카드사 경비 지원을 위한 비용 40억 3,6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금(320-01목)으로 편성되었다. 해당 비용은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및 운영비용, 세무회계 인력비용, 민원대응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의 목적은 체납률이 높은 특정업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체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동 사업이 3년간 한시적용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단기간 동안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사업 계속 여부 및 대상업종 확대 검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동 단위사업³⁾의 성과지표는 ‘신용카드사의 대리납부세액’ 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국세청은 동 지표를 2016년 기준 대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 중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70%로 산출하였다. 그러나 대상사업자의 영업

3)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사업은 1개 단위사업 내의 1개 세부사업이 편성되어 있다.

실적 변동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의 규모가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적정 목표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지표가 외부요인에 의해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성과지표는 사업의 집행결과는 보여줄 수 있지만 그로 인한 부가가치세 체납률 인하 등의 효과를 보여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사업 성과지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산출 근거	단위	실적 및 목표치			
				구분	'17	'18	'19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제도 운영	신용카드사의 대리납부세액	'16년 대상사업자의 부가가 치세 납부할세액(1,312억) × 신용카드 사용비율 × 70%	억원	목표	-	-	854
				실적	-	-	-

자료: 국세청

따라서 국세청은 사업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사업 성과가 제고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대상업종 확대 등의 산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대형집단상가등 기준시가 산정 사업¹⁾은 대형집단상가, 오피스텔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일괄평가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600만원 감액(5.0%)된 1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9년도 대형집단상가등 기준시가 산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대형집단상가등 기준시가 산정	1,289	1,329	1,329	1,263	△66	△5.0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수도권·광역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전체, 상업용건물은 건물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100개호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세인 양도소득세²⁾ 및 상속·증여세³⁾의 과세 기준으로 적용된다.⁴⁾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1133-301

2)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나. 분석의견

대형집단상가등 기준시가 산정 사업을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 평가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란 매년 정부에서 토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는 ‘공시지가제도’, 주택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 가격공시제도’, 비주거용 부동산⁵⁾의 가격을 공시하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로 구분된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합 공시하는 주택과 달리 토지와 건축물이 분리되어 평가 및 과세되고 있으며, 국세 부과 시에는 국세청의 기준시가⁶⁾, 지방세 부과시에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⁷⁾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산정체계가 분산되어 과표의 정확성·형평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2016년 1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근거를 마련하였다.⁸⁾ 다만, 기존대로 국세청장이 비주거

4) 국세청에 의해 고시되지 않은 비주거용 건물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건물기준시가 산정 방법에 따라 계산된 건물기준시가가 적용된다.

5)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되는 비주거용 부동산)과 이를 제외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으로 구분된다.

6)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건물의 건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건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이며,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의미한다.

7)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

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용 집합부동산가격을 평가·고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복하여 평가·고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에도 국토교통부의 평가모델 개발 연구용역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비주거용 건축물의 가격이 공시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부동산 과표가 행정안전부의 건물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로 분산 운영되고 있다.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 추진경과]

'05. 5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도입 결정			
'06. 1월	부동산실무기확단회의에서 주관부처를 국토부(舊 건교부)로 결정			
'12.12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안홍준 의원)			
'16.1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16.9.1. 발효)과 동시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근거마련, 제도시행을 위해 국토부 사전연구 용역 진행			
'16년 ~ 계속	[국토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사전연구 진행상황]			
	용역	시기	연구기관	내용
	1차	2015.12~ 2016.9	한국감정원· 조세연구원	17개 시군구 상업업무용 가격공시모형 설계
	2차	2016.11~ 2017.9	한국감정원· 지방세연구원	추가 50개 시군구 가격공시모형 설계
	3차	2017.11~ 2018.6	한국감정원· 지방세연구원	산업용 건물 가격산정모형 설계
	국토부 주관 ‘비주거용 부동산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기재부, 행안부, 국세청 등 참석)			

자료: 국세청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기관별로 별도의 산정기준을 통해 가격을 산정하고 과세표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현재 국세청은 매년 한국감정원에 연구용역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업무를 이관하여 평가업무를 일원화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업무 이관 시기는 미정이나, 현재 국토교통부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로 이후 관계부처와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향후 국토교통부와 협의 하에 신속히 업무 이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등 국세와 근로·자녀장려세제 관련 상담’을 위한 국세상담센터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세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국세상담센터 인건비 사업¹⁾,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총액, 비총액)²⁾ 3개 세부사업이 편성되어 있다. 2019년도 3개 세부사업의 예산안은 102억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700만원(3.5%) 감액 편성되었다.

[2019년도 상담센터 관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세상담센터 인건비	7,865	8,651	8,651	8,741	90	1.0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총액)	220	982	982	896	△86	△11.4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비총액)	1,768	1,005	1,005	624	△381	△37.9
합 계	9,853	10,638	10,638	10,261	△377	△3.5

자료: 국세청

나. 분석의견

국세상담센터의 상담률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근로·자녀장려세제 확대 운영과 관련하여 상담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사전에 파악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세상담센터의 2017년 평균 상담률은 61.6%로, 전년 대비 4.7%p 하락한 수치이다. 국세상담센터 상담률은 2013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이며, 총 상담건수가 260만건을 초과한 2015년, 2017년에는 특히 상담률이 낮게 나타났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7202-100

2) 코드: 일반회계 7218-200, 7218-250

이를 고려했을 때 국세상담센터의 상담률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 개편 등으로 상담 수요가 증가하는 해에 수요를 예측하여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상담센터 상담률 추이]

(단위: 천건,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건수	1,985	1,917	2,625	2,477	2,670
상담건수	1,538	1,328	1,509	1,656	1,646
상담률	77.5	69.3	57.5	66.9	61.6

자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월별 상담 건수 및 상담률을 보면, 최저 14만 건에서 최대 28만건으로 월별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상담 추이는 개별 세금 신고기간 등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전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상담센터 월별 상담률 추이]

(단위: 천건, %)

구분	2017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건수	266	287	220	186	431	184	208	183	202	142	168	193	2,670
상담건수	176	191	141	109	239	113	116	113	131	97	123	97	1,646
상담률	66.2	66.6	64.1	58.6	55.5	61.4	55.8	61.7	64.9	68.3	73.2	50.3	61.6

자료: 국세청

특히, 2019년도에는 근로·자녀장려세제의 대폭 확대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등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가 있으므로 관련 상담 수요가 증가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신청 시기 등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대비하여 사전에 상담원 교육, 업무 매뉴얼 마련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상담률이 낮아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

1

현황

관세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관세청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1,036억 3,3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58억 5,800만원(6.0%) 증가하였다.

[2019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2,241	97,775	97,775	103,633	5,858	6.0

주: 총계 기준

자료: 관세청

관세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5,660억 6,0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70억 5,000만원(5.0%) 증가하였다.

[2019년도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84,986	539,007	539,007	566,060	27,052	5.0

주: 총계 기준

자료: 관세청

한편, 관세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19년도 관세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수출입 통관 프로그램이 방사능핵종분석기 도입 및 전자봉인 교체 등으로 증액되었고(2018년 145억원 → 2019년 149억원), ② 관세심사 프로그램은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활동지원 신규 사업 신설, 신종마약 분석장비 도입 등이 편성되었으며(2018년 55억원 → 2019년 67억원), ③ 정보화·국제협력 프로그램은 WCO 정책위원회 개최, 개도국 관세행정 업무 재설계, 4차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도입 등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다(2018년 620억원 → 2019년 692억원).

2019년도 관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최첨단 방사능 핵종 분석장비 도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검색센터의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핵종 분석장비 배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방사능 측정이 가능한 핵종 분석장비 15대를 도입할 예정이나, 고정형 감시기와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정 수량을 도입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블록체인 전자통관시스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네트워크 내 주체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및 안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통관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동 사업에는 다양한 네트워크 주체들이 참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적극적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유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관세청의 2019년도 신규사업은 총 1개 사업, 5억 4,500만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활동지원 사업은 수출입 기업에 품목 분류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해당분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 세부사업에서 이관되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다.

[관세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1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활동지원	545
합 계		545

자료: 관세청

2019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 국제협력, 개도국 관세행정현대화지원 사업 등이 있다.

① 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 사업은 신종마약 물질규명분석용 첨단장비 도입 비용이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고, ② 국제협력 사업은 WCO(세계관세기구) 정책위원회 개최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③ 개도국관세행정현대화지원 사업은 지원 개도국의 확대 및 개도국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이 신규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다.

[관세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8		2019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일반회계 (5개)	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	1,612	1,612	2,529	917	56.9
	국제협력	783	783	1,093	310	39.6
	개도국관세행정현대화지원	3,213	3,213	4,867	1,654	51.5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315,280	315,280	327,572	12,292	4.0
	관세국경관리연수원운영지원	3,794	3,794	5,543	1,749	46.1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8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관세청

II

개별 사업 분석

1

세입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2019년도 관세청 세입예산안은 총 1,036억 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58억 5,800만원(6.0%) 증액되었다. 세입 예산안의 대부분은 면허료 및 수수료가 차지하고 있으며, 벌금 및 몰수금, 가산금, 기타잡수입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도 관세청 세입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관유물대여료		335	305	305	305	0	0.0
토지대여료		23	24	24	24	0	0.0
건물대여료		312	281	281	281	0	0.0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	13	13	4	△9	69.2
기타재산수입		4	13	13	4	△9	69.2
벌금 및 몰수금		17,685	29,897	29,897	22,676	△7,221	24.2
벌금		3,873	6,311	6,311	6,209	△102	1.6
몰수금 및 추징금		3,421	4,375	4,375	3,604	△771	17.6
과태료		6,089	16,791	16,791	10,322	△6,469	38.5
과징금		4,287	2,420	2,420	2,541	121	5.0
변상금 및 위약금		69	104	104	104	0	0.0
위약금		69	104	104	104	0	0.0
가산금		3,872	5,202	5,202	3,251	△1,951	37.5
가산금		3,872	5,202	5,202	3,251	△1,951	37.5
기타경상이전수입		511	412	412	412	0	0.0
기타경상이전수입		511	412	412	412	0	0.0
재화및용역	면허료및수수료	8,898	60,505	60,505	75,631	15,126	25.0
	면허료및수수료	8,898	60,505	60,505	75,631	15,126	25.0
판매수입	잡수입	692	1,106	1,106	1,106	0	0.0
	기타잡수입	692	1,106	1,106	1,106	0	0.0
고정자산매각대		138	231	231	144	△87	37.7
기계기구매각대		66	231	231	144	△87	37.7
세입 총계		32,241	97,775	97,775	103,633	5,858	6.0

자료: 관세청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나. 분석의견

관세청의 세입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관세청은 가산금 편성 시 최근 수납실적 추이 및 전체 가산금 수납액 중 증가산금의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액을 과소 편성하였다.

가산금¹⁾은 「관세법」 제41조²⁾에 따라 관세 채납시 부과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으로, 2018년 9월 제출된 「관세법 개정안」³⁾에서는 증가산금의 비율을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관세청은 2019년도 예산안을 2018년도 예산액에 증가산금 인하율을 곱하여 32억 5,100만원으로 산출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예산의 과소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① 최근 수납실적 추이가 아닌 ‘2018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가산금 평균 실적은 60억 2,500만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52억원보다 크다. 이를 고려했을 때, 전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기보다는 수납실적 추이를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② 개정안에서는 가산금 전체가 아닌 증가산금에 한하여 비율 인하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관세청은 가산금 전체에 대해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서도 최근 3년 평균 증가산금 수납액을 6억원으로 보고, 이에 인하 비율을 적용하여 2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동일하게 「국세징수법」에서 증가산금 인하율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세청의 경우, 가산금 수납액 중 증가산금 비율을 고려하여 추정 증가산금에 한하여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⁴⁾

1) 코드: 일반회계 58-581

2) 「관세법」

제41조(가산금) 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채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채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채납된 관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정부 제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8.31., 의안번호 2015218

4) 국세청의 가산금 산출 산식은 “2019년 예상액(2019년 예산액×3년 평균 수납액 중 현년도 비율×증가산금 비율×증가산금 인하율)”이며, 이를 관세청의 경우에 적용하면 “2019년 예상액(=3년 평균

관세청의 가산금 수납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2017년에는 1.0%에 불과하였다. 향후 증가산금 이율 인하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하여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수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도별 가산금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15	5,019	5,019	242,562	9,048	180.3	3.7	233,483	31
2016	4,719	4,719	313,083	5,155	109.2	1.6	303,373	4,555
2017	4,955	4,955	393,683	3,872	78.1	1.0	381,593	8,218
2018.8	5,202	5,202	409,417	3,090	59.4	0.8	406,327	4,674
2019(안)	3,251							

자료: 관세청

둘째, 관세청은 일부 비목의 경우 과거 수납추이 및 수납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관세청은 세입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일부 세입 항목을 최근 수납추이가 아닌 2018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다.

[세목별 세입예산안 편성 사례]

(단위: 백만원)

목명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19년도 예산안(A)	3년 평균 결산액(B)	차이 (B-A)
과징금	'18년 예산액(2,420)의 5% 증액 편성	2,541	1,717	△824
위약금	'18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	104	43	△61
가산금	'18년 예산액에서 증가산금 인하율 적용하여 편성	3,251	6,025	2,774
기타경상이전수입	'18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	412	478	66
기타잡수입 ¹⁾	'18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	1,106	650	△456

주: 1) 기타잡수입은 2018년부터 재화및용역판매수입과 수입대체경비가 합쳐졌으며, 평균 결산액은 두 세입과목 결산을 합한 값임

자료: 관세청

그러나 최근 수납 추이를 반영하지 않은 예산안 편성은 일부 세목의 과다 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납액-(2019년 예산액×3년 평균 수납액 중 현년도 비율(88.6%)×증가산금 비율(97.0%)×증가산금 인하율)” 로, 40억 8,200만원으로 산출된다.

① 과징금⁵⁾은 「관세법」 제178조,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에 5% 증액하여 25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과징금은 2016년에는 환급액 발생으로 수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변동이 잦은 편이며, 2018년 8월 기준 수납률 역시 32.4%에 불과하다. 따라서 2019년도 예산안 25억 4,100만원은 과다편성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과징금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15	2,876	2,876	3,672	2,195	76.3	1,469	8
2016	1,601	1,601	△134	△1,332	△83.1	1,176	22
2017	2,305	2,305	6,041	4,287	186.0	1,680	74
2018.8	2,420	2,420	2,383	785	32.4	1,598	48
2019(안)	2,541						

자료: 관세청

② 위약금⁶⁾은 국고귀속물품의 구매 시 계약위반으로 세입조치되는 입찰 보증금, 청사신개축·장비도입계약 등 계약위반으로 세입조치되는 계약 보증금 등으로 구성된다. 위약금은 2018년을 제외하고, 1억원 이상 수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2016년 이후 1억 400만원으로 예산액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수납추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위약금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15	33	33	41	38	115.2	3	0
2016	104	104	68	22	21.1	46	0
2017	104	104	87	69	66.3	18	0
2018.8	104	104	1,858	1,855	1,783.7	3	0
2019(안)	104						

주: 2018년에는 컨테이너검색기 도입 지연 관련 지체상금 1,837백만원(1건)이 발생함

자료: 관세청

5) 코드: 일반회계 56-565

6) 코드: 일반회계 57-572

③ 기타잡수입⁷⁾은 세관설비사용료,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시설 사용료,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 수출지원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기타잡수입은 2018년 예산액과 동일하게 11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최근 3년간 수납액이 6억 5,000만원에 불과하며 2018년 8월 수납률은 36.3%에 불과하다. 특히 기타잡수입은 대부분이 고정되어있고, 변동성이 있는 UNI-PASS 수출지원 수수료의 경우 2019년 가나와의 계약에 따른 수수료 수입 3억원만 예정되어 있어 수납가능액은 7억 5,00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수납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기타잡수입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15	610	610	593	563	92.3	30	0
2016	769	769	671	641	87.3	30	0
2017	1,077	1,077	694	664	61.7	30	0
2018.8	1,106	1,106	434	402	36.3	32	0
2019(안)	1,106						

자료: 관세청

7) 코드: 일반회계 69-691

가. 현 황

물류촉진 및 무역원활화 사업¹⁾은 수출입 물류의 흐름을 촉진하고 안전한 무역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은 47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8,700만원(8.9%) 증액되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최첨단 방사능 핵종분석장비 도입 내역 사업(2억 9,400만원)의 신규 편성으로, 해당 사업은 생활밀착 제품을 통관단계에서 방사능검사를 최우선 순위로 하여 검사하기 위하여 세관 내에 직접 핵종분석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2019년도 물류촉진 및 무역원활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물류촉진 및 무역원활화	3,095	4,349	4,349	4,736	387	8.9
최첨단 방사능 핵종 분석장비 도입	0	0	0	294	294	순증

자료: 관세청

나. 분석의견

컨테이너검색센터의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핵종 분석장비 배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2019년 수입화물 방사능 측정(핵종) 분석장비 15대를 도입하여 각 컨테이너검색센터(전국 14개소) 및 부산세관 수입과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컨테이너검색센터에 방사능 방출량 및 피폭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고정형 감시기 14대와 휴대형 측정기 16대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방사선량률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원자력기술원(KINS)에 핵종 분석을 의뢰하고 있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1131-301

관세청은 한국원자력기술원에 의뢰하는 경우 의뢰 시간 소요로 인해 통관물류 지체가 발생하게 되므로, 직접 세관에 방사능 핵종분석기를 도입하여 신속한 핵종 분석으로 통관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민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세관의 수입화물 방사능검사 절차]

단계	검사장비	설명
1단계	고정형 감시기	방사능이 높게 검출되는 화물의 개략적 위치 파악 (세부적인 피폭 선량률이나 핵종은 판단 불가)
2단계	휴대형 측정기	피폭 방사선량률 측정
3단계	화물별 방사성 동위원소 목록	방사선량률이 배경준위의 3배 미만인 경우 ① 화물이 특수핵물질, 산업·의료용 동위원소인 경우 → 의료기기법 등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수입요건확인서류 징구·확인 후 통관 ② 자연방사성물질 검출 가능한 특정물품(예: 시멘트, 석재 등) → 통관 허용
4단계	KINS에 핵종 분석 의뢰	③ 방사선량률이 배경준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 핵종 분석 의뢰하여 KINS의 최종 의견에 따라 반송, 폐기, 또는 통관 허용

자료: 관세청

그러나 고정형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산세관 수입과로의 배치는 필요성 및 시급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며, 도라산 검색센터의 경우에는 개성공단 재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시점에서 핵종 분석장비를 도입할 시급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핵종 분석장비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정형 감시기와 연계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2019년 기준 고정형 감시기를 배치하여 운영하는 컨테이너 검색센터(14개소)²⁾를 중심으로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적정 수량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2) 부산세관의 감만부두는 2019년부터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다.

[세관 화물검색센터별 방사능물품 검출 경보 실적]

(단위: 건)

세관	검색센터	'17년	'18년 1~7월	배치 필요 여부	비고
인천 세관	제1 검색센터(제5부두)	23	15	○	
	제2 검색센터(ICT)	0	2	○	
	제3 검색센터(선광)	19	9	○	
	인천신항 검색센터(SNCT)	-	25	○	'18.5.17. 개시
파주 세관	도라산 검색센터 ¹⁾	미운용	미운용	×	개성공단 재개 시 재운용
부산 세관	제1 검색센터(제7부두)	미운용	미운용	○	폐기 → 2019년부터 감만부두로 신설운영
	제2 검색센터(자성대)	68	36	○	
	제3 검색센터(신선대)	2	29	○	
	신항 제1 검색센터(3부두)	28	17	○	
	신항 제2 검색센터(5부두)	3	42	○	
	수입과	미운용	미운용	×	
울산 세관	울산항 검색센터(온산)	24	20	○	
광양 세관	광양항 검색센터	23	23	○	
군산 세관	군산항 검색센터(제6부두)	7	7	○	
평택 세관	제1 검색센터(배후단지)	140	56	○	
	제2 검색센터(내항)	22	9	○	
합계		214	243	14	

주: 1) 도라산 검색센터는 2008.11.4. 신설·운용되었으나, 2016.2.10. 개성공단 폐쇄로 잠정적으로 가동 중단하였으며, 향후 개성공단 재개시 재가동할 계획임

2) 부산세관 제1검색센터는 폐기하였으나, 2019년 중 감만부두에 신설·운영할 예정으로, 중컨테이너 검색센터 1개소의 운영이 추가개시될 예정임

자료: 관세청

가. 현 황

정보관리 사업¹⁾은 기존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고,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액은 612억 9,0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2억 2,400만원(9.3%) 증액되었다.

동 사업에는 블록체인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관련 비용 3억 9,1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 통관 과정에서 단계별 생산정보를 전자상거래업체·특송업체·관세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019년도 관세청 정보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정보관리	56,807	56,066	56,066	61,290	5,224	9.3
블록체인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1단계	0	0	0	391	391	순증

자료: 관세청

나. 분석의견

블록체인 전자통관시스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네트워크 내 주체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및 안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200억 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으로, ① 수출입 통관물류, ② 원산지증명서(e-C/O) 발급 및 교환서비스, ③ 전자상거래(해외직구), 3가지 부문에 네트워크 내의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와 가치의 이동을 기록·검증·보관·실행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이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1441-500

① 블록체인 기반 수출입 통관물류 서비스는 수출자, 수입자, 관세사, 금융/보험업계, 내륙운송사 등 수출입 물류주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물류관리를 선진화하는 사업으로, 향후 해상, 항공분야의 수출 사업부터 시작하여 수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② 블록체인 기반 원산지증명서 발급·교환 서비스는 전자 원산지증명서를 상대국과 교환할 때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③ 전자상거래 개인통관 서비스는 해외직구 및 역직구에 대한 통관·물류운송 단계별 참여자들 간의 블록체인망을 형성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사업이다.

[블록체인 통관물류 시스템 구축 사업의 연도별 소요예산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이행과제	연도															소계						
	구축단계						유지보수 단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개발비	장비비	개발비	장비비	개발비	장비비	유지보수비	개발비	장비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1-1] 블록체인 기반 수출입 통관물류 서비스 구축	700	655	600	940	900	327	139	600		292	416	476	476	339	183	60						7,100
[1-2]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 개인통관 서비스 구축	340	940	600	261	400		134			217	257	257	257	126	40							3,824
[1-3] 블록체인 기반 e-C/O발급 및 교환서비스	360	2,514	400	1,638			316			530	530	530	530	222								7,564
[1-4] 블록체인 기반 전자통관 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및 PMO	355		320		180			90														975
[1-5] 블록체인 기반 외부 및 요건확인 기관 자료교환 표준 체계 수립 ISP			500																			500
합 계	1,755	4,109	2,420	2,839	1,480	327	575	690		1,040	1,203	1,263	1,263	687	223	60						19,963
	5,864		5,289		2,382		1,730			1,203		1,263	1,263	687	223	60						
	19,963																					

주: 관세청에서 제출한 ISP에 따른 산출 금액임
자료: 관세청

2018년에는 세 가지 사업 모두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인 상황이다. ① 수출입 통관물류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공공서비스의 과제 중 하나로 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중이며, ② 원산지증명서(e-C/O) 발급 및 교환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첨단기술공공서비스 사업의 과제로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베트남, 싱가포르와 연계하여 진행중이다. ③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블록체인실증 사업에서 5.6억원이 투입되어 진행중인 상황이다.

이 중 2019년 예산안에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본사업을 위한 구축 비용 3억 9,1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

[블록체인 기반 사업 2018년도 시범사업 현황]

소관	사업명	과제명	예산	주요내용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블록체인 기반 수출통관·물류	18억원	- 수출신고 및 적하목록 제출을 블록체인 망에서 처리(서류제출 생략) - 물류주체간(관세청 + 공급망(5개 그룹) + 은행 등) 실시간 정보 공유
	블록체인실증 (KISA)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플랫폼	56억원	- 참여자(관세청 + 전자상거래업체 + 특송 업체 등)간 정보의 블록체인 구성 및 자 동수입신고 체계 - 구입부터 선적·도착까지 각 유통단계별 정보를 공유
행정 안전부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촉진	블록체인 e-C/O 발급·교환	10억원	-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교환, 통관자료 교 환 - 대상국가: 베트남, 싱가포르

자료: 관세청

향후 동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내의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수출통관물류의 경우, 수출자, 수입자, 관세사, 금융/보험업계, 내륙운송사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필요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교환 서비스의 경우에는 해외세관 및 해외 수출입업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업체, 특송통관업체, 배송업체 등이 네트워크에 참여해야 한다.

2019년도 도입 예정인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분야는 네트워크 내 참여자들이 많지 않고 특성이 유사한 측면이 있어 참여 유인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나, 향후 수출입 통관물류 및 원산지증명서 서비스 분야까지 확장하는 경우 규모 및 특성이 다양한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관세청은 동 사업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네트워크 참여자들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유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제협력 사업¹⁾은 외국세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및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해외보급 확대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안은 10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000만원(39.6%) 증액되었다.

주요 증액 사유는 WCO 정책위원회 개최 내역사업(3억 4,4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기 때문이다.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정책위원회는 WCO 운영, 정책수립 및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WCO 최고 의사결정체로서 30개 위원국과 지역의장국, 산하 위원회 의장 등 전 세계 100여명의 관세정책 결정권자들이 모이는 회의로, 관세청에서 유치하여 2019년에 개최할 계획이다.

[WCO 조직도]



[2019년도 국제협력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제협력	740	783	783	1,093	310	39.6
WCO 정책위원회 개최	0	0	0	344	344	순증

자료: 관세청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1431-350

나. 분석의견

WCO 정책위원회 개최 비용 중 일부를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2019년 12월 초 3박 4일 간의 일정으로 WCO 정책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위원국 대표, 지역의장국 대표, 산하 위원회 의장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회의 개최를 통해 관세청의 WCO 진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세계 관세정책 결정과 국제분쟁 발생 시 영향력 강화로 유리한 무역환경을 조성해갈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향후 개최장소를 내부적으로 확정 후 해당 지자체와 공동개최를 위해 공항영접, 회의장 임대, 오만찬 등 분야에서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에서 제출한 예산안 산출 내역에 따르면, 행사 및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커피브레이크 비용으로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단가가 다소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커피브레이크와 관련하여 180명 기준, 4회로 회당 5만원 단가를 책정하였다.

그러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외빈 초청시 주빈의 식비는 5만원, 수행원은 3만원으로, 이와 비교했을 때 다과를 제공하기 위한 커피브레이크의 단가가 다소 높게 책정된 측면이 있다. 또한, 서울시내 호텔 기준의 커피브레이크 단가가 보통 19,000원 수준으로 시세가 추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²⁾

따라서 관세청은 실제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관련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WCO 정책위원회 커피브레이크 예산편성 내역]

(단위: 만원)

예산안 편성 내역	금액	예산 조정시	금액
180명*4회*5만=36백만	3,600	180명*4회*1.9만=14백만	1,368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 관세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호텔 20,900원, □□호텔 16,500원 등으로 평균적으로 19,000원 수준으로 시세가 추정된다.

가. 현 황

AEO 공인심사 위탁 사업¹⁾은 「관세법」 제255조의2²⁾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을 위한 서류심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액은 11억 7,8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00만원 감액되었다.

AEO는 수출입업체, 운송인, 관세사 등 무역 관련 업체들 중 관세당국이 법규 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인한 업체를 의미한다. AEO 공인을 받은 기업은 물품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 등 통관절차 상 혜택을 받게 되며, AEO제도 시행국가들과의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통해 상대국 수입통관시에도 검사생략, 우선검사 등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2019년도 AEO 공인심사 민간위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관세탈루심사	3,288	3,867	3,867	3,636	△231	△6.0
AEO 공인심사 위탁	788	1,180	1,180	1,178	△2	△0.1

자료: 관세청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명: 일반회계 1231-300의 내역사업

2)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상호 조건에 따라 제3항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분석의견

AEO 신규 공인심사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 제도 및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2019년도 AEO 공인심사 위탁 건수를 신규 113개, 재공인 209개로 예측하고 있다. 관세청은 2018년~2019년에 AEO 공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기업이 집중되고 있어 재공인 심사 업무 폭증이 예상된다는 입장으로, 2018년 예산은 2017년 대비 42.2% 증액한 11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2019년 예산안에는 2018년 예산과 유사한 규모로 1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2018년 6월까지 AEO 공인위탁 심사 건수는 신규 22건, 재공인 92건이다. 재공인 심사의 경우 관세청의 예측과 유사하게 대폭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신규 심사 건수는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있다.

[AEO 공인 위탁심사 건수]

(단위: 건)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상수요	6월말 집행	
신규	138	119	76	133	22	113
재공인	150	6	54	186	92	209
합계	288	125	130	319	114	322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신규 심사 건수의 감소 추세는 중소기업의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 중단³⁾과 AEO 공인취득 및 유지에 대한 부담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 사업 내에 AEO 공인지원 분야를 신설하고, 신규 공인 시의 공인기준 간소화, 자율점검 항목의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공인부담을 완화해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2019년 집행 시 AEO 신규 공인 신청 건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제도 및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201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2년이내 단계적 폐지”로 결정되어 2017년 폐지되었다.



조달청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조달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조달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조달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2,450억 3,600만원으로 전년 예산 2,258억 4,500만원 대비 191억 9,100만원(8.5%)이 증가하였다.

[2019년도 예산안 조달청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조달특별회계	223,960	225,845	225,845	245,036	19,191	8.5

자료: 조달청

조달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1,351억 6,500만원으로 전년 예산 1,260억 5,400만원 대비 91억 1,100만원(7.2%) 증가하였다.

[2019년도 예산안 조달청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조달특별회계	116,335	126,054	126,054	135,165	9,111	7.2

자료: 조달청

나. 세입·세출예산안

조달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조달특별회계로만 구성된다.

조달청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3,904억 9,0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484억 5,500만원(14.2%) 증가하였다.

[2019년도 조달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조달특별회계	365,025	342,035	342,035	390,490	48,455	14.2

주: 총계 기준

자료: 조달청

조달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3,904억 9,0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484억 5,500만원(14.2%) 증가하였다.

[2019년도 조달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조달특별회계	292,600	342,035	342,035	390,490	48,455	14.2

주: 총계 기준

자료: 조달청

라. 재정구조

2019년도 예산안의 조달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조달특별회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일반회계로 1,450억원, 공무원연금기금으로 85억원 전출이 발생한다.

[2019년도 조달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조달청

2019년도 조달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기반 산업 육성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공공테스트베드 시범사업이 신규 반영되었고(12억원), ② 공정가격 문화 조성을 위한 원가계산용역기관 대상 외부위탁 평가 등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관리예산이 증액 되었으며(2018년 1.9억원 → 2019년 4.5억원), ③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축기지 경비인력 등의 직접고용 전환 예산 등을 신규 반영하였고(9억원), ④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수출 전략기업 육성사업 예산 등이 일부 증액되었다(2018년 3억원 → 2019년 6억원).

2019년도 조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법령에 근거 없는 조달수수료 감면·면제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조달수수료 고시」 및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수료 면제 기준에 대해 고시하고 있으나 일부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혁신조달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테스트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테스트 품목 구입 시 제품별 특성에 맞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법 상 테스트 성공 이후 제품의 소유권 양여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조달청의 2019년도 신규사업은 총 1개 사업, 1억 8,400만원 규모이다.

조달특별회계 사업 중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ODA) 사업은 역내 조달 네트워크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제분담금 사업이다.

[조달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조달특별회계 (1개)	아태 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ODA)	184
합 계		184

자료: 조달청

2019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지방조달행정기본경비(총액),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등이 있다.

①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은 원가계산용역기관 대상 위탁평가비, 비축기지 시설관리 인건비, 테스트베드 사업 평가 심의수당 등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②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사업은 공공혁신조달 시범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대폭 증액되었다.

[조달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8		2019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조달 특별회계 (3개)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3,289	3,289	4,503	1,214	36.9
	지방조달행정기본경비(총액)	2,083	2,083	3,850	1,767	84.8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245	245	1,410	1,165	475.5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8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조달청

II

개별 사업 분석

1

조달수수료 감면 제도 개선 필요

가. 현 황

조달수수료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으로, 내자구매사업수입, 외자구매사업수입, 시설계약사업수입 및 기타 잡수입(나라장터 이용수수료)로 이루어진다.

내자구매사업수입¹⁾은 국내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내자) 조달에 따른 수수료로, 2019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0억 100만원(4.0%) 증액된 1,565억 2,700만원이다.

외자구매사업수입²⁾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는 물품(외자)의 조달에 따른 수수료로, 2019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00만원(1.0%) 증액된 51억원이 편성되었다.

시설계약사업수입³⁾은 시설공사 및 기술용역 계약, 맞춤형서비스, 총사업비 검토, 지방자치단체 공사 사전원가 검토 등에 대한 수수료로, 2019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0억 9,400만원(10.3%) 증액된 332억 3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 외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는 기타 잡수입⁴⁾으로 수납하고 있으며,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원(6.9%) 증액된 57억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조달수수료 관련 세입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목 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내자구매사업수입	144,291	150,526	150,526	156,527	6,001	4.0
외자구매사업수입	5,560	5,050	5,050	5,100	50	1.0
시설계약사업수입	34,671	30,109	30,109	33,203	3,094	10.3
기타 잡수입(나라장터 이용수수료)	5,669	5,200	5,200	5,700	500	6.9

주: 기타잡수입(나라장터 이용수수료)는 전체 기타 잡수입 중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됨
자료: 조달청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조달특별회계 45-451

2) 코드: 조달특별회계 45-452

3) 코드: 조달특별회계 45-454

4) 코드: 조달특별회계 69-691

나. 분석의견

법령에 근거 없는 조달수수료 감면·면제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⁵⁾에서는 수요기관이 선납한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⁶⁾에서는 해당 감면율의 상한을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수요기관의 귀책사유 없는 계약체결 지연의 경우에도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조달수수료 고시」 및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에서 조달수수료 면제 기준과 절차에 대해 고시하고 있으나, 해당 고시에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면제·감면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조달수수료 감면 항목 사례]

구 분		감면 규정
법률 및 시행령	감경	수요기관의 대금 선납(8~20%)
	면제	표준 소요일수를 초과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시 및 지침	감경	①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구매(5%) ②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5%) ③ 저장용 유류 대량수요기관(20%) ④ 전기자동차 구매(20%) ⑤ 클라우드서비스 구매(20%) ⑥ 학교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재구매(20%) ⑦ 국방부, 방위사업청의 상용물자 구매(30%)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수수료)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5조의4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미리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징수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수수료의 결정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수요물자나 공사의 계약 체결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구 분		감면 규정
	면제	① 전통공예품이나 전통주 등 구매 ② 수학여행 등 학생대상 조달서비스 ③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④ 납품된 물품이 리콜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⑤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⑥ 총사업비 설계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 후 동일 건에 대해 재검토 요청하는 경우 ⑦ 지자체에서 조달청에 공사계약 요청시 사전공사원가검토 수수료 ⑧ 조달청에서 계약한 공사로서 총사업비 물가변동 검토요청하는 경우 ⑨ 민간투자사업 중 조달청과 사전에 수수료 면제 합의된 경우 ⑩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및 새로운 계약으로 체결하여 주는 경우 ⑪ 신규발주공사로서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공업체가 부도 발생 또는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⑫ 공사준공이후 1년 이내 하자발생이 총공사 하자보증금 대비 200% 이상에 해당되어 시공자가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⑬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연기된 입찰 및 경쟁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쟁입찰의 경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⑭ 우리 청에 계약요청 하는 총사업비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 수수료 ⑮ 수요기관 직불 조달수수료가 1,000원 미만인 경우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법령 상 근거가 없는 수수료 감면은 수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회에서도 지난 2018년도 예산안·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달수수료 감면 제도에 대해 지적해온 바가 있으며,⁷⁾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에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⁸⁾

조달청에 따르면, 2017년 법령 상 근거 없이 지침, 고시 등에 의거하여 면제 및 감면한 금액은 98억 6,000만원이며, 2018년 7월까지도 47억 4,000만원의 면제 및 감면 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달청은 법령 상 근거가 없는 수수료 감면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수수료 감면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속히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기획재정위원회, 「201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7.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2018.8.

8) 감사원, 감사보고서-조달청 기관운영감사, 2018.7.

[법령상 근거 없는 조달수수료 감면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감면 사유	면제/할인 금액	
			2017년	2018. 7월
내자	면제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6	8
		납품된 물품이 리콜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	-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및 새로운 계약	41	11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	-
		1,000원미만 직불수수료	2	1
		전통공예품이나 전통주 등 구매	12	40
		수학여행 등 학생대상 조달서비스	24	19
	감경	국방부, 방위사업청의 상용물자 구매(MOU)	1,071	712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구매	3,658	1,409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	2,409	1,597
		저장용 유류 대량수요기관	1,676	530
		전기자동차 구매	74	37
		클라우드서비스 구매	-	-
		학교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재구매	15	-
시설	면제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및 새로운 계약	2	1
		지자체 조달청계약 공사원가검토	50	-
		조달청계약 총사업비 실시설계단가적정성검토	-	-
		기 총사업비 실시설계단가적정성검토건 재검토	-	-
		총사업비대상 타당성검토	-	-
		조달청계약공사 총사업비 물가변동검토	28	4
		민자투자사업 사전면제합의	-	-
		수요기관예산사정 협의	173	15
		지자체(50억~100억)공사원가사전검토(17년 요청분만 적용)	21	-
	감경	국방부, 방위사업청의 상용물자 구매(MOU)	1	1
외자	면제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협의	7	-
		지체상금 계약보증금초과	-	74
	감경	국방부, 방위사업청의 상용물자 구매(MOU)	243	65
나라 장터	면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347	216
합 계			9,860	4,740

자료: 조달청

가. 현 황

조달청은 혁신제품의 공공수요 발굴 및 확대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고자 2019년 예산안에 공공혁신조달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공공혁신조달 사업은 상용화 전 단계의 혁신제품¹⁾을 공공기관이 테스트하고 결과를 피드백하여 기술혁신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선정·구매하여 테스트기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공공혁신조달 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사업²⁾에 혁신제품의 시범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1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조달정보화 사업³⁾에 혁신제품 조달 플랫폼 구축을 위한 비용 4억원,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⁴⁾에 테스트베드 사업 평가심의수당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2019년도 공공혁신조달 사업 관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227	245	245	1,410	1,165	475.5
공공혁신조달 사업(테스트베드)	0	0	0	1,200	1,200	순증
조달정보화(정보화)	15,843	19,692	19,692	21,256	1,564	7.9
혁신제품 조달 플랫폼 통합구축	0	0	0	400	400	순증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2,873	3,289	3,289	4,503	1,214	36.9
테스트베드 사업 평가심의수당	0	0	0	30	30	순증

자료: 조달청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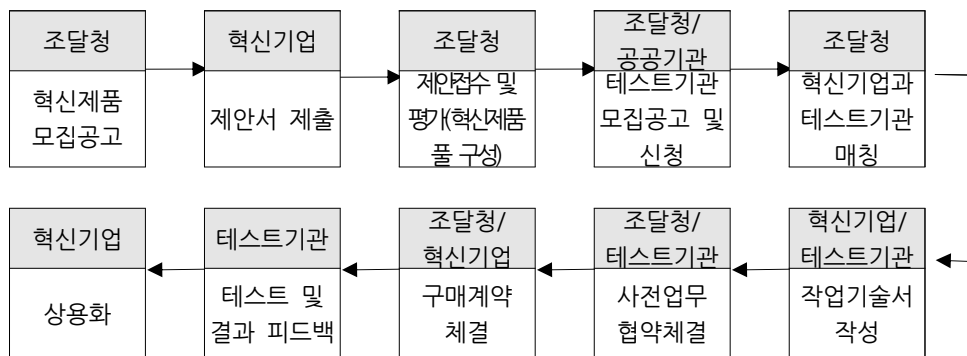
- 1)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 사업분야(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된 분야로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스마트 공장, 초연결지능화, 스마트팜)제품이 대상이다.
- 2) 코드: 조달특별회계 1237-433
- 3) 코드: 조달특별회계 1131-501
- 4) 코드: 조달특별회계 1235-334

이 사업은 ① 혁신제품 제안 및 평가, ② 혁신제품과 테스트기관 매칭 및 계약, ③ 테스트결과 피드백 및 상용화 지원의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조달청은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주체인 혁신기업과 수요주체인 공공기관을 직접 연결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양측의 위험을 완화하여 혁신제품 수요를 발굴하게 된다.

조달청은 테스트를 위한 제품 구매 비용을 품목당 3억원씩 책정하여 1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테스트기관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현재 조달청은 9월말부터 12월까지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테스트베드 사업의 국내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평가기준 및 규정 등을 차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공혁신조달사업 추진절차]



나. 분석의견

첫째,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테스트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공공혁신조달 사업은 ① 제품을 먼저 선정하고 수요를 발굴하는 방식이라는 점, ② 물품 구매를 실수요처가 아닌 조달청에서 부담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R&D 사업과 차이점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조달연계형 국민생활연구 실증·사업화 사업은 향

후 조달청의 동 사업과 연계할 예정으로, ① 공공수요에 맞춰 R&D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② 과제 개발 단계에서 완료 후 제품 구매에 대한 역할은 조달청으로 연계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⁶⁾은 국내외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① 수요처 요구 과제를 먼저 발굴하여 중소기업에 신제품 개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② 과제 개발 완료 후 수요처가 구매협약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혁신조달 사업과 타 부처 사업간 비교]

구 분	조달청의 공공혁신조달 사업	과기부의 공공조달연계형 국민생활연구 실증·사업화 사업	중기부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목적	상용화 전 단계(TRL 7~9)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이 테스트하고 피드백	기존R&D 결과(TRL 5~6)를 기반으로 최적화R&D 진행	중소기업 판로확보를 통한 기업 성장제고
추진절차	①혁신제품 발굴·선정 → ②테스트기관 매칭 및 협약 체결→③피드백	①수요발굴(관련기관 협의 하 기존 공공기술 발굴) → ②최적화R&D	①수요처 과제 발굴 → ② 계약체결 → ③협약 및 자금지원 (→ ④향후 공공서비스 부처에서 구매) ※ 수요처 과제가 아닌 과제의 자유응모도 가능
소관 부처의 역할	혁신제품 선정 후 공공수요 발굴, 물품 구매 역할 수행	공공수요에 맞춘 과제 발굴 및 선정	국내외 수요처 발굴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지원내용	혁신제품과 공공기관 연계하여 작업기술서 작성, 제품 구매	패키지지원(실증 R&D, 인증·제도개선· 공공조달)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
사업기간	1년간 진행	1~2년간 진행 + (조달청 테스트베드와 연계 1년)	2년간 진행
2019 예산안	12억원(4개 제품)	25억원(10개 과제)	1,589억원(1,120개 과제)

주: 1. TRL은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로, 1~2단계는 기초연구, 3~4단계는 실험단계, 5~6단계는 시작품 단계, 7~8단계는 실용화 단계, 9단계는 양산단계임

자료: 각 부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 코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일반회계, 1531-405

6) 코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 2134-303 의 내역사업

따라서 조달청의 공공혁신조달 사업에서는 타 사업과 달리 해당 제품이 공공 수요에 따른 요구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며, 완료 이후에 공공기관이 제품 사용, 구매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동 사업에서는 구매계약 체결 이후 테스트기관이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테스트 결과 또는 내실화 여부에 대해서는 테스트기관이 부담을 지지 않는다. 이는 신제품 구매의 위험부담을 줄여 공공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공공기관의 책임감 있는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조달청은 테스트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테스트기관간의 사전 업무협약시 테스트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테스트 품목 구입비 단가가 품목별 3억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 시 제품별 특성에 맞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테스트를 위한 제품 구매 비용을 품목당 3억원씩 책정하여 4개 품목에 대하여 12억원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테스트 품목별로 기능 테스트를 위한 적정량, 단가, 비용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3억원의 단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조달청은 향후 제품 구매 시 제품 테스트를 위한 적정량, 단가 등을 평가하여 제품별 상황에 따라 적정한 예산이 집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법 상 테스트 성공 이후 제품의 소유권 양여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공공혁신조달사업에서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는 경우, 제품의 소유권을 테스트기관에 양여하고 성공제품의 우수조달제품 등록 등을 통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용 확산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테스트기관이 국가기관에 한정된다면 현행 「물품관리법」 제22조⁷⁾에 따라 무상

7) 「물품관리법」

제22조(관리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소관 물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관서 소관 물품으로의 관리전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전환이 가능하나, 현재 조달청의 계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도 테스트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물품관리법」 제35조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는 ‘불용품’에 한해 무상양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달청은 테스트베드를 성공적으로 마친 물품이 ‘불용’ 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8) 「물품관리법」

제35조(불용의 결정 등) ①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이 매각하기에 부적당하거나 매각하면 국가에 불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불용품의 양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가. 현 황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사업¹⁾은 정부조달분야 국제협력체제 구축 및 우리기업의 해외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억 1,300만원이 증액된 18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다.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지원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인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 육성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다.

[2019년도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 육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정부조달 국제 협력체제 구축	889	1,513	1,513	1,826	313	20.7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 육성	0	300	300	600	300	100.0

자료: 조달청

나. 분석의견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 육성 사업은 타 부처의 지원 사업과의 차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조달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지원 사업 내의 내내역사업으로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우수 조달기업과 해외 현지 전문기업을 1:1로 매칭하여 해외 협업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비 중 예산지원이 70%(최대 3천만원), 업체부담이 30%로 이루어지며, 해외 현지 마케팅활동 지원, 경쟁성 조사, 프로젝트 발굴 및 제안서 작성, 법률지원 등이 주 내용이다. 전체 사업기간은 2년으로, 1차연도에는 해외진출 준비 및 프로젝트 발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조달특별회계 1233-331

굴 및 일부 수주를 목표로 하고, 2차연도에 본격적인 프로젝트 수주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²⁾ 2019년도 예산안에는 2018년도 진행 기업 10개사의 2차연도 지원 비용 3억원과 2019년도 신규 진행 기업 10개사의 1차연도 지원 비용 3억원, 총 6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 사업³⁾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원대상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이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미국 조달시장진출 전략진출, 공공조달(벤더) 시장 진출 지원, 현지 법인등록 대행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중기부의 사업은 기업이 직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다양한 수행사가 참여하는 컨설팅 위주인 반면, 조달청의 사업은 사업수행사가 전반적인 컨설팅을 주도하고 해외 현지기업과 매칭을 통해 해외조달시장을 공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달청과 중기부의 사업 간의 비교]

구 분	조달청의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중기부의 수출바우처 사업
목적	국내 수출전략기업 지원으로 수출성과 창출, 해외조달시장 진출	내수 및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역량별·규모별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중소기업 수출성과 제고
대상	G-PASS기업 ¹⁾ , 새싹기업 ²⁾	중소기업
사업구조	조달청이 참가기업 및 사업수행사 직접 선정한 이후 사업수행사가 컨설팅용역 수행	중기부가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발급하면 참여기업이 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 후 정산
사업방식	직접 수행	보조 사업
지원내용	국내기업 역량교육, 해외현지 시장조사 및 입찰참가 발굴, 마케팅, 계약, 납품 등 사후관리 지원	개발·제작, 전략컨설팅, 교육, 홍보·광고/온오프라인 마케팅, 조사·정보, 전시회, 상담회, 바이어매칭, 통관·선적, 출장지원
지원금액	70% 지원(3,000만원 한도)	50%~70% 지원(3천만~1억원 한도)
예 산	2018 3억원	1,099억원
	2019(안) 6억원	985억원

주: 1) G-PASS기업은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선정하는 기업으로, 최근 3년 이내 수요기관에 납품실적이 있는 중소, 중견기업 및 새싹기업, 정부조달문화상품으로 선정받은 기업 중 선정함

2) 새싹기업은 벤처·창업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공공구매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기업임

자료: 각 부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동 사업은 2018년 신규사업으로 법무법인 율촌이 사업수행자이며, 미국시장은 정부조달협회(GCA, Government Contractors Association),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 시장은 Caliham Co. Ltd.의 협력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3) 코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일반회계, 3131-301)의 내역사업

따라서 조달청은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을 타 부처 사업과 차별화하기 위해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공공조달’ 분야로의 진출로 목표를 명확히 하는 등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특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조달청은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¹⁾의 내역사업인 정부조달우수제품 선정 및 홍보 사업을 통해 우수조달제품 선정 심사 및 홍보,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전시회 개최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800만원 감액된 1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전시회는 조달청이 매년 상반기 개최하는 전시회로, 대규모 수요기관 공공구매 상담회,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및 해외시장 진출 설명회 등을 통해 공공조달을 창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2019년 예산안 중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관련 비용은 총 5억 1,2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2억 6,700만원, 국외업무여비 2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2,873	3,289	3,289	4,503	1,214	36.9
정부조달 우수제품 선정 및 홍보	1,007	1,176	1,176	1,158	△18	△1.5

자료: 조달청

나. 분석의견

나라장터 엑스포 전시회 개최 관련 국외업무여비의 집행 실적이 부진하므로,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나라장터 엑스포는 매년 4월경 개최되고 있는 정기적인 행사로, 조달 수요 창출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2018년에도 4월 25일~27일, 3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1만 2,750명이 참석하였으며, 2018년 10월 기준 예산 4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조달특별회계 1235-334

그러나 최근 나라장터 엑스포 전시회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보면, 국외업무여비의 집행률이 부진한 측면이 있다.

2018년 나라장터 엑스포 전시회 행사가 개최 완료된 이후, 10월 기준으로 일반수용비는 예산액 2억 8,600만원 중 98.2%인 2억 8,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국외업무여비는 2억 4,500만원 중 73.1%인 1억 7,900만원이 집행되었다.

조달청은 국외업무여비의 집행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행사의 특성 상 참가를 취소하는 바이어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참가 예정 바이어 중 40명, 해외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담당자 중 3명의 참가가 취소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2019년에는 사전에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초청 희망바이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초청하고, 해외바이어 초청규모를 확대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조달청은 나라장터 엑스포 전시회 관련 국외업무여비의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전시회 관련 예산 및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목	2015		2016		2017		2018.10.		2019 예산 (안)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일반수용비 (210-01목)	148	141	233	198	251	236	286	281	267
	국외업무여비 (220-02목)			140	131	259	118	245	179	245
글로벌 공공조달 상담회	일반수용비 (210-01목)					0	15	18	0	18
	국외업무여비 (220-02목)					0	82	104	0	104

주: 2017년에는 엑스포 예산 중 일부를 글로벌 공공조달 상담회 개최를 위해 사용함
자료: 조달청



통계청

1

현황

통계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통계청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32억 5,6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7억 5,000만원(29.9%) 증가하였다.

[2019년도 통계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183	2,506	2,506	3,256	750	29.9

주: 총계 기준

자료: 통계청

통계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3,946억 2,8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950억 5,900만원(31.7%) 증가하였다.

[2019년도 통계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86,298	299,569	299,569	394,628	95,059	31.7

주: 총계 기준

자료: 통계청

2019년도 통계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통계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신규 서비스 구축 및 운영비용이 반영되었고(2018년 30억원 → 2019년 50억원), ② 신규 조사 및 정기 조사비용이 반영되어 경제구조통계작성, 사회구조통계작성 사업의 예산이 확대되었다(2018년 123억원, 156억원 → 2019년 417억원, 358억원). 또한, ③ 5년 주기의 총조사 준비를 위한 시스템 개발 비용이 신규 편성되었으며(94억원), ④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예행조사 등을 위하여 예산이 확대되었다(2018년 58억원 → 2019년 323억원).

2019년도 통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과정에서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간의 결합 분석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법·제도의 개선 추이를 반영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센터 확장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계데이터센터의 수요량이 타 공공데이터센터에 비해 다소 적은 편이므로, 서비스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센터별 수요량 추이를 고려하여 서비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 내의 신규조사와 관련하여 신규 조사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① 신성장산업실태조사는 프랜차이즈 통계와 관련하여 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② 대규모복합법인기업구조조사는 홍보 및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③ 신생사업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국세청과의 행정자료 연계 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통계청의 2019년도 신규사업은 총 1개 사업, 93억 6,000만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총조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2020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2021년 경제총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총조사 준비부터 자료처리 및 결과 공표에 이르는 과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 및 운영하는 사업이다.

[통계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1개)	총조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9,360
합 계		9,360

자료: 통계청

2019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통계데이터센터구축 및 운영(정보화), 경제구조통계작성, 경제동향작성, 사회통계작성,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사업 등이 있다.

① 통계데이터센터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은 통계데이터센터의 온라인 서비스, 분석지원 서비스 관련 예산이 신규 반영되어 대폭 증액되었고, ②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은 전국사업체조사 확대, 신성장산업실태조사, 대규모복합법인기업구조조사 실시 등 관련 비용이 반영되었으며, ③ 사회통계작성 사업은 지역별고용조사, 가계동향조사 등의 표본확대, 생활시간조사 본조사 실시로 인한 비용이 증액되었다. ④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은 가구주택기초조사 비용이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고, ⑤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사업은 대행조사 수요를 반영하여 조사비용이 증액되었다.

[통계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8		2019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3개)	통계교육원 수입대체경비	274	274	474	200	73.0
	통계데이터센터구축 및 운영(정보화)	2,972	2,972	5,015	2,043	68.7
	경제구조통계작성	12,335	12,335	41,742	29,407	238.4
	경제동향작성	613	613	884	271	44.2
	사회통계작성	15,600	15,600	35,771	20,171	129.3
	인구주택총조사	5,819	5,819	32,282	26,463	454.8
	농림어업총조사	880	880	1,593	713	81.0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400	400	900	500	125.0
	호남 기본경비	137	137	182	45	32.8
	동남 기본경비	104	104	179	75	72.1
	충청 기본경비	97	97	128	31	32.0
	통계교육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59	59	84	25	42.4
	청사시설관리	3,303	3,303	5,676	2,373	71.8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8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통계청

II

주요 현안 분석

1

통계데이터센터 확대 및 구축 관련 개선 필요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¹⁾은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간 연계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대폭 개방을 위한 통계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0억 4,300만원이 증액된 50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9년도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150	2,972	2,972	5,015	2,043	68.7
온라인서비스시스템 구축	0	0	0	1,512	1,512	순증
분석지원서비스 제공	0	0	0	531	531	순증

자료: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는 통계작성 목적을 위한 행정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공공데이터·민간데이터 간 연계 및 비식별화를 지원하는 독립된 제한공간을 의미한다. 중앙가상화 서버 상의 데이터와 통계분석툴이 구축되면 개별 데이터센터에서 원격 접근하여 이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통계청은 2016년 10월부터 대전 본청에 10석 규모로 시범적으로 통계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 4월에는 판교 센터(2석)를, 2018년 7월에는 부산 센터(8석)를 개소하였다. 2018년 11월에는 대전 센터의 규모 확장, 서울 센터의 개소 및 판교 센터와의 통합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2032-308

2019년부터는 온라인서비스와 분석지원서비스를 신규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서비스는 개인식별의 위험성이 낮고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은 데이터를 1차 분석하여 가공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필요시 이용자가 직접 오프라인센터에 방문하여 추가분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센터 내에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상주하도록 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이용자가 주문하는 데이터간의 연계 및 분석을 지원 및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1-1.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법적·제도적 개선 추이를 반영한 데이터센터 운영 필요

가. 현 황

통계청은 2019년 동 사업에 2018년 구축 및 운영 중인 대전센터, 서울센터, 부산센터의 운영비를 편성하였다. 센터별 2019년도 예산안으로 대전센터 5억 3,600만원, 서울센터 9,500만원, 부산센터 6,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2019년도 통계데이터센터 센터별 운영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센터	구분	2018년		2019년	비고
		예산	집행	예산	
대전	운영인력	26	14	23	시범 운영 중 '18년 11월 확대 개소 예정
	분석지원	-	-	118	
	전용회선	2	-	9	
	사무실임차	126	-	386	
	센터구축	58	-	-	
	소계	211	14	536	
서울	운영인력	7	-	23	'18년 11월 개소예정
	분석지원	-	-	63	
	전용회선	2	-	9	
	센터구축	30	-	-	
	소계	38	-	95	

(단위: 백만원)

센터	구분	2018년		2019년	비고
		예산	집행	예산	
판교	운영인력	19	13	-	'18년 11월 이후 서울 센터로 통합
	소계	19	13	-	
부산	운영인력	-	-	23	'18년 구축 및 운영비 과기정통부에서 지원
	분석지원	-	-	35	
	전용회선	-	-	9	
	소계	-	-	67	

자료: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 월별 이용건수 및 이용자 수 추이]

(단위: 건, 명)

연도	센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16	대전	-	-	-	-	-	-	-	-	-	2 (5)	5 (9)	4 (10)	11 (24)
'17	대전	3 (12)	4 (9)	3 (8)	3 (6)	4 (8)	3 (7)	2 (4)	4 (10)	4 (7)	7 (8)	3 (10)	2 (6)	42 (95)
	판교	-	-	-	1 (5)	1 (3)	1 (2)	1 (2)	1 (2)	2 (6)	2 (7)	1 (2)	1 (2)	11 (31)
'18	대전	5 (10)	3 (5)	4 (8)	4 (7)	6 (15)	5 (11)	3 (7)	3 (5)					33 (68)
	판교	1 (6)	2 (7)	2 (6)	2 (5)	1 (2)	2 (6)	3 (8)	3 (9)					16 (49)
	부산	-	-	-	-	-	-	1 (3)	6 (10)					7 (13)

주: 1. 본청('16.10월 서비스 개시), 판교('17.4월서비스 개시), 부산('18.7월서비스 개시)

2. 괄호 안은 이용자 수입

자료: 통계청

나. 분석의견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간의 결합 분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
이므로, 통계청은 통계데이터센터의 운영에 있어 관련 사회적 논의 및 법·제도의
개선 추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은 통계데이터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로 「통계법」 제30조 및 제31조2를 들고 있으나, 이는 ‘통계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조항이며, 공공데이터와 민간 데이터 간의 결합 분석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민간데이터를 직접 센터로 반입하여 결합하고 그 결과만 반출하는 서비스로, 데이터 간 결합은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결합분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센터로의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개인정보가 없는 사업체 자료를 중심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간자료와의 결합 및 분석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규제에 관한 일반법으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에 명시적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데이터 결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³⁾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지난 4월

2) 「통계법」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①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1.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총조사 및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사업체 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진행한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 의제를 주제로 정부·공공기관과 법조계, 시민단체,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논의한 바 있다. 해당 논의에서는 데이터 결합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고 합의하였으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산업계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⁴⁾ 한편, 정부는 데이터 결합의 법적 구성방식들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비례하여 사전적 또는 사후적 통제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점에 동의하였으며, 해당 논의의 합의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이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간의 결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통계청은 향후 통계데이터센터의 운영 규정, 기능 확대 계획 등을 마련함에 있어 사회적 논의 및 법·제도 개선 추이를 지속적으로 반영해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데이터센터 확장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사업비 전체 규모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은 2018년 7월 부산센터를 개소하였으며, 11월에 대전센터 및 서울센터를 확장 개소할 예정이다. 대전센터 및 서울센터 구축비 및 운영비는 통계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부산센터의 구축비 및 운영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빅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 사업(방송통신발전기금, 1544-310) 내의 데이터프리존 구축 및 활용지원 내역 사업⁵⁾의 예산 6.2억원으로 집행하였다.

4)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2018.04.03.~04.)의 의제 중 하나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데이터 결합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체계 하에서는 민간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와의 연계, 결합은 허용될 수 없으며 통계청 등 관련 전문기관이 공익적 가치가 큰 연구 및 통계 목적에 한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연계 및 결합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산업계는 인가받은 제3의 기관을 통해 데이터 결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5) 동 사업은 데이터 수집·가공 등을 위한 데이터프리존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1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한국데이터진흥원에 대한 보조사업이다. 한국데이터진흥원이 빅데이터 개발·분석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통계청의 통계데이터센터 시스템과 민간 데이터 중 이동통신사의 지역별, 주요거점별 유동인구 데이터 및 업종별 매출데이터 등을 연계하여 새로운 데이터 서비스를 개발,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도 통계데이터센터 센터 구축 및 운영 현황]

(단위: 백만원)

센터	개소 시점	규모	수행주체		2018년 예산액	
			구축	운영	구축비	운영비
대전	2018년 11월 (현재 시범운영 중)	31석	통계청	통계청	58	154
서울	2018년 11월 (판교센터와 통합)	11석	통계청	통계청	30	9
부산	2018년 6월	8석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통계청	30	15

자료: 통계청

통계청은 2018년 1월부터 4개월간 통계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시 3기관 간 협의를 진행한 결과 통계청과 부산시 간의 MOU를 체결하여 부산센터를 개소하였으며, 부산센터는 대전과 서울에 위치한 두 센터 외의 지역 연구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센터 구축 및 개소 당해 연도의 운영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부담하는 한편, 향후 운영 및 인력 관리, 서비스 제공 비용 등은 통계청에서 부담하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센터 구축과 운영이 두 부처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집행되면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센터 구축 및 확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검토하기 어렵게 만드는 등 실제 사업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통계청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 전반의 중장기적 계획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향후 데이터센터의 확장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제공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1-2.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센터별 수요량을 반영한 서비스 운영 필요

가. 현 황

통계청은 2019년부터는 통계데이터센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서비스 및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2019년 예산안에 신규 내역사업으로 분석지원서비스 제공 비용 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다.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센터 내에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상주하도록 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이용자가 주문하는 데이터간의 연계 및 분석을 지원 및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9년도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150	2,972	2,972	5,015	2,043	68.7
분석지원서비스 제공	0	0	0	531	531	순증

자료: 통계청

나. 분석의견

통계데이터센터의 수요량이 타 공공데이터센터에 비해 다소 적은 편이므로, 서비스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센터별 수요량 추이를 고려하여 서비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은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 분석 전문가 15명을 고용하여 자료 연계 및 분석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전센터에 3명, 서울센터에 2명, 부산센터에 1명을 배치하고, 서비스 데이터 관리를 위한 인력 6명, 주문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3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위한 전문가 요구 인원(안)]

(단위: 명)

	합 계	초급 기술자	고급 가능자	중급 가능자	초급 가능자	비고
자료 연계·분석 자원	6	1		3	2	
대전센터(31석)	3	1		1	1	
서울센터(11석)	2			1	1	
부산센터(8석)	1			1		
서비스 데이터 관리	6		1		5	업데이트 및 품질관리 : 3명 비식별화관리 : 1명 맞춤형데이터개발 : 2명
주문형 서비스 제공	3		1		2	월 5건 가정(오프라인센터 10%)

자료: 통계청

최근 통계데이터센터의 이용량 추이를 보면, 통계데이터센터의 월평균 이용건수(이용 인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6년 2.7회(6명), 2017년 4.4회(10.5명), 2018년 7회(16명)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데이터센터와 비교하여 다소 수요량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⁶⁾

[통계데이터센터 월별 이용건수 및 이용자 수 추이]

(단위: 건, 명)

연도	센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16	대전	-	-	-	-	-	-	-	-	-	2 (5)	5 (9)	4 (10)	11 (24)
'17	대전	3 (12)	4 (9)	3 (8)	3 (6)	4 (8)	3 (7)	2 (4)	4 (10)	4 (7)	7 (8)	3 (10)	2 (6)	42 (95)
	판교	-	-	-	1 (5)	1 (3)	1 (2)	1 (2)	1 (2)	2 (6)	2 (7)	1 (2)	1 (2)	11 (31)
'18	대전	5 (10)	3 (5)	4 (8)	4 (7)	6 (15)	5 (11)	3 (7)	3 (5)					33 (68)
	판교	1 (6)	2 (7)	2 (6)	2 (5)	1 (2)	2 (6)	3 (8)	3 (9)					16 (49)
	부산	-	-	-	-	-	-	1 (3)	6 (10)					7 (13)

주: 1. 본청('16.10월 서비스 개시), 판교('17.4월서비스 개시), 부산('18.7월서비스 개시)

2. 괄호 안은 이용자 수임

자료: 통계청

6) 통계청은 2017년 상반기 이용건수를 기준으로 매년 50%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2019년 이용 건수를 대전센터 90건, 서울센터 11건, 총 101건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통계데이터센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⁷⁾의 경우, 2017년 이용량이 각각 1,635건, 729건으로 수요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공공기관 데이터센터 이용 건수 추이]

(단위: 건)

기관명	서비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원격분석	107	152	158
	센터 방문분석	548	870	1,303
	공공데이터 신청	86	166	174
국민건강 보험공단	맞춤형연구DB(방문)	84	186	391
	표본연구DB(원격)	117	278	338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수요가 다소 적게 나타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통계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이용 유형별로 다양한 서비스용 DB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통계데이터센터는 현재 센터 방문분석을 위한 9종의 DB⁸⁾ 자료만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데이터센터의 수요량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다양한 신규 서비스 도입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의 내년도 운용결과를 바탕으로 센터별 수요량 추이, 1인당 적정업무량 등을 분석하여 향후 서비스 운영에 반영하여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DB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2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빅데이터운영실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5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8) 경제사회분야 3종(기업등록부DB, 기업등록부사업장기초DB(4대보험)), 기업등록부사업장기초DB(법인)등록센서스DB), 인구·가구분야 3종(등록센서스인구DB, 등록센서스가구DB, 등록센서스주택DB), 농림어업분야 3종(농업DB, 임업DB, 어업DB)

가. 현 황

(1) 2019년도 예산안

가계동향조사 사업¹⁾은 국민생활수준 변화의 측정과 분석, 소비자 물가 지수의 가중치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가구부문 지출 조사와 소득변화 요인 분석을 위한 가구부문 소득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의 2019년도 예산안은 130억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9억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의 2019년도 예산안은 29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800만원 증액 편성되었다.

[2019년도 가계동향조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사회통계작성	11,363	15,600	15,600	35,771	20,171	129.3
가계동향조사(지출)	140	129	129	13,038 ¹⁾	12,909	10,007.0
가계동향조사(소득)	0	2,853	2,853	2,911 ²⁾	58	2.0

주: 1) 2019년 개편에 따른 소득·지출 연계된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비용임

2) 시계열 비교를 위해 현행 방식의 조사를 2019년까지만 실시하는 비용임

자료: 통계청

(2) 가계동향조사 연혁

가계동향조사는 전국 가구 중 표본을 추출하여 가구 단위의 소득, 지출부문에 대해 조사하여 가계수지, 소득분배 현황 등을 공표하는 조사로, 1963년 조사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표본개편 및 비목확대 등이 이루어져왔다.

가계동향조사는 2016년, 2018년 두 번에 걸쳐 소득부문·지출부문 간의 분리 및 통합을 두고 전면적인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3032-304의 내역사업

① 개편 이전의 舊가계동향조사

舊가계동향조사는 2016년까지 소득부문·지출부문을 통합적으로 조사하였으며, 표본 가구(16년 기준 8,700가구)가 36개월 간 소득, 지출에 대한 항목을 가계부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동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공식소득분배지표(지니계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舊가계동향조사는 한 가구가 36개월동안 매월 가계부를 작성함에 따라 응답부담 등의 문제로 응답거부가 증가²⁾하고, 고소득층이 소득을 축소 기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식소득분배지표의 신뢰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舊가계동향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일반가구 (농어가 제외)	공표 항목	가계 수지
표본규모	약 8,700가구		소득 분배
조사표	가계부		소득
응답기간	36개월		지출
공표주기	분기 (5분위 배율은 분기별 발표)		
개편 내용 (2017년)	▶ 36개월간 가계부 작성 방식으로 조사 응답거부 증가 ▶ 고소득층 소득 반영률 낮음	→	▶ 가계지출조사로 특화, 1개월 순환 가 계부 및 면접조사표 방식으로 변경 ▶ 고소득층 소득 반영률 높은 가계 금융복지조사로 대체

자료: 통계청

② 現가계지출조사·現가계소득조사로의 개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청은 2017년부터 공식소득분배지표의 기초자료를 고소득층의 표본대표성이 높은 가계금융복지조사³⁾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舊가계동향조사는 교육비, 식료품비 등 가구의 항목별 지출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로 연간 주기의 가계지출 통계로 특화하여 ‘가계지출조사’로 재편⁴⁾

2) 구(舊) 가계동향조사의 응답률은 2010년 80.6%에서 2015년 75.4%(도시지역은 60%수준)으로 감소하였다.(통계청, 「소득분배지표 공표 관련」, 2017.12.21.)

3)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자산, 부채, 소득 등 가구의 종합적인 재무건전성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로, 2010년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4) 지출부문 조사는 개편 과정에서 ① 표본 확대(월 1,000가구, 연간 12,000가구), ② 표본 추출 변경

하는 한편, 소득부문의 조사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연간 조사로 가계소득의 분기별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부문의 조사는 분기별 조사인 ‘가계소득조사’로 유지하게 되었다.⁵⁾

[現가계지출조사·現가계소득조사 개요]

가계지출조사			가계소득조사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일반가구 (농어가 포함)	조사대상		일반가구 (농어가 제외)
표본규모		연간 12,000가구 월 1,000가구(1/12 순환)	표본규모		'17년 약5,500가구 '18년 약8,000가구
조사표		가계부, 면접조사표	조사표		면접조사표
응답기간		1개월	응답기간		36개월
공표주기		연간	공표주기		분기
공표 항목	가계수지	-	공표 항목	가계수지	처분가능소득
	소득분배	-		소득분배	5분위배율
	소득	-		소득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지출	비소비지출
개편 내용 (2018년)		▶ 분기별 소득 지표의 부재 → ▶ 가계소득조사 유지(분기별 공표)			

자료: 통계청

③ 2019년도 가계동향조사 개편안

통계청은 지출과 소득통계가 연계되어 분석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기별 통계가 필요하다는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의 의견에 따라 다시 가계지출조사와 가계소득조사를 통합하는 개편안을 2018년 9월 발표하였다.

다만, 시계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現가계소득조사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9년 조사부터는 新가계동향조사 전용표본을 대상으로, 소득·지출항목을 동시에 가계부 기장 방식으로 조사하고, 해당 표본 조사에 따른 결과는 2020년부터 분기별 가계동향으로 공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에는 現가계소득조사 일시병행을 위한 예산 29억원과 新가계동향조사를 위한 예산 130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기존의 경제활동조사 표본을 함께 사용하던 방식에서 가계동향조사 전용 표본 방식으로 변경),

③ 표본체계 변경(36개월 간 조사에서 1개월 순환으로 변경) 등이 이루어졌다.

5) 2018년 가계소득조사 예산은 28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다.

[개편된 가계동향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일반가구 (농어가 포함)	공표 항목	가계 수지	흑자율, 소비성향, 처분가능소득
표본규모	약 7,200가구		소득 분배	5분위배율
조사표	가계부		소득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응답기간	12개월		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공표주기	분기 (19년에는 지출만 연간 공표)			
개편 내용 (2019년)	→ ▶ 소득부문과 지출부문 조사 통합 → ▶ 응답기간 축소(12개월), 표본 체계 변경(전용표본 사용)			

자료: 통계청

2016년까지의 舊가계동향조사, 2018년의 現가계소득조사·가계지출조사, 2019년의 新가계동향조사의 조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계동향조사 개편안 내용]

		~ 2016년	2017년·2018년		2019년 ~
		舊가계동향조사	現가계소득조사	現가계지출조사	新가계동향조사
조사대상		일반가구 (농어가 제외)	일반가구 (농어가 제외)	일반가구 (농어가 포함)	일반가구 (농어가 포함)
표본규모		약 8,700가구	‘17년 약5,500가구 ‘18년 약8,000가구	연간 12,000가구 월 1,000가구(1/12 순환)	약 7,200가구
조사표		가계부	면접조사표	가계부, 면접조사표	가계부
응답기간		36개월	36개월	1개월	12개월(6-6-6) ¹⁾
공표주기		분기	분기	연간	분기 ²⁾ (*19년에는 지출만 연간 공표)
공표 항목	가계 수지	흑자율, 소비성향, 처분가능소득	처분가능소득	-	흑자율, 소비성향, 처분가능소득
	소득 분배	분기 : 5분위배율 연간 : 5분위배율, 빈곤율, 지니계수	분기 : 5분위배율	-	분기: 5분위배율
	소득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 2016년	2017년·2018년		2019년 ~
		舊가계동향조사	現가계소득조사	現가계지출조사	新가계동향조사
개 편	고소득 표본	▶ 고소득층 소득 반 영률 낮음	▶ 가계금융복지조사 로 대체		▶ 표본 체계 변경 (전용표본 사용)
	응답 부담	▶ 36개월 가계부 방 식으로 응답거부 증가		▶ 1개월 순환 가계 부 및 면접조사표 방식 변경	▶ 응답기간 축소(12 개월)
	소득 지출 연계		▶ 분기별 소득지표 위 한 소득조사 유지	▶ 소득과 지출 간의 연계 불가	▶ 소득부문과 지출 부문 조사 통합

주: 1) 6-6-6 표본연동체계로, 6개월 조사 후 6개월간의 휴식 이후 다시 6개월 추가조사를 하는 방식임
2) 시계열 연결을 위해 2019년에는 기존의 소득부문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며, 2019년 통합조사
의 결과는 2020년 공표할 예정임

자료: 통계청

나. 분석의견

첫째, 개편된 가계동향조사 실시를 위해 개편 안내 및 확대된 표본 확보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통합된 가계동향조사는 예산 확정 이후 2019년 연초부터 바로 실시될 예정이므로, 공무원직 채용·교육 및 전용표본 확보 등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통계청은 통합된 가계동향조사 실시하기 위해서 조사원 159명을 공무원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 절차에도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며, 신규 채용된 조사원에 대해서 개편된 통계조사방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계동향조사 개편에 따라 전용표본 7,200가구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전용표본 확보를 위한 준비를 사전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잦은 통계조사방식 변경으로 시계열 불안정성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17년, 2018년 두 차례의 가계동향조사 개편 과정에서 소득-지출이 통합되어 있던 舊가계동향조사는 소득-지출이 분리된 現가계지출조사·現가계소득조사로 변경되었으나, 다시 소득-지출이 통합된 新가계동향조사로 개편되었다.

찾은 통계조사방식의 변경은 통계의 시계열 연결을 어렵게 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통계청은 향후 통계조사방식 변경 시 가계동향조사와 같이 잦은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기울일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경제구조통계 내의 신규 조사의 효과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¹⁾은 전국사업체조사, 기업활동조사를 비롯한 각종 경제 구조 관련 통계조사를 수행하고 작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94억 700만원이 증액된 41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다.

주요증액사유는 신규 편성된 4개 조사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2019년부터 신성장산업실태조사(55억원), 소상공인실태조사(12억원), 대규모복합법인기업 구조조사(63억원), 신생사업체실태조사사업(37억원) 등이 새롭게 실시될 예정이다.

[2019년도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경제구조통계작성	11,451	12,335	12,335	41,742	29,407	238.4
신성장산업실태조사	0	0	0	5,510	5,510	순증
대규모복합법인기업 구조조사	0	0	0	6,339	6,339	순증
신생사업체실태조사	0	0	0	3,730	3,730	순증
소상공인실태조사	0	0	0	1,198	1,198	순증

자료: 통계청

나. 분석의견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의 신규 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3031-301

첫째, 신성장산업실태조사 중 프랜차이즈 통계와 관련하여 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신성장산업실태조사는 통계청의 공유경제현황조사(2017~2018년), 블록체인 현황조사(2018년)에 이어 최근 발표된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²⁾에 맞춰 빅데이터, AI, 수소경제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프랜차이즈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약 20만개 가맹본부·가맹점에 대한 세부프랜차이즈통계를 생산하고자 하는 조사이다.

조사에 앞서 사전준비를 위해 전국사업체조사의 조사항목을 확대하여 모집단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³⁾

[신성장산업실태조사 관련 2019년도 예산안 계상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편성 내역	
	금액	내역
전국사업체조사 내의 증액분 ¹⁾ (신성장산업 구조파악 비용)	11,483	전국사업체조사 확대(신성장산업 구조파악) 관련 비용
	2,231	일용임금
	8,938	인쇄비, 용품비, 도급비
	19	공공요금
	100	집기 임차료
	6	사업추진비
	190	고용부담금
신성장산업실태조사	5,510	신성장산업실태조사 관련 비용
	1,018	일용임금
	3,935	인쇄비, 용품비, 도급비
	43	공공요금
	107	임차료
	51	국내여비
	4	사업추진비
	250	시스템 개발비
	102	고용부담금

주: 1) 전국사업체조사는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 내의 내역사업으로, 해당 사업 중 신성장산업실태조사 관련 비용만을 합한 금액임

자료: 통계청

- 2) 2018년 8월 13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이 발표되었으며, ① 데이터경제, ② 인공지능, ③ 수소경제가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되었으며, 각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와 핵심 프로젝트 등이 발표되었다.
- 3) 전국사업체조사는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는 실태조사이다. 2019년 예산안으로 전년 예산 대비 118억 6,200만원(274.9%) 증액된 161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114억 8,300만원은 신성장산업 실태조사와 관련된 증액분이다.

통계청은 프랜차이즈산업 주요 15개 업종의 연평균 사업체 증가율이 8%로 급격히 성장 중이며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세부적인 통계 생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정보공개 및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가맹사업거래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공개서를 게시하고 있다.⁵⁾

따라서 통계청은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조사 기획 시 소관 부처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 조사대상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소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규모복합법인기업구조조사는 홍보 및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복합법인기업구조조사는 여러 지사를 가진 ‘대규모복합법인기업’에 대해 지배구조를 파악하여 지역별·산업별 데이터맵 구축 및 정책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기업등록부의 기업·사업체 간 관계의 중복·누락 등을 확인하는 조사로, 모집단으로서의 기업등록부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관련 예산안에 인건비, 임차료 등 경상경

4)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5)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최근 재무상황, 임직원 수, 지역별 가맹점 수, 가맹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비 58억원, 홍보비 3억 8,200만원, 일반연구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다.

해당 조사의 대상은 ‘대규모복합법인기업’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종사자수 및 매출액 규모가 큰 ‘대규모’ 기업이자 1기업 내 2개 이상 다사업체를 운영하는 ‘복합법인’인 경우이다. 통계청은 대규모복합법인기업을 6만개(소속사업체 30만개)로 추정하고 있으며, 4개월간 방문면접조사 및 인터넷조사를 병행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현재 계획에 따르면 통계청은 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노출효과가 좋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시내버스 홍보 등의 광고를 진행하여 응답자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낼 입장이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6만개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노출되는 광고 외의 기업과 연계된 사업자단체를 통한 안내, 설명회 등 효과적으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생사업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국세청과의 행정자료 연계 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신생사업체실태조사는 매년 생성되는 120만여 개의 신규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명, 주소, 산업분류 등 기본항목을 점검하여 기업등록부(Business Register, BR)에 등록하는 사업이다. 기업등록부는 조사자료⁶⁾와 행정자료⁷⁾를 융복합하여 주민번호와 같이 기업번호로 관리하는 일원화된 경제통계 모집단 명부자료로, 2017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정비가 추진되었다.⁸⁾

통계청은 신규사업체 등록을 위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자료(사업자등록자료)를 입수한 후 조사자료(경제총조사)의 산업분류와 행정자료(국세청 업종분류⁹⁾)의 산업분류가 다른 경우, 기본사항이 오기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 당시 기업등록부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통계청은

6) 경제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등 통계청이 실시한 통계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의미한다.

7)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과세표준, 법인세자료 등

8) 2017년도 추경 사업으로 기업등록부 정비 사업(3038-312), 63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다.

9) 국세청에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분류한 체계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자료 입수 주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고, 국세자료의 업종분류와 국제기준인 산업분류 간 정확한 연계 지원을 위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협업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분류 누락 및 부정확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통계청은 국세행정과 통계작성 목적 상 산업분류 정확도에 대한 요구수준이 다른 측면이 있으며, 사업체명, 주소, 개업일시 등 산업분류외의 행정자료 상 주요정보에 대한 품질검증 및 보완 필요성으로 인해 매월 상시적인 점검을 수행할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통계청은 국세자료와의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원인에 대하여 점검하고, 국세청과 협력 하에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등록부에 신생사업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업종분류와 산업분류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기업등록부 구축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집 필

총괄 | 이승재 예산분석실장

심의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정승환 예산분석총괄과장
박혜진 산업예산분석과장
이동훈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신은호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홍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윤동한 예산분석관
어예원 예산분석관
윤희호 예산분석관
안옥진 예산분석관

지원 | 인정은 행정실무원
김도희 자료분석지원요원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18년 10월
발행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편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경일칼라콤(주)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125-7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8